

1981年 總事業體統計調查

# 綜合實施計劃

1981. 1.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 目 次

|                      |    |
|----------------------|----|
| I. 事業概要              | 3  |
| 1. 目 的               | 3  |
| 2. 用 途               | 3  |
| 3. 實施概要              | 3  |
| 4. 年次別 事業概要          | 3  |
| 5. 總事業體 統計調查 推進計劃 日程 | 7  |
| II. 企劃 與 調查準備        | 11 |
| 1. 調查組織              | 11 |
| 2. 調查項目 決定 與 結果表 設計  | 13 |
| 3. 調查區 設定            | 14 |
| 4. 各種 資料油印           | 14 |
| 5. 調查要員任命, 訓練 與 實地指導 | 15 |
| 6. 公共行政機關調查          | 17 |
| 7. 有功者 表彰            | 17 |
| 8. 事後調查              | 17 |

## 1. 事業概要

### 1. 目的

全産業事業體의 運營實態把握

### 2. 用途

가. 政策 및 計劃樹立 目的

- 1) 産業構造의 變化測定
- 2) 雇傭需要豫測
- 3) 産業再配置 및 投資計劃樹立
- 4) 均衡의 地域 開發計劃樹立

나. 統計目的

- 1) 産業部門別 統計調査의 評價分析利用
- 2) 産業部門別 統計調査의 母集團資料의 提供

### 3. 實施概要

가. 調査地域 : 大韓民國行政權이 미치는 全地域

나. 調査對象 : 全産業事業體 約 1,500 千個

다. 調査基準日 : 1981.8.1

라. 調査期間 : 1981.8.1~8.20 (20日間)

마. 調査事項 : 事業體名稱, 業種, 經營組織, 營業形態, 従業員數等  
10 個事項

바. 調査方法

- 1) 公共行政機關 : 自計式方法
- 2) 一般事業體 : 面接調査方法

### 4. 年次別事業 概要

가. 80年度 事業

- 1) 總事業體 統計調査 實施計劃 (試案) 作成

- 2) 總事業體 統計調查 示範調查 實施
  - 가) 對象地域 : 忠南 大田市
  - 나) 實施時期 : 1980. 7. 1 ~ 7. 30
- 나. 81 年度事業
  - 1) 實施計劃(案) 作成
  - 2) 調查區設定方法決定 및 調查區設定 要領書作成
  - 3) 調查區設定 및 名簿作成
  - 4) 調查票(案) 設計 및 確定
  - 5) 調查要領書(案) 設計 및 作成
  - 6) 結果表設計
  - 7) 各種調查要領 油印 및 配布
  - 8) 關聯機關協調
    - 가) 公共行政機關調查를 위한 各部·處·庁과의 協議
    - 나) 一般事業體調查를 위한 各種團體 및 協會와의 協議
  - 9) 啓蒙宣傳
    - 가) 매스미디어弘報(텔레비전, 라디오, 新聞등)
    - 나) 街頭宣傳(實施公告 談話文)
  - 10) 센서스要員 動員 및 訓練
    - 가) 中央訓練担当要員
    - 나) 實查指導 및 監督要員
    - 다) 地方責任官 및 指導員
    - 라) 調查員 및 補助調查員
  - 11) 實查 및 實查指導監督
  - 12) 事後調查(評價調查)
  - 13) 資料處理(暫定結果集計 및 本集計)
- 다. 82 年度事業
  - 1) 暫定集計結果 報告
  - 2) 最終報告書 發刊

## 5. 總事業體 統計調查 推進計劃 日程

## 外 1981 細部推進計劃 日程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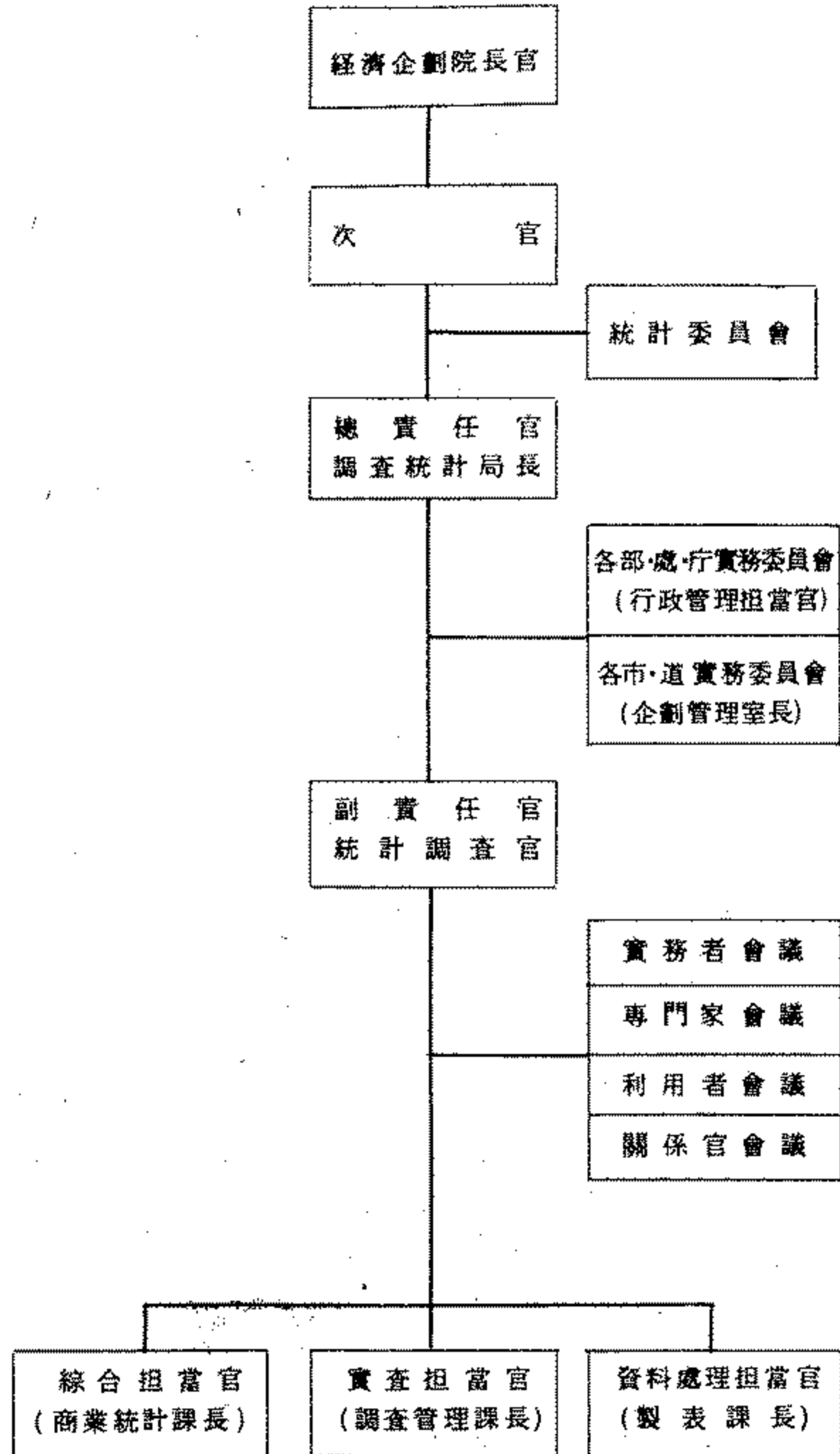
| 細 部 事 業                              | 期 間          |
|--------------------------------------|--------------|
| 1. 準備段階                              |              |
| 1. 調査實施計劃 作成                         | 81.1.15~1.31 |
| 2. 市・道担当官 會議 開催                      | 81.2.16~2.20 |
| 3. 各部・處・庁 行政管理担当官 會議 開催<br>(2回分離)    | 81.2.21~3.7  |
| 4. 調査区 設定方法 決定 及 調査区設定 要<br>領書 作成    | 81.1.15~1.31 |
| 5. 各市・道 叫 豫算配定(1次)                   | 81.2.1~2.15  |
| 6. 調査区 設定要員 確保 及 訓練                  | 81.2.16~2.28 |
| 7. 調査区 設定 及 名簿作成                     | 81.3.1~4.30  |
| 8. 1次 試験調査實施                         | 81.2.15~2.25 |
| 9. 1次 試験調査 結果分析 報告                   | 81.2.25~3.31 |
| 10. 2次 試験調査 實施                       | 81.4.1~4.10  |
| 11. 2次 試験調査 結果分析 報告                  | 81.4.11~4.30 |
| 12. 調査票(案) 確定                        | 81.4.20~4.30 |
| 13. 調査要領書 作成                         | 81.5.1~5.15  |
| 14. 結果表 設計                           | 81.5.1~5.15  |
| 15. 統計委員會 上程                         | 81.5.16~5.30 |
| 16. 指定統計 指定                          | 81.6.1~6.15  |
| 17. 内容検査 及 符號記入 要領書(案) 作成            | 81.5.1~6.30  |
| 18. 調査實施 公告文 大統領 談話文 及 長<br>官 訓示文 作成 | 81.6.16~6.30 |
| 19. 調査票類 印刷                          | 81.5.16~6.30 |
| 20. 調査票類 配布                          | 81.7.1~7.11  |

| 細 部 事 業                           | 期 間            |
|-----------------------------------|----------------|
| 21. 弘報活動 關係機關 協議                  | 81.7.1~7.15    |
| 22. 各市・道例 豫算配定(2次)                | 81.7.1~7.31    |
| <b>II. 實施段階</b>                   |                |
| 1. 調査要員 吳 補助員 推選                  | 81.7.1~7.15    |
| 2. 調査要員 吳 補助員 任命                  | 81.7.15~7.20   |
| 3. 各都・處・庁 行政管理担当官 教育(2回)          | 81.7.15~7.20   |
| 4. 市・道 企画管理室長會議 吳 市・道<br>統計担当官 教育 | 81.7.11~7.15   |
| 5. 区・市・郡 統計係長 教育                  | 81.7.17~7.19   |
| 6. 洞・邑・面事務長, 調査要員 吳 補助調査<br>員 教育  | 81.7.22~7.30   |
| 7. 本調査 實施                         | 81.8.1~8.20    |
| 8. 調査票類 現地 内容 検討                  | 81.8.21~9.10   |
| 9. 調査票類 提出                        | 81.9.11~9.30   |
| 10. 調査票 訂正 吳 製表課例 移管              | 81.9.20~10.10  |
| <b>III. 集計段階</b>                  |                |
| 1. 内容検査 票 符號記入                    | 81.10.1~12.31  |
| 2. 暫定 集計                          | 81.10.10~12.31 |
| 3. 暫定結果報告                         | 82.1.1~2.28    |
| 4. 本調査 集計                         | 82.1.1~8.31    |
| <b>IV. 評價段階</b>                   |                |
| 1. 事後調査 實施計劃 吳 要領書 作成             | 81.7.1~7.31    |
| 2. 事後調査要員 研修, 研修 吳 教育             | 81.8.1~8.31    |
| 3. 事後調査實施                         | 81.9.1~9.30    |
| 4. 事後調査票 檢受                       | 81.10.1~10.5   |
| 5. 事後調査 結果集計                      | 81.10.6~11.10  |
| 6. 事後調査結果報告                       | 81.10.10~11.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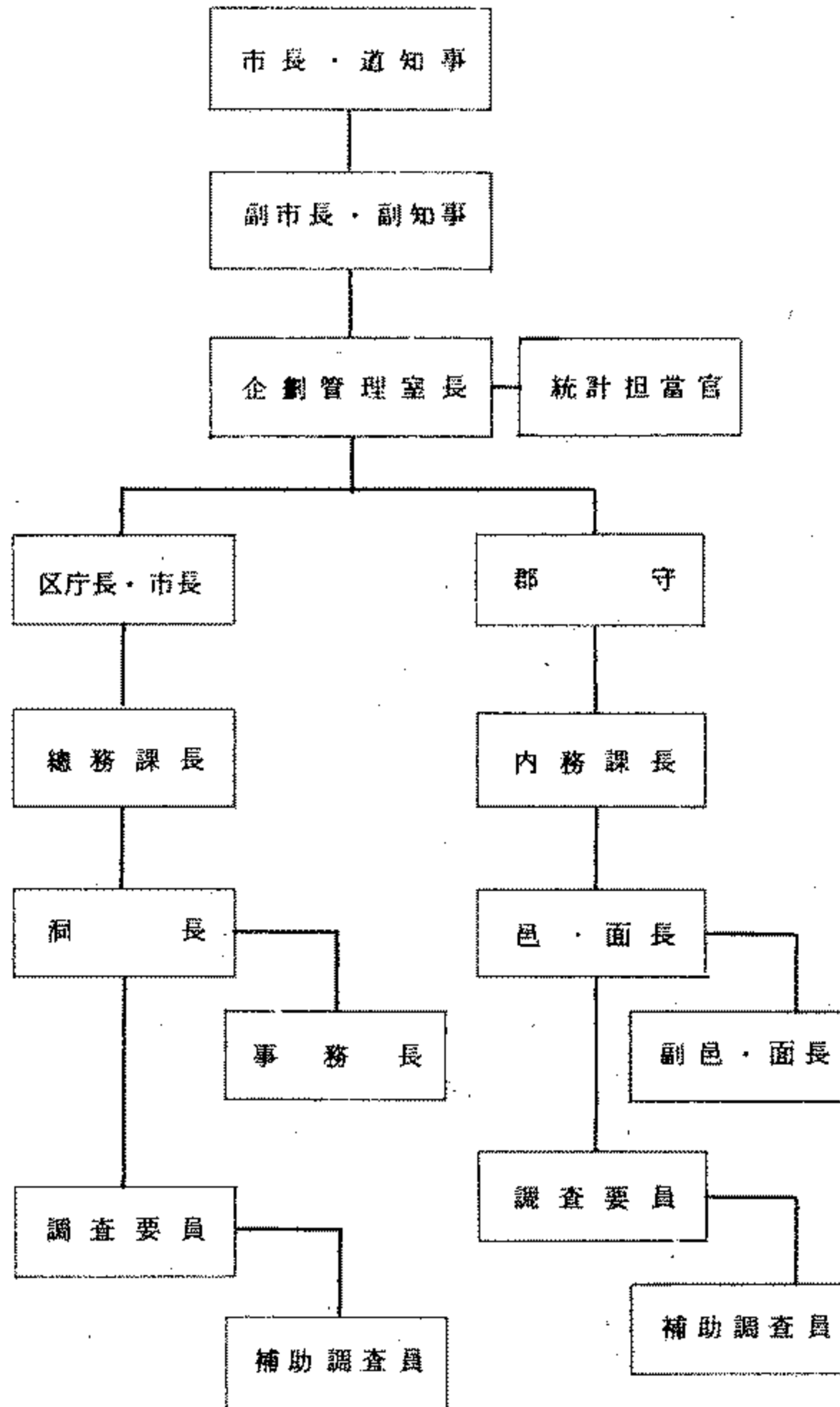
14. 年次別 推進日程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1980 |             |            |                 | 調査計劃(試案)作成 | 示範調査計劃(案)作成         | 示範調査票(案)設計<br>示範調査要領書作成 | 調査要領教育<br>示範調査員任命          | 示範調査實施             | 示範調査票檢受型内容檢討 | 調査結果1次報告<br>示範調査結果集計 | 示範調査結果集計 | 示範調査結果報告 |
| 1981 | 綜合實施計劃(案)作成 | 調査区設定要領書作成 | 調査区設定<br>一次試験調査 | 二次試験調査     | 調査票(案)確定<br>調査要領書作成 | 統計委員會附議<br>指定統計指定       | 調査票類印刷<br>調査員任命<br>本調査豫算配定 | 本調査實施<br>調査票現地内容檢討 | 調査票類提出       | 内容検査型符號記入<br>暫定集計    |          |          |
| 1982 | 本集計穿孔外注     | 暫定結果報告     | 本集計             |            |                     |                         |                            |                    | 最終結果報告       | 報告書印刷型配布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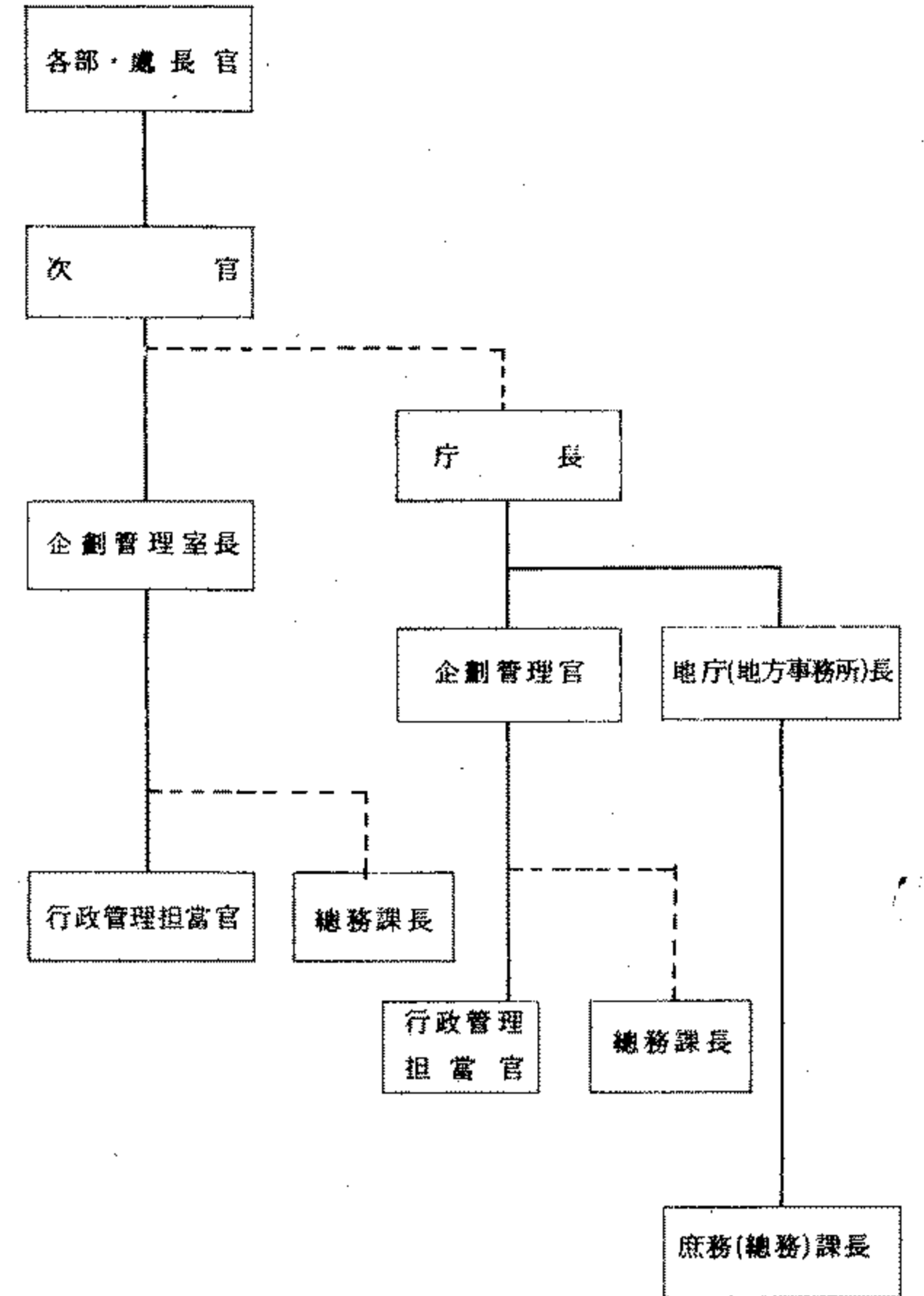
1) 中央組織



2) 市・道組織(一般事業體調查組織)



3) 公共行政機關調查組織





## II.企劃 및 調査準備

### 1. 調査 組織

#### 가. 目 的

- 1) 調査業務을 效果的으로 遂行하고
- 2) 調査企劃 指導 및 調査體系를 確立하여
- 3) 效果的인 訓練 및 指導監督을 통한 精度提高에 있음.

#### 나. 組 織

##### 1) 中央組織

經濟企劃院長官 責任下에 調査全般에 關한 企劃, 實查, 資料處理, 分析 評價業務을 遂行하며

##### 2) 市道組織

一般事業體對象 現地 調査業務는 市·道知事 責任下에 實施되며, 實查指導 調査票 檢受 등 實事業務을 遂行하다.

##### 3) 公共行政機關組織

公共行政機關 調査는 各 中央行政機關(院, 部, 處, 庁)의 長의 責任下에 當該機關 및 그 所屬機關의 實查業務을 遂行한다.

#### 4) 事務分掌

##### 가) 綜合担当官

- ① 本調査實施計劃 作成
- ② 各担当官業務의 綜合調整
- ③ 調査票 및 結果表 設計
- ④ 調査區 設定
- ⑤ 調査弘報活動
- ⑥ 事後調査實施計劃 作成
- ⑦ 事後調査結果分析報告

##### 나) 實查担当官

- ① 本調査 調査要員 訓練
- ② 本調査 實施

- ③ 實查指導
- ④ 調查票檢受
- ⑤ 事後調查員採用 및 訓練
- ⑥ 事後調查實施 및 實查指導
- ⑦ 事後調查票檢受
- ⑧ 本調查結果 暫定集計을 위한 標本設計

ㄷ) 資料處理担当官

- ① 資料處理計劃 作成
- ② 調查結果 集計

5) 會議體構成

가) 實務者會議

事務官級 以上 幹部로 構成하며 必要에 따라 隨時 開催한다.

主要機能은 調查計劃 樹立, 用語定義, 調查票, 結果表 및 調查要領書 檢討

나) 專門家會議

統計 및 經濟關係專門 外部人士로 構成되며, 分期別 또는 必要에 따라 隨時로 開催한다. 主要機能은 調查項目을 選定, 調查方法 綜合計劃 部門別計劃 其他 調查全般에 關한 事項의 諮問

다) 利用者會議

調查資料 利用의 極大化를 위하여 資料利用 機關으로 構成하여 會議에 參席 또는 書面으로 意見을 提出한다.

라) 關係官會議 運營

① 公共行政機關担当官會議

各部·處·庁의 行政管理担当官으로 構成되며 公共行政機關 調査에 對한 指針 및 問題點 協議

② 市·道 責任官 및 担当者會議

當該 市·道の 細部計劃事項 各段階別 調查業務 推進등에 關한 協議

## 2. 調査項目 決定 및 結果表 設計

### 가. 基本方向

現在 施行되고 있는 各種·事業體對象 調査의 資料를 土庫로 專門家 및 利用者會議을 通하여 提議된 內容을 反映하고 試驗調査를 거쳐 確定한다.

### 나. 調査項目 選定

1) 既存事業體 對象調査의 調査項目을 中心으로 利用機關에서 蒐集된 資料와 外國의 例를 比較 檢討하여 決定한다.

### 2) 審議

· 實務者會議, 諮問官會議, 利用者會議을 거쳐 調査票 草案을 檢討 審議한다.

### 3) 試驗 調査

#### 가) 1次 調査

1次 檢討 審議한 草案을 土庫로 調査項目 全般에 關한 問題點을 把握한다.

#### ① 調査對象事業體의 選定

各 産業別로 特性을 考慮하여 約 90 程度의 標本事業體를 任意 抽出한다.

#### ② 調査員動員

當局實務者(約 18 名)를 動員 調査에 臨한다.

#### 나) 2次 調査

1次 試驗調査에서 導出된 問題點을 調査過程別로 補充 審議를 거쳐 修正與否를 再調査한다.

#### ① 調査對象地域과 事業體選定 및 調査員動員

1次 試驗調査方法과 同一하며 2次 試驗調査過程을 通하여 最終的으로 導出된 問題點을 綜合的으로 檢討審議하여 最終 確定한다.

4) 用語定義

選定된 調査項目、調査單位 등에 對한 定義를 明確히 하여 調査者와 應答者가 理解하기 容易하도록 審議를 거쳐 確定한다.

5) 調査票 設計

最終確定된 調査項目에 依하여 調査票를 設計하고 審議를 거쳐 確定한다.

다. 結果表設計

1) 基本方向

調査項目選定에서 期待하고 있는 統計情報을 最大限 反映할 수 있도록 한다.

2) 種 類

가) 暫定集計表

나) 最終報告書集計表

3. 調査區 設定

가. 目 的

1) 調査의 重複 및 漏落을 防止

2) 調査日 業務量의 適正配分

나. 設定地域

大韓民國 行政權이 미치는 全地域

4. 各種資料油印

調査票類等 다음 資料를 適期에 油印하여 配布한다.

(1) 綜合實施計劃(81.2.1~2.10)

(2) 調査區設定要領書(81.2.1~2.10)

(3) 調査表(81.5.1~5.30)

市 公共行政機關 調査票

中) 一般事業體 調査票

- (4) 調査要領書 (81.5.20~6.10)
- (5) 調査要員 및 補助調査員證 (81.6.30)
- (6) 要計票 (81.5.30)
- (7) 事業體 一連番號票 (81.5.30)
- (8) 內檢 및 符號記入要領書 (81.6.30)
- (9) 談話文 (81.6.30)
- (10) 公符文 (81.6.30)
- (11) 調査對象處用 人事狀 (81.6.30)
- (12) 事後調査要領書 (81.8.1~8.10)
- (13) 事後調査票 (81.8.1~8.10)

5. 調査要員任命, 訓練 및 實查指導

가) 調査要員任命 및 補助調査員 採用

1) 市·道知事は 管轄 各 洞·邑·面 職員中에서 統計調査에 經驗이 많은 者 各 1人을 洞·邑·面 責任調査要員으로 指名하고 그 結果를 經濟企劃院長官에게 報告한다.

2) 補助調査員의 採用은 別途 補助調査員配定表에 依據 市·道知事가 任命하고 그 結果를 經濟企劃院長官에게 報告한다.

가) 採用簡次

洞·邑·面長이 管轄地域內의 居住者中에서 經濟企劃院長官이 定한 基準에 따라 調査業務에 適格한 者을 推薦, 區·市·郡의 審査를 거쳐 市·道知事가 任命한다.

① 資格要件

① 調査業務에 適格한 大韓民國 男女

② 管轄 洞·邑·面內의 居住者로서 管内實情에 精通한 者

i) 統·班長

- ii) 새마을指導者
- iii) 前職公務員 및 企業體任職員
- iv) 其他 統計調査 有經驗者

나. 調査關係者 및 調査要員 訓練

1) 目 標

調査要員 및 補助調査員에게 傳授되는 訓練內容이 一慣性이 最大限 維持되도록 한다.

2) 訓練方法

가) 一般事業體 担当者 訓練

3 段階 訓練過程을 통하여 實施한다.

① 1 段階

- i) 對象: 中央訓練官 및 市·道統計担当官
- ii) 場所: 調査統計局
- iii) 訓練官: 調査管理課長

② 2 段階

- i) 對象: 區·市·郡 指導員(區·市·郡 統計担当官 및 關係職員)
- ii) 場所: 別途 指定
- iii) 訓練官: 中央訓練官 및 市·道 統計担当官

③ 3 段階

- i) 對象: 洞·邑·面長, 事務長, 調査要員 및 補助調査員
- ii) 場所: 區·市·郡
- iii) 訓練官: 區·市·郡 指導員

나) 公共行政機關担当者 訓練

- ① 對象: 部·處·庁 行政管理担当官
- ② 場所: 調査統計局
- ③ 訓練官: 商業統計課長

## 6. 公共行政機關 調査

### 가. 目的

公共行政機關對象調査는 一般調査員이 調査하는데 많은 制約을 받기 때문에 一般事業體 對象調査와는 分離하여 別途의 調査方法을 適用實施한다.

### 나. 方向

- 1) 公共行政機關調査는 單位機關別로 調査한다.
- 2) 部·處·庁의 行政管理担当官은 當該機關 및 所屬機關 調査를 위한 調査票의 配布 蒐集 및 內容檢討에 關한 實查業務를 遂行한다.

### 다. 對象

各 部·處·庁 및 傘下機關(軍, 國防事務担当機關은 除外)

### 라. 方法

- 1) 自計式 方法으로 調査한다.
- 2) 調査의 單位는 獨立機關別로 한다.

## 7. 有功者 表彰

### 가. 目的

1981年 總事業體 統計調査를 實施함에 있어서 實查遂行機關 및 担当者가 調査業務 全過程에서 遂行한 業績을 表彰하는데 있음.

### 나. 方針

- 1) 機關表彰과 個人表彰으로 区分하여 表彰한다.
- 2) 機關表彰對象은 地方自治團體機關으로 한다.
- 3) 個人表彰은 中央關聯部處와 地方機關을 網羅한다.
- 4) 市·道 有功機關 表彰對象은 經濟企劃院에서 選定한다.

## 8. 事後調査

實查完了后 1個月以內에 本調査結果의 評價를 위한 事後調査를 別途 計劃에 依拠 施行한다.





1981년 총사업체통계조사

# 조사요령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목 차

|                           |    |
|---------------------------|----|
| I. 조사개요 .....             | 3  |
| II. 조사일정과 조사업무 .....      | 5  |
| III. 조사요원의 일반적 주의사항 ..... | 7  |
| IV. 조사대상 .....            | 9  |
| V. 조사단위 .....             | 10 |
| VI. 조사표 기입요령 .....        | 12 |
| VII.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   | 25 |
| 부 록 .....                 | 29 |
| 1. 표준산업분류 .....           | 31 |
| 2. 직업분류 .....             | 49 |
| 3. 조사표 .....              | 65 |
| 4. 사업체명부 .....            | 67 |

## I.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전산업 사업체의 경제활동 실태와 그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산업구조의 변화측정, 고용수요의 예측을 함으로써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함.

### 2. 법적근거

본조사는 통계법(법률 제2799호)에 의하여 지정통계 제34호로 지정된 법정 통계조사이다.

### 3. 조사지역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

### 4. 조사대상

전산업의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단, 정부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조사기간

가. 조사기준일: 1981. 7. 31.

나. 조사기간: 1981. 8. 1~8. 20(20일간)

## 6. 조사방법

본조사는 전수조사로서 지방 행정체계를 통한 동·읍·면직원 및 보조원에 의한 면접조사 방법에 의한다.

## 7. 조사사항

사업체명 및 소재지, 경영조직, 사업장면적, 사업의 종류 종업원수 및 월급여액, 직종별 종업원수 등 11개 사항

## 8. 집계 및 공표

조사완료된 조사표는 내용검사, 부호기입 및 컴퓨터에 의한 자료처리 과정을 거쳐 1982. 12. 30까지 결과보고서로 공표한다.

## II. 조사일정과 조사업무

· 조사요원으로 선정된 동·읍·면직원과 보조원은 다음 일정에 따라 담당 조사구내의 모든 사업체를 빠짐없이 방문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조사요원 훈련 (7월30일 - 7월31일)

- 가. 조사요령에 관한 훈련을 받는다.
- 나. 조사에 필요한 서식 및 용품을 받고 설명을 듣는다.

### 2. 실지조사 (8월 1일 - 8월20일)

- 가. 담당 조사구의 경계를 먼저 확인한다.
- 나. 조사구내의 사업체를 일일이 방문하여 응답자에게 질문조사한다. 만약 적합한 응답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다. 사업체 일련번호표는 조사를 완료한 후에 사업체 출입구에 부착한다.
- 라. 조사누락 사업체가 없는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 3. 조사표류 검토 및 정리 (8월21일 - 8월22일)

- 가.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기입 누락이나 오기가 없나 검사한다.
- 나. 기입 누락이나 오기를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재방문하여 보완 정정한다.

다. 관련항목간에 불일치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라. 조사표의 검토 및 정리가 완료되면 표지를 작성 철한다.

#### 4. 요계표 및 사업체명부 작성 (8월23일 - 8월24일)

조사표의 검토와 정리가 완료되면 조사요원은 완성된 조사표를 기초로하여 요계표 및 사업체명부를 작성한다.

#### 5. 조사표류 제출 (8월25일)

가. 조사표의 정리와 요계표 및 사업체명부의 작성이 끝나면 일괄하여 동·읍·면장에게 제출하여 최종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제출 조사표류는 다음과 같다.

○조사표철

○사업체 명부

○요계표

○보조 조사표

### Ⅲ. 조사요원의 일반적 주의사항

조사요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체 방문시 언행을 바로 하여 응답불응 또는 조사거부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조사구 설정 기본도에 의거 담당 조사구의 경계를 현저 확인한 후 조사구 내의 모든 사업체를 빠짐없이 조사하도록 하며, 다른 조사구의 사업체를 잘못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본 조사업무를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대리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조사업무 수행도중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동·읍·면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4. 어느 개인이나 사회단체 등을 위한 어떠한 사항도 본 조사와 함께 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5. 조사결과 알게된 사업체에 대한 조사내용은 비밀로 하여야 한다.
6. 조사요령서의 내용을 철저히 숙독하여 조사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7. 조사결과 정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방문하여 조사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8. 사업체의 방문 시간은 조사가 용이한 시간을 택하도록 하고,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 또는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은 될 수 있는한 피하도록 한다.
9. 사업체 방문시에는 먼저 인사장을 전달하고 책임있게 응답할 수 있는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질문 조사한다.
10. 대규모 사업체에 대하여는 중앙에서 직접 보조 조사표를 사전에 배포하여 주요 사항을 기입하도록 의뢰하였으므로, 사업체 방문시 먼저 보조조사표의 기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조사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보조조사표를 참조 확인하면서 조사표를 기입한다.
11.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의 면담이 곤란하거나 또는 조사표의 즉시 기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조조사표를 배포 기입 의뢰하고 재방문 시기를 약속한후 다시 방문하여 조사한다.
12. 사업체 일련번호표는 매 사업체마다 한장씩 붙이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 출입구내에 2개의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2장의 사업체 일련번호표를 부착한다. 이때 사업체일련번호표는 사업체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붙인다.
13. 조사요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조사상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동·읍·면장에게 보고하여 지시 받도록 한다.



## IV. 조 사 대 상

조사기준일 현재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산업의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1. 농가 및 어가  
단, 법인격을 갖고 있는 농업 및 어업사업체는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조사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기관과 이들 기관이 직영하는 사업체  
단, 국공립의 학교, 국공립병원(보건소 제외), 국공립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교아원, 양로원, 부녀복지원, 부녀회 등)은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3.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4. 영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영업을 위한 고정 설비가 없는 사업체
5. 일정한 사무소 또는 영업장소가 없는 운수사업체
6.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의 시설내에 있는 또 다른 사업체(관공서 구내에 있는 식당, 이발소 등)

## V. 조 사 단 위

조사의 단위는 개개의 사업체이다. 여기서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또는 판매나 서어비스의 제공 등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경제단위로서 일반적으로 광산, 공장, 사무소, 학교, 연구소, 협회, 점포, 은행, 발전소, 영업소, 병원, 여관, 극장 등과 같은 개개의 장소를 말한다.

### 조사단위 결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동일 구역 또는 장소에서 동일 경영자가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그러나 동일 경영자가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기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한다.
2. 동일구역 또는 장소에서 2인 이상의 경영자가 서로 독립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경영자 별로 별개의 사업체로 파악하여야 한다.
3. 광물을 채굴, 채석하고 있는 현장사무소(또는 영업소)는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그러나 건설공사현장, 사무소는 별개의 사업체로 보지 않고 이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본사,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4. 동일 학교법인에 속하는 몇개의 학교 예컨대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유치원 등이 동일구내에 있는 경우라도 각 학교 마다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또한 동일학교라도 분교가 별도 장소에 있으면 각기 별개의 사업체로 한다. 그러나 정규 과정에 병설되어 있는 특설 과정은 별개의 사업체로 보지 않는다.

## VI. 조사표기입요령

### 1. 일반적 유의사항

- 가. 조사표는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기입한다.
- 나.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위 미만의 숫자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없도록 한다.
- 다.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는 사선「\」을 긋는다.
- 라. 잘못 기입된 경우는 복선을 긋고 그 위에 정정 기입한다.  
예) 17  
27명
- 마. 숫자로 표시하는 항목은 각 란의 합이 반드시 합계와 일치하도록 한다.
- 바. 선택형 질문은 반드시 해당번호 하나에만 ○표시 한다.

### 2. 난외사항 기입요령

- 가. 조사구번호는 동, 읍, 면별로 지정된 번호를 기입한다.
- 나. 사업체번호는 통, 반별로 조사가 완료된 순서로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조사표 편철시 이 순서대로 한다.
- 다. 조사표 하단의 응답자란에는 실제 응답자의 성명을 기입한다.
- 다. 조사자란에는 조사표를 작성한 동·읍·면직원 또는 보조원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한다.

### 3. 각란의 기입요령

#### 가. 사업체명 및 소재지

- (1) 사업체명은 외부에 표시된 상호를 기입한다. 상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만 기입한다.
- (2) 대표자 성명은 사실상의 대표자 성명을 기입하되,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그 중 어느 한 대표자 성명을 기입한다.
- (3) 사업자등록번호란 구 영업감찰번호를 말하며, 만일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입한다.
- (4) 전화가 있는 사업체는 전화번호를 빠짐없이 기입한다. 단, 전화가 없는 경우는 사선「\」을 긋는다.
- (5) 사업체소재지는 사업체가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소의 주소를 기입하되, 반드시 법정동명과 통, 구, 리 및 번지까지 상세히 기입한다. 그리고 백화점, 상설시장 및 종합상가 등과 빌딩내에 있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동별, 층별 및 호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예) 미도파백화점 2층 18호

KAL빌딩 신관 1209호

남대문 시장 가동 17호

#### 나. 경영조직

##### (1) 공공단체

공공단체란 공공 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상의 법인을 말하며, 본조사에서는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과 국공립의 학교, 도서관, 병원 및 특수사회시설을 여기에 포함한다.

(가) 공공조합

일정한 인적결합으로 특정한 공공사업을 존립의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 단체로서 1. 국가 강제조합, 2. 일부강제, 일부 임의조합 3. 임의조합 등이 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                |                  |
|----------------|------------------|
| 1. 토지개발조합      | 2. 산림조합          |
| 3. 중소기업협동조합    | 4. 농업협동조합 및 특수조합 |
| 5. 수출조합        | 6. 건설공제조합        |
| 7. 한국해운조합      | 8. 수산업협동조합       |
| 9. 연연초생산조합     | 10. 의료보험조합       |
| 11. 연연조합       | 12. 인삼조합         |
| 13. 대한상공회의소    | 14. 한국마사회        |
| 15. 변호사회       | 16. 재향군인회        |
| 17. 한국반공연맹     | 18. 군사원호대상자단체    |
| 19. 대한집십자사     | 20. 대한교육연합회      |
| 2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22. 건축사협회        |
| 23. 대한건설협회     | 24. 측량협회         |
| 25. 한국선급협회     | 26. 대한관광협회       |
| 27. 문화원연합회     | 28. 변리사회         |
| 29. 공인회계사회     | 30. 의사회          |
| 31. 약사회 등을 말한다 |                  |

(나)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다음 기관을 말한다.

- |               |                  |
|---------------|------------------|
| 1. 한국은행       | 2. 한국산업은행        |
| 3. 중소기업은행     | 4. 국민은행          |
| 5. 한국주택은행     | 6. 한국조폐공사        |
| 7. 한국증권거래소    | 8. 대한선단공사        |
| 9. 한국전력주식회사   | 10.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
| 11. 대한무역진흥공사  | 12. 대한광업진흥공사     |
| 13. 농어촌개발공사   | 14. 농업진흥공사       |
| 15. 대한주택공사    | 16. 대한철강공사       |
| 17. 산업기지개발공사  | 18. 한국도로공사       |
| 19.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20. 국제관광공사       |
| 21. 한국방송공사    | 22. 토지개발공사       |
| 23. 한국해외개발공사  | 24. 근로복지공사       |

(다) 정부출연기관

정부에서 출연금을 교부하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              |             |
|--------------|-------------|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2. 과학재단     |
| 3. 핵연료 개발공단  | 4. 해양개발연구소  |
| 5. 지역개발연구소   | 6. 표준연구소    |
| 7. 선박연구소     | 8. 화학연구소    |
| 9. 기계금속시험연구소 | 10. 전자기술연구소 |

- 11. 전기기기시험연구소    12. 자원개발연구소
- 13. 열관리시험연구소    14. 한국개발연구원
- 15. 국제경제연구원    16. 농업시험연구소
- 17. 건설연구소    18. 공업시험연구소
- 19. 수산시험연구소    20. 임업시험연구소
- 21. 과학기술정보센터    22. 기술검정공단
- 23. 한국종합에너지 연구소
- 24. 한국보험공사    25. 증권감독원
- 26. 신용보증기금 등이 있으며 그외에도 상당수가 있으니  
현지 조사시 착오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법인**

회사법인이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여기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가 있다.

**(3) 회사이외의 법인**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것 중 회사이외의 사업체를 말하며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4) 개인경영**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법인격을 갖지 않은 2인이상의 공동 경영도 여기에 포함한다.

**(5) 비법인단체**

법인격을 갖지 않은 비영리 단체로서 학회, 문화단체, 친목회, 동창회, 종친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다. 분·지점별

##### (1) 단독사업체

동일 경영의 지사, 지점, 지소 등이 없는 1기업 1사업체 경우를 말한다.

##### (2) 본 점

동일경영의 지사 또는 지점을 갖고 있는 본사나 본점을 말하며, 지점수의 기입란에는 전국에 소재하는 지사, 지점, 지소 및 영업소 등의 수를 기입한다.

##### (3) 지 점

본사 또는 본점의 총괄을 받고 있는 지사, 지소, 지점을 말하며 공장, 출장소, 영업소, 창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라. 자본금 또는 출자금

회사법인일 경우에 한하여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조사기입하며 지점의 경우는 조사하지 않는다.

#### 마. 개점년월

개점년월은 사업체가 사업을 시작한 시기를 말하며, 법인사업체의 경우는 법적 설립 연월을 기입하고, 개인경영사업체의 경우엔 현재의 장소에서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연월을 기입한다.

(1) 다음의 경우는 그 시기를 개점년월로 보지않고 변경전의 것으로 소급하여 계산한다.

(가) 상속에 의하여 인계된 때

(나) 화재 또는 기타의 재해를 받은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였을 때

(대) 다른 사업체와 합병하였을 때

(2) 다음의 경우는 그 시기를 개점년월로 제산한다.

(가) 사업체가 지점 또는 출장소인 경우 그 지점 또는 출장소가 개설된 때

(나) 타 사업주로부터 영업권을 양도 받았을 때

(다) 다른 사업에서 전업하여 현재의 사업을 경영하게 되었을 때

#### 바. 사업장 면적

(1) 사업장이란 사무소, 점포, 공장, 작업장 등과 같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장의 면적이란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남에게 빌려준 장소나 주거비용의 경우 순수한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말한다.

(2) 사업장의 면적은 건물과 대지로 구분하여 기입하며, 건물의 경우에는 사업체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연 면적을 기입한다.

#### 사. 사업의 종류

##### (1) 사업내용

(가) 사업체 또는 기관에서 주로하는 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 상세히 기입하여야 하며, 2가지 이상의 사업을 겸업할 경우에는 주된 사업 하나만을 기입한다.

여기서 주된 사업이란 지난 1년간 수입이 가장 많았던 사업을 말한다.

- (4) 사업체의 활동이 두개 이상의 산업에 연결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예컨대 벌목업과 제재업, 또는 점토 채굴업과 벽돌 제조업등과 같이 그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최종목적사업 즉 제재업과 벽돌 제조업을 주된 활동으로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목을 원목 그대로 판매하고 극히 일부만을 제재하는 경우에는 벌목업을 주된 산업으로 간주한다.

기업예)

| 잘못 기입된 것     | 옳게 기입된 것  |
|--------------|-----------|
| 1. 신발판매      | 신발소매      |
| 2. 음식점       | 중국 음식점    |
| 3. 운수회사      | 시내버스 운수회사 |
| 4. 건설업       | 주택건설회사    |
| 5. 주식회사 한림산업 | 알미늄솔 제조회사 |

(2) 주요 생산품 및 취급상품

이 란은 제도가공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제조상품 또는 취급상품이 2개 이상 일때에는 지난 1년간 생산 또는 판매액이 가장 많았던 상품 하나만 기입한다.

#### 아. 영업형태

사업체의 산업활동이 제조가공업 또는 소매업일 경우에는 1항 내지 5항중 어느 하나에 ○표가 되어야 하며, 그이외의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는 6항에 ○표 되어야 한다.

##### (1) 제조가공업

제조업이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가공업이란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제공받아 다시 완제품으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문발행업 및 인쇄출판업과 수선 또는 수리업중 자동차, 자전거 등 개인용품의 수리업을 제외한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등과 일반기계의 수선 또는 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된다)

##### (2) 제조소매업

제조소매업이란 자기가 제조가공한 제품을 개인이나 가정용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제과점, 양복점, 양장점등이 여기 포함된다.

##### (3) 소매업

소매업이란 개인용, 가정용소비를 위하여 상품의 변형을 가하지 않고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 (4) 도매업

도매업이란 소매업자 다른 도매업자, 산업사용자와 단체 수요자에게 상품의 변형을 가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상품중개업과 무역업도 여기에 포함한다.

(5) 도산매업

도산매업이란 상품의 도매와 소매를 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자. 종업원수 및 월급여액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대상 사업체(또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자를 다음 구분에 따라 조사 기입한다. 다만 상용고용원과 임시 및 일일고용원에 대하여는 이들에게 지급된 7월분 급여총액을 조사 기입한다.

(1) 합 계

총 종업원수를 남, 여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2) 사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

개인경영 사업체의 소유주(출자자 포함)와 그 가족으로서 사업체의 운영에 종사하고 있으나,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자를 말한다.

(3) 상용고용원

1개월 이상의 고용 기간을 정하여 고정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종업원과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고 있는자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가) 법인사업체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원(사장, 이사, 감사 등)은 상용고용원으로 분류되나 이익배당만 받는 주주는 제외한다.

(나) 사업주의 가족이라도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대) 일정급여 또는 판매수수료를 받는 의무사원, 판매원 및 배달원

(4) 임시 및 일일고용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또는 일일로 고용된 자를 말한다.

(5) 무급고용원

요식업체 등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지않고 주로 고객의 팁만을 받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집대부, 호스티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차. 직종별 종업원수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수를 남, 녀별로 구분하고 다시 직종별로 아래 구분에 따라 조사 기입한다.

(1) 관리 및 사무직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리자는 여기에 포함한다. 다만 개인경영사업체의 경영자와 관리자는 (4) 기타에 분류한다.

단, 개인 경영자와 관리자중 병원의 원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등 전문성을 지닌 경영자 및 관리자는 (2) 전문, 기술 및 관련직에 분류한다.

(2) 전문, 기술 및 관련직

과학, 공학, 의학, 법률, 교육, 종교, 예술분야등에서 전문적인 직능을 수행하는 학자, 변호사, 교원, 의사, 약사, 성직자, 예술가, 체육인 등과 2급이상의 기사 자격증을 가진 고급기술인력을 말한다.

### (3) 기능공

제품의 제조 가공 및 수선과 각종 기계 및 장비등의 조  
작(운전)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직공(숙련공) 및 견습  
공과 기계 및 도구등 사용에 있어서 전문적인 숙련은 없으  
나 그들의 직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용한 경험  
을 얻는 노무자들은 여기에 포함한다.

### (4) 기타 직업종사자

판매및 서어비스업종사자, 농림수산업 종사자 등 상기 이  
외의 직업종사자는 여기에 분류한다.

## 카. 직종별 기능공

- (1) 전항의 기능공란에 한명이라도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반  
드시 이란을 조사 기입하고 기능공이 한명도 없는 경우에  
는 사선「\」을 긋는다.
- (2) 기능공의 직종명은 부록의 직업분류에 명시된 직종을 기입  
하여야 하며, 다만 부록의 직업분류에 의한 직종분류가 곤  
란한 경우에는 사업체에서 통용되고 있는 직종명을 기입하  
되 외래어는 가능한한 우리말로 해석하여 기입한다.
- (3) 이 사업체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전기사, 전  
기설비공, 기계장비정비공, 병난방공, 목공 등이 있는 경우  
에는 이들을 누락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4) 직종이 다양하여 그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공정별  
로 구분하여 유사 직종을 취합하여 10개 이내로 분류 기  
입한다. 이때 전공, 운전기사, 병난방공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5) 숙련공이란 단독으로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견습공은 단독으로 공정을 처리할 수 없는 자로서 단순히 숙련공 밑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자라든지 수습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6) 전항의 기능공중 단순노무자에 해당되는자는 총수와 남, 녀 수만 기입하고 나머지 난은 모두 사선을 긋는다.



## Ⅶ.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 1. 조사표 검토 및 정리

- 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표 매수를 사업체 번호와 상호 대조확인한다. 이때 사업체 번호가 잘못 기입되지 않았나 또는 번호의 누락이 없는가를 검토한다.
- 나. 조사표 기입 내용에 오기 또는 누락이 없는가를 검토한다. 조사표 기입 내용에 오기 또는 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조사 보완하여야 하며, 잘못 기입된 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복선을 긋고 그 상단에 정정 사항을 기입한다.

### 2. 사업체 명부 및 요계표 작성

#### 가. 사업체명부 작성

##### (1) 일반적 주의사항

- (가) 사업체 명부 작성은 조사표의 내용 검토와 정리가 완료된 후 조사표에 의거 작성한다.
- (나) 명부 작성은 조사구별로 한다.
- (다) 명부 편철은 조사구별로 1권씩 한다.

##### (2) 난의 기입요령

- (가) 행정구역명과 조사구 번호는 조사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나) 작성자 및 확인관 란에 각각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한다.

(3) 각 란의 기입요령

(가) (1) 일련번호

일련번호는 조사표 상단의 사업체일련번호와 일치되어야 한다.

(나) (2) 사업체명—(6) 본지점별

(2)란부터 (6)란까지는 조사표 내용을 그대로 이기한다.

(다) (7) 사업의 종류

이 난은 사업체의 산업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표의 (7)사업의 종류 란에 조사 기입된 사업 내용을 조사요령서 부록 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분류 해당란에 표한다.

(라) 주요 생산품 또는 주요 취급상품

이란은 7란의 6. 도. 소매및 음식·숙박업에 표된 경우에 한하여 조사표 7란 2항의 취급상품명을 이기한다.

(마) 종업원수

이란은 조사표 9. 종업원수 및 월급여액 란의 종업원수 합계를 이기한다.

나. 요약표 작성

- (1) 각 동·읍·면 조사담당 직원은 검토가 완료된 조사표에 의거 요약표 4부(충남 대전시 및 전남 광주시의 각동은 5부)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3부는 조사표와 함께 구·시·군에 제출한다.

- (2) 각 구·시·군에서는 동·읍·면에서 제출된 요계표를 취합 구·시·군 요계표 3부(대전시, 광주시의 구는 4부)작성 이 중 1부와 동·읍·면 요계표중 1부를 보관하고, 나머지 요계표는 조사표와 함께 시·도에 제출한다.
- (3) 각 시·도는 다시 구·시·군 요계표를 취합 시·도 요계표 2부를 작성하고 동·읍·면 및 구·시·군 요계표 각 1부씩을 첨부 조사표와 함께 경제기획원에 제출한다.

### 3. 조사표류의 편철

#### 가. 조사표

조사표의 편철은 조사구별로 1권으로 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개 조사구 내에 사업체수가 201개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 요령에 의거 분할 편철한다.

1매—200매 = 1 권

201매—400매 = 2 권

401매—600매 = 3 권

601매 이상 = 4 권

#### 나. 사업체 명부

사업체 명부는 매수에 관계없이 조사구 별로 1권으로 철한다.

#### 다. 요계표

요계표 철은 한국행정구역분류의 순서에 의거 각 구·시·군 별로 1권씩 철한다.

#### 4. 조사표류의 제출시기

가. 조사요원은 완료된 조사표류를 8.23까지 동읍면에 제출한다.

나. 동·읍·면에서의 구·시·군 제출시기와 구·시·군에서의 시·도 제출시기는 각 시·도지사가 적의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시·도에서는 8. 9. 20까지 경제기획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다. 제출 조사표류는 다음과 같다.

- (1) 조사표
- (2) 사업체명부
- (3) 요계표
- (4) 보조조사표
- (5) 조사구 설정 기본도

## 부 록

1. 한국표준산업분류
2. 직업분류
3. 조사표
4. 사업체명부

## 1. 한국 표준 산업 분류

가. 대분류 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나. 대분류 2. 광업

다. 대분류 3. 제조업

라. 대분류 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마. 대분류 5. 건설업

바. 대분류 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사. 대분류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아. 대분류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자. 대분류 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차. 대분류 0. 분류불능산업

대분류 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11. 농업 및 수렵업 | 111. 농업     | 1111. 작물생산업<br>1112. 축산업                                  |
|              | 112. 농업서비스업 | 1121. 작물농업서비스업<br>1122. 축산서비스업<br>1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서비스업 |
|              | 113. 수렵업    | 1130. 수렵업   |
| 12. 임업       | 121. 영림업    | 1210. 영림업   |
|              | 122. 벌목업    | 1220. 벌목업   |
| 13. 어업       | 130. 어업     | 1301. 원양 및 연근해어업  |
|              |             | 130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어업                                       |

대분류 2. 광 업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21. 석탄광업          | 210. 석탄광업          | 2101. 무연탄광업<br>2102. 갈탄광업<br>21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탄<br>광업                         |
| 22.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 220.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 2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
| 23. 금속광업          | 230. 금속광업          | 2301. 철광업<br>2302. 비철금속광업  |
| 29. 기타광업          | 290. 기타광업          | 2901. 토사석 채취업<br>2902. 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br>광업<br>2903. 염 전<br>29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광업 |



대분류 3. 제 조 업

| 중 분 류                   | 소 분 류                  | 세 분 류  |
|-------------------------|------------------------|--|
| 31. 음식료품<br>및 담배제<br>조업 | 311-312.<br>식료품<br>제조업 | 3111. 도살, 고기가공 및 저장업<br>3112. 낙농제품 제조업<br>3113. 과일 및 야채통조림 및 가<br>공 저장업<br>3114. 해산물 통조림 및 가공저<br>장업<br>3115. 동식물 유지 제조업<br>3116. 도정 및 제분업<br>3117. 빵제품 및 국수제조업<br>3118. 설탕제조업<br>3119. 설탕과자 제조업<br>3121.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료<br>품 제조업<br>3122. 배합사료 제조업 |
|                         | 313. 음료품<br>제조업        | 3131.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br>3132. 발효주 제조업<br>3133. 맥주 및 맥아 제조업<br>3134. 청량음료 제조업  |
|                         | 314. 담 배<br>제조업        | 3140. 담배제조업  |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3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 321. 섬유 제조업              | 3211. 방적 및 제사업<br>3212. 직물제품제조업(의복제외)<br>3213. 편직업<br>3214. 용단 및 뚝자리 제조업<br>3215. 끈 및 로오프산업<br>3216. 직조업<br>3217. 섬유포백, 염색 및 정리업<br>3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유 제조업 |
|                        | 322. 의복 제조업              | 3220. 의복제조업(신발제외)   |
|                        |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 제조업 | 3231. 가죽제조업<br>3232. 모피가공업<br>3233. 가죽 및 대용가죽제품 제조업(신발 및 의복제외)  |
|                        | 324. 신발제조업               | 3240. 신발제조업(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신발 제외)  |
| 33. 나무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 포함 | 331.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 제조업   | 3311. 제재업 및 목재가공업<br>3312. 목재용기 및 등세공품 제조업<br>33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
|                        | 332.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 3320.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금속가구 제외)   |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34.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3411. 펄프, 종이 및 판지제조업<br>3412. 종이 및 판지용기 제조업<br>34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펄프,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
|                                     |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사업    | 3421. 인쇄 및 출판업<br>3422. 인쇄관련 사업  |
| 35. 화학과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51. 산업용 화학물 제조업      | 3511. 산업용 기초화학물제조업<br>3512. 비료 및 살충제 제조업<br>3513. 합성수지, 플라스틱물질 및 인조섬유 제조업(유리제외)      |
|                                     | 352.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 3521. 도료제조업<br>3522. 의약품 제조업<br>3523. 비누, 세정제 및 화장품 제조업<br>35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업 |
|                                     | 353. 석유정제업            | 3530 석유정제업   |
|                                     | 354. 기타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 3540.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
|                                     | 355. 고무제품 제조업         | 3551. 타이어 및 튜브산업<br>35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고무제품 제조업  |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 35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프라스틱 제품제조업   | 3560.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
| 3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 361. 도기, 자기 및 토기제조업          | 3610. 도기, 자기 및 토기제조업  |
|                                |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362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                                | 369.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 3691. 구조 접토제품 제조업<br>3692. 시멘트, 석화 및 프라스틱 제조업<br>36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 37. 제 1차 금속산업                  | 371. 제 1차철강산업                | 3710. 제 1차 철강산업   |
|                                | 372. 제 1차비철금속산업              | 3720. 제 1차 비철금속산업   |
| 3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81.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외 | 3811. 날붙이, 수공구 및 철물 제조업   |
|                                |                              | 3812. 금속제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
|                                |                              | 3813.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                                |                              | 38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외                                       |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 382. 기계제조업 (전기 제외) | 3821. 기관 및 터빈 제조업<br>3822. 농업용기계 및 장비 제조업<br>3823.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제조업<br>3824. 특수산업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제외)<br>3825. 사무제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br>38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     | 383.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3831. 전기산업용기계 및 장치 제조업<br>3832. 라디오, 텔레비존 및 통신 장비 제조업<br>3833. 가정용전기기구 제조업<br>38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     | 384. 운수장비 제조업      | 3841. 선박 건조 및 수선업<br>3842. 철도장비 제조업<br>3843. 자동차 제조업<br>3844. 모터사이클 및 자전거 제조업<br>3845. 항공기 제조 및 수선업<br>38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 제조업.                                      |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 385. 달리 분류되지 않은<br>전문 과학<br>측정 및<br>제어장비<br>와 사진 및<br>광학제품<br>제조업 | 385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br>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제<br>조업<br>3852. 사진 및 광학용품 제조업<br>3853. 시계 제조업    |
| 39. 기타 제조<br>업 | 390. 기타제조<br>업  | 3901.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br>업<br>3902. 악기제조업<br>390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br>39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

대분류 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41. 전기, 가스<br>및 증기업 | 410. 전기, 개<br>스및증기<br>업 | 4101. 전기업<br>4102. 가스제조 및 공급업<br>4103. 증기 및 운수 공급업 |
| 42. 수도산업            | 410. 수도산업               | 4200. 수도산업   |

대분류 5. 건설업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51. 종합 건설업   | 511. 건물건설업               | 5111. 주택건설업<br>5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물 건설업  |
|              | 512. 토목건설업               | 5121. 도로건설업<br>5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목 건설업  |
| 52. 전문직별 건설업 | 521. 연관, 난방 및 관련 공사업     | 5210. 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
|              | 522. 도장,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 5220. 도장,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
|              | 523. 전기공사업               | 5230. 전기공사업   |
|              | 524. 석공 및 미장공사업          | 5241. 석공사업<br>5242. 미장공사업   |
|              | 525. 목공사업                | 5250. 목공사업  |
|              | 526. 지붕잇기 및 합석공사업        | 5260. 지붕잇기 및 합석공사업  |
|              | 527. 구조강건립업              | 5270. 구조강 건립업   |
|              | 528. 방수, 방습 및 내화공사업      | 5280. 방수, 방습 및 내화공사업  |
|              | 5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직별 공사업 | 5291. 유리공사업<br>5292. 정지공사업<br>5293. 굴정공사업<br>5294. 해체공사업<br>5299. 기타 전문직별 공사업 |

대분류 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61. 도매업 | 611. 일반도매업     | 6111. 농산물 및 음식료품 도매업<br>6112. 섬유 및 의류 도매업<br>6113. 전기기기 도매업<br>6114. 의약품 및 화학제품 도매업<br>6115. 기계도매업<br>6116. 철물 및 가정용기기 도매업<br>6117. 건축재료 도매업<br>6118. 금속 도매업<br>6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br>도매업 |
|         | 612. 상품<br>중개업 | 6120. 상품중개업  |
|         | 613. 무역업       | 6130. 무역업  |
| 62. 소매업 | 621. 일반<br>소매업 | 6211.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br>6212. 섬유, 의복, 신발 및 의복<br>악세서리 소매업<br>6213. 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br>가전제품 포함.<br>6214. 약 및 화장품 소매업<br>6215. 장신구 및 시계소매업  |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                | 6216.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br>6217. 개인운수 장비 소매업 및 주유소<br>6218. 가정용 연료 소매업<br>6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 소매업 |
|                 | 622. 종합<br>소매업 | 6220. 종합소매업   |
| 63. 음식 및<br>숙박업 | 631. 음식점업      | 6311. 식당업<br>6312. 주점업<br>6313. 빵, 생과자 및 떡 판매업<br>6314. 다방업<br>6319. 달리 분류되지 않은<br>음식점업       |
|                 | 632. 숙박업       | 6320. 숙박업   |

대분류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 71. 운수 및 창고업 | 711. 육상 운수업    | 7111. 철도운수업           |           |
|              |                | 7112. 도로여객운수업         |           |
|              |                | 7113. 기타 여객·육상운수업     |           |
|              |                | 7114. 도로화물 운수업        |           |
|              |                | 7115. 파이프라인 운송업       |           |
|              |                | 7116. 육상운수 보조서비스업     |           |
|              | 712. 수상 운수업    | 7121. 해상운수업           |           |
|              |                | 7122. 내륙수상 운수업        |           |
|              |                | 7123. 수상운수 보조서비스업     |           |
|              | 713. 항공 운수업    | 7131. 항공운수업(보조서비스업제외) |           |
|              |                | 7132. 항공운수 보조서비스업     |           |
|              | 719. 운수관련 서비스업 | 7191. 운수부대 서비스업       |           |
|              |                | 7192. 보관 및 창고업        |           |
|              | 72. 통신업        | 720. 통신업              | 7200. 통신업 |

대분류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81. 금융업  | 810. 금융업       | 8101. 통화금융기관<br>8102. 기타금융기관<br>8103. 금융서어비스업   |
| 82. 보험업  | 820. 보험업       | 8201. 개인위험 보험업<br>8202. 운송위험 보험업<br>8203. 재산손해보험업<br>8204. 재정손실보험업<br>8205. 재보험업<br>82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험업          |
| 83. 부동산업 | 830. 부동산업      | 8301. 부동산 임대업<br>8302. 부동산 개발업<br>8303. 부동산 중개업<br>8304. 부동산 감정업<br>83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부동산업                         |
| 84. 용역업  | 841. 용역업       | 8411. 법무서어비스업<br>8412. 회계서어비스업<br>8413. 자료처리 서어비스업<br>8414. 공학, 건축 및 기술서어비스업<br>8415. 광고업<br>84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용역업 |
|          | 842. 기계및장비 임대업 | 8420.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대분류 9.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91. 공공행정       | —               |  |
| 92. 위생및유사서어비스업 | 920. 위생및유사서어비스업 | 9201.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br>9202. 분뇨수거 및 처리업<br>92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위생 및 유사서어비스업   |
| 93. 사회서어비스업    | 931. 교육서어비스업    | 9311. 학령전 교육기관<br>9312. 국민학교<br>9313. 중학교<br>9314. 고등학교<br>9315. 전문학교<br>9316. 초급대학<br>9317. 대학<br>9318. 대학원<br>93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 기관 |
|                | 932. 학술연구기관     | 9321. 자연과학 연구기관<br>9322. 의료학술 연구기관<br>9323. 농업조사 연구기관<br>9324. 사회과학 연구기관<br>93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학술 연구기관                                   |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 933. 의료보건<br>및 수의<br>서비스<br>업    | 9331. 의료 및 보건서비스업<br>9332. 수의업   |
|                          | 934. 사회복지<br>기구                  | 9341. 수용복지 시설<br>9342. 비수용복지기구<br>9343. 재활원<br>93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회<br>복지기구   |
|                          | 935. 기업, 전<br>문 및 노<br>동단체       | 9351. 산업단체<br>9352. 전문가단체<br>9353. 노동단체<br>93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업,<br>전문 및 노동단체   |
|                          | 939. 기타사회<br>서비스<br>업            | 9391. 종교단체<br>9392. 정치단체<br>93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br>사회서비스업  |
| 94. 오락 및<br>문화 서어<br>비스업 | 941. 영화 및<br>기타 연<br>예 서어<br>비스업 | 9411. 영화제작업<br>9412. 영화배급 및 상영업<br>9413.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br>업<br>9414. 연극제작 및 흥행서비스<br>업<br>94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작가,<br>작곡가 및 기타 독립연예인 |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 942.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기타 문화 서비스업 | 9420.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및 기타 문화 서비스업  |
|                  | 9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오락서비스업             | 9491. 운동설비 운영업<br>9492. 경기장 운영업<br>9493. 유키장 운영업<br>9494. 공원 및 해수욕장 운영업<br>9495. 유원지 운영업<br>9496. 도락장 운영업<br>9497. 오락장비 임대업<br>9498. 경기후원업 및 자영경기업<br>94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오락서비스업 |
| 95.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 | 95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선업                | 9511. 신발 및 기타 가죽제품 수선업<br>9512. 전기 수선업<br>9513.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선업<br>9514. 시계 및 장신구 수선업<br>95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수선업   |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 952. 세탁 및<br>염색업          | 9520. 세탁 및 염색업  |
|                         | 953. 가사 서<br>서비스업         | 9530. 가사서비스업  |
|                         | 959. 기타 개<br>인 서어<br>서비스업 | 9591. 이발소 및 미장원<br>9592. 사진관<br>95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br>서비스업 |
| 96. 국제 및<br>기타 외<br>국기관 | 960. 국제 및<br>기타 외<br>국기관  | —   |

대분류 · 0. 분류불능산업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00. 분류불능<br>산업 | 000. 분류불능<br>산업 | 0000. 분류불능산업 |

## 2. 직업분류

※ 본 직업분류는 총 사업체 통계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표준  
직업분류를 단순히 재배열한 것임.

1. 관리 및 사무직 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및 3에 해당)
2.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0 및 3에 해당)
3. 기 능 공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7, 8 및 9에 해당)
4. 기 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4, 5 및 6에 해당)



1. 관리 및 사무직 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및 3에 해당)

| 중분류                        | 소분류  |
|----------------------------|--|
| 21 관리자                     | 211 총괄관리자<br>212 생산관리자(농장관리인 제외)<br>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리자   |
| 30 사무원 감독자                 | 300 사무원 감독자  |
| 32 속기사, 타자원 및 카드 및 테이프 천공원 | 321 속기사, 타자원 및 전신 타자원<br>322 카드 및 테이프 천공원  |
| 33 경리원 출납 및 관련직 종사자        | 331 경리원 및 출납원<br>3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리,출납원   |
| 34 계산기 조작원                 | 341 기장기 및 계산기조작원<br>342 자동자료처리기 조작원  |
| 35 운수 및 통신사업 감독자           | 359 육로운수 업무 감독원, 전기·통신 사업 감독원 등  |
| 36 교통안내원                   | 360 교통안내원  |
| 38 전화 및 전신기 조작원            | 380 전화 및 전신기 조작원   |
|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  | 391 물품관리원<br>392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 사무원<br>393 문서 및 보고 사무원<br>394 안내원 및 여행사 사무원<br>395 도서 및 문서정리원<br>3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무원 |

2. 전문, 기술 및 관련직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0 및 1에 해당)

| 중분류                             | 소분류  |
|---------------------------------|--|
| 01. 자연과학자 및 관련<br>기술공           | 011. 화학자<br>012. 물리학자<br>0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연과학자<br>014. 자연과학 기술공  |
| 02/03. 건축기술자, 공학<br>기술자 및 관련기술공 | 021. 건축기술자 및 도시계획 기술자<br>022. 토목기술자<br>023. 전기 및 전자기술자<br>024. 기계기술자<br>025. 화학기술자<br>026. 금속기술자<br>027. 광산기술자<br>028. 산업경영 기술자<br>0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술자<br><br>031. 측량기사<br>032. 제도사<br>033. 토목기술공<br>034. 전기 및 전자기술공<br>035. 기계기술공 |

| 중분류                              | 소분류  |
|----------------------------------|--|
|                                  | 036. 화학기술공<br>037. 금속기술공<br>038. 광산기술공<br>0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공학기술공  |
| 04. 항공기 및 선박 및 고<br>급 승무원        | 041. 항공기조종사, 항공사 및 비행<br>기관사<br>042. 선박 고급승무원 및 수로안내원<br>043. 선박관리 기술자   |
| 05. 생명과학자 및 관련<br>기술공            | 051. 생물학자 및 관련과학자<br>052. 세균학자, 약물학자 및 관련 과<br>학자<br>053. 농경학자 및 관련과학자<br>054. 생명과학 기술공  |
| 06/07. 의사, 치과의사, 수<br>의사 및 관련종사자 | 061. 의사<br>062. 의료보조원<br>063. 치과의사<br>064. 치과보조원<br>065. 수의사<br>066. 수의보조원<br>067. 약사<br>068. 약사보조원<br>069. 영양사 및 보건의양사<br>071. 직업간호원<br>07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호원<br>073. 직업조산원 |

| 중분류                           | 소분류  |
|-------------------------------|--|
|                               | 07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산원<br>075. 검안사 및 안경조정사<br>076. 의료 방사선 기술공<br>077. 한의사<br>078. 한의보조원<br>0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료 종사자 |
| 08. 통계학자, 수학자, 체계분석가 및 관련 기술공 | 081. 통계학자<br>082. 수학자 및 보험수리사<br>083. 체계분석가<br>084. 통계 및 수학기술공   |
| 09. 경제학자                      | 090. 경제학자  |
| 11. 회계사                       | 110. 회계사   |
| 12. 법무종사자                     | 121. 변호사 및 검사<br>122. 판사<br>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법무종사자  |
| 13. 교원                        | 131. 대학 및 전문교육교원<br>132. 중고등교육교원<br>133. 초등교육교원<br>134. 학령전교육교원<br>135. 특수교육교원<br>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원           |

| 중분류                          | 소분류   |
|------------------------------|---|
| 14. 종교관계 종사자                 | 141. 성직자 및 종교 교단의 관련 종사자<br>1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교 관계 종사자   |
| 15. 저작가, 언론인 및 관련 작가         | 151. 저작가 및 평론가<br>1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저작가, 언론인 및 관련 작가  |
| 16. 조각가, 화가, 사진사 및 관련 창작 예술가 | 161. 조각가, 화가 및 관련 예술가<br>162. 상업미술가 및 도안사<br>163. 사진사 및 촬영사   |
| 17. 작곡가 및 연예인                | 171. 작곡가, 음악가 및 가수<br>172. 안무가 및 무용가<br>173. 배우 및 무대감독<br>174. 제작가, 연출가<br>175. 꼭마단 연예인<br>1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연예인                          |
| 18. 체육인 및 관련 종사자             | 180. 체육인 및 관련종사자  |
| 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및 기술직 종사자  | 191. 사서, 기록보관인 및 관리인<br>192. 사회학자, 인류학자 및 관련학자<br>193. 사회사업가<br>194. 인사 및 직업전문가<br>195. 언어학자, 번역사 및 통역사<br>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및 기술직 종사자 |

### 3. 기 능 공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7, 8 및 9에 해당)

| 중분류                         | 소분류   |
|-----------------------------|---|
| 70. 생산감독                    | 700. 생산감독   |
| 71. 광원, 채석원, 굴정원<br>및 관련종사자 | 711. 광원 및 채석원<br>712. 광물 및 석재 처리공<br>713. 굴정원, 천공원 및 관련종사자  |
| 72. 금속가공 처리공                | 721. 금속제련, 전련 및 정련토공<br>722. 금속압연공<br>723. 금속용해공 및 제가열공<br>724. 금속주조공<br>725. 금속주형공 및 중자제조공<br>726. 금속소둔공, 경화공 및 표면경화공<br>727. 금속인발공 및 압출공<br>728. 금속도금공<br>7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속 가공 처리공 |
| 73. 목재가공 종사자 및<br>제지공       | 731. 목재가공 처리공<br>732. 제재공, 합판제조공 및 관련 목재가공 종사자<br>733. 펄프 제조공<br>734. 제지공   |
| 74. 화합물 가공 및 관련<br>종사자      | 741. 파쇄공, 마쇄공 및 혼합공<br>742. 조제공, 하소공 및 관련 열처리공  |

| 중분류                            | 소분류  |
|--------------------------------|--|
|                                | 743. 여과기 및 분리기 조작공<br>744. 증류기 및 반응기 조작공<br>745. 정유공<br>7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 가공공 및 관련종사자  |
| 75. 방적공, 제직공, 편직공, 염색공 및 관련종사자 | 751. 섬유준비공<br>752. 방적공 및 권사공<br>753. 제직기 및 편직기 조정공과 무늬카드 준비공<br>754. 직조공 및 관련 종사자<br>755. 편직공<br>756. 표백공, 염색공 및 섬유제품 완성공<br>7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적공, 제직공, 편직공, 염색공 및 관련 종사자 |
| 76. 가죽처리공                      | 761. 무두질공 및 양피처리공<br>762. 모피손질공  |
| 77. 음식료품 가공 처리공                | 771. 제분공 및 관련종사자<br>772. 제당공 및 정당공<br>773. 도살공 및 육류 가공공<br>774. 식품 저장공<br>775. 낙농품 가공공   |

| 중분류                            | 소분류   |
|--------------------------------|---|
|                                | 776. 제빵공 및 제과공<br>777. 차 커피 및 코코아 제조공<br>778. 양조공 및 음료제조공<br>7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음식료품<br>가공처리공  |
| 79. 의복제조공, 재봉공, 가구내장공 및 관련 종사자 | 791. 양복공 및 양장공<br>792. 모피양복공 및 관련종사자<br>793. 제모공<br>794. 원형제조공 및 재단공<br>795. 재봉공 및 자수공<br>796. 가구내장공 및 관련종사자<br>7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복제조공, 재봉공, 가구내장공 및 관련종사자 |
| 80. 제화공 및 가죽제품 제조공             | 801. 제화공 및 구두수선공<br>802. 구두재단공, 조립공, 재봉공 및 관련종사자<br>803. 가죽제품 제조공   |
| 81. 가구제조공 및 관련 목공              | 811. 가구제조공<br>812. 목공 기계조작공<br>8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구제조공 및 관련목공   |
| 82. 들재단공 및 들 조각공               | 820. 들 재단공 및 들 조각공  |



| 중분류                            | 소분류   |
|--------------------------------|---|
| 83. 대장공, 공구제작공및<br>기계공구 조작공    | 831. 대장공 및 안아압연기 조작공<br>832. 공구제작공, 금속원형제작공 및<br>금속정반공<br>833. 기계공구조정 조작공<br>834. 기계공구 조작공<br>835. 금속연삭공, 연마공 및 공구갈이<br>공<br>8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대장공, 공<br>구 제작공 및 기계공구 조작공 |
| 84. 기계설비공, 기계조립<br>공및 정밀기구 제작공 | 841. 기계설비공 및 기계조립공<br>842. 시계 및 정밀기구 제작공<br>843. 자동차 정비공<br>844. 항공기 기관 정비공<br>8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설비공,<br>기계조립공 및 정밀기구 제작공<br>(전기제외)                                     |
| 85. 전기설비공 및 관련<br>전기전자공        | 851. 전기설비공<br>852. 전자설비공<br>853.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공<br>854. 라디오 및 T. V. 수리공<br>855. 전공<br>856. 전선 및 전화시설공<br>857. 전선가설공 및 케이블 접속공<br>8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설비공<br>및 관련전기 및 전자공   |

| 중분류                               | 소분류   |
|-----------------------------------|---|
| 86. 방송 및 음향장비조작공과 영사공             | 861. 방송장비 조작공<br>862. 음향장비조작공 및 영사공   |
| 87. 연판공, 용접공, 판금공, 구조금속 준비공 및 건립공 | 871. 연판공 및 배관공<br>872. 용접공 및 화염 절단공<br>873. 판금공<br>874. 구조금속 준비공 및 건립공  |
| 88. 장신구 및 귀금속 세공공                 | 880. 장신구 및 귀금속 세공공  |
| 89. 유리성형공, 도기공 및 관련종사자            | 891. 유리성형공, 절단공, 연마공 및 완성공<br>892. 도자기공 및 연마석 성형공<br>893. 유리 및 도기가마공<br>894. 유리조작공 및 식자공<br>895. 유리 및 도기칠공과 장식공<br>8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리성형공, 도기공 및 관련종사자 |
| 9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              | 901.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 (타이어 제조공 및 타이어 경화공 제외)<br>902. 타이어 제조공 및 경화공  |
| 91.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공                 | 910.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공  |
| 92. 인쇄공 및 관련종사자                   | 921. 식자공<br>922. 인쇄공<br>923. 제판공  |

| 중분류                       | 소분류  |
|---------------------------|--|
|                           | 924. 인쇄조판공(사진요판공 제외)<br>925. 사진요판공<br>926. 제본공 및 관련 종사자<br>927. 사진암실 종사자<br>9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쇄공 및 관련종사자  |
| 93. 도장공                   | 931. 건설 도장공<br>9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장공   |
| 9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산 및 관련종사자 | 941. 악기 제조공 및 조율사<br>942. 바구니 세공공 및 솔 제조공<br>94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br>949. 기타 생산 및 관련종사자   |
| 95. 벽돌공, 복공 및 기타 건설종사자    | 951. 벽돌공 및 타일 부착공<br>952. 철근콘크리트공, 시멘트공 및 테라조공<br>953. 지붕잇기공<br>954. 목공, 소목공 및 조각목세공<br>955. 미장공<br>956. 단열공<br>957. 유리직공<br>9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설종사자 |
| 96. 고정기관및 관련장비 운전원        | 961. 발전기 운전원<br>96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고정기관및 관련장비 운전공   |

| 중분류                                       | 소분류  |
|---|--|
| 97. 화물취급및 관련 장비<br>조작공, 부두노동자. 및<br>화물취급인 | 971.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br>972. 섶구공 및 케이블 접속공<br>973. 기중장비 운전공<br>974. 운토기 및 관련 기계운전공<br>9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물취급<br>장비 운전공                               |
| 98. 수송장비운전사                               | 981. 갑판원, 거룻배선원 및 뱃사공<br>982. 선박기관실원<br>983. 철도기관사 및 화부<br>984. 화물열차 차장, 신호수 및 전철<br>수<br>985. 자동차운전사<br>986. 우마부<br>9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장비<br>운전사 |
| 99. 달리 분류되지 않은<br>노무자                     | 9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노무자  |

4. 기타직업 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4, 5 및 6에 해당)

| 중분류             | 소분류   |
|-----------------|---|
| 40/49. 판매 종사자   | 400. 도·소매 관리자<br>410. 도·소매 자영자<br>421. 판매 감독자<br>422. 구매원<br>431. 기술판매원 및 서어비스 지도원<br>432. 판매외무원 및 제조업체 판매 대리인<br>441. 보험, 부동산 및 증권거래인<br>442. 기업 서어비스 판매원<br>443. 경매인 및 감정원<br>451. 판매원, 점원 및 선전원<br>452. 행사인, 외판원 및 신문팔이<br>4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판매종사자 |
| 50/59. 서어비스 종사자 | 500. 요식박업업 관리자 숙박<br>510. 요식숙박업 자영자<br>520. 가사 및 관련 서어비스 감독자<br>531. 조리사<br>532. 웨이터, 바텐더 및 관련 종사자<br>551. 건물관리원<br>552. 청소원 및 관련종사자<br>560. 세탁공<br>570. 이발사, 미용사 및 관련종사자   |

| 중분류                                     | 소분류   |
|---|---|
|   | 591. 안내원.<br>592. 장의사 및 시체방부처리사<br>599. 기타 서어비스 종사자   |
| 60/64. 농업, 축산업, 임업<br>수산업 및 수렵업 종사<br>자 | 600. 농장관리자 및 감독자<br>611. 일반 농업경영자<br>612. 전문 농업경영자<br>621. 일반 농업종사자<br>622. 전담작물 및 채소 농업종사자<br>623. 과수원 및 유사교목 재배 종사자<br>624. 가축사육종사자 (가금제외)<br>625. 낙농 종사자<br>626. 가금사육 종사자<br>627. 원예종사자 및 정원사<br>628. 농기계 조작원<br>6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br>산종사자<br>631. 벌채원<br>632. 임업종사자 (벌채제외)<br>641. 어부<br>6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어부, 수렵<br>인 및 관련종사자 |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지정통계  
제 34 호

1981년 총사업체 통계조사

# 조사표

| 조사구번호 | 사업체일련번호 |
|-------|---------|
| 3     | 45      |

###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1) 사업체명: 대전물산 주식회사 (2) 대표자성명: 김관철  
 (3) 사업자등록번호: 106-29-60461 (4) 전화: 320-2785

(5) 소재지: 시·도 구·시·군 동·읍·면 통·구·리 번 지 빌딩, 시장, 상가내의 사업체는 그 명칭을 기입한다.  
 충남 대전 동 중 1 20-3 빌딩상가 시장 동 출월호

### 2. 경영조직

○ 공공단체란 공공 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상의 법인을 말하며 본조사에서는 정부투자기관과 국공립의 학교, 병원, 도서관 및 특수사회시설을 여기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1. 공공단체 (공기업 포함) 4. 개인경영  
 ② 회사법인 5. 비법인단체  
 3. 회사이외의 법인

### 3. 본지점별

○ 단독사업체는 1기업, 1사업체 경우를 말한다.  
 ○ 지점수에는 지사, 지소, 지점 및 출장소와 종업원이 있는 장고를 포함한다.

1. 단독사업체  
 ② 본 지점 → 지점수

| 천 | 백 | 십 | 일 |
|---|---|---|---|
|   |   | 1 | 2 |

3. 지점

###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 2란의 2항 회사법인일 경우에 한하여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조사기입한다.  
 단, 지점은 제외한다.

| 천억 | 백억 | 십억 | 억 | 천만 | 백만원 |
|----|----|----|---|----|-----|
|    |    | 4  | 5 | 6  | 7   |

### 5. 개점년월

19 88년 5월 개점(개설)

### 6. 사업장의 면적

○ 사업장의 면적은 건물과 대지로 구분하여 기입하되, 반드시 이 사업체에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조사 기입한다.

### 7. 사업의 종류

○ 사업의 내용을 상세히 기입한다.  
 ○ 2종 이상의 사업을 겸할 경우에는 주된 사업 하나만을 기입한다.

1. 제조업  
 2. 도·소매업

### 8. 영업형태

○ 제조가공업 및 도·소매업에 대하여는 1~5항 중에서 어느 하나에 ○표가 되어야 하고, 그 이외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 타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6항에 ○표한다.

① 제조 또는 가공 생산하고 있다.  
 2. 제조 소매하고 있다.  
 3. 소매만 하고 있다.  
 4. 도산매를 겸하고 있다.  
 5. 도매만 하고 있다.  
 6. 상기 이외의 산업활동을 하고 있다.

### 9. 종업원수 및 월급여액

○ 7월 31일 현재 종업원수와 7월분 급여총액을 기입한다.

1. 합계  
 2.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3. 상용고용원  
 4. 임시 및 일일고용원  
 5. 무급고용원

|       | (1) 건물(평) |   |   |     | (2) 대지(평) |   |   |     |
|-------|-----------|---|---|-----|-----------|---|---|-----|
|       | 만         | 천 | 백 | 십 일 | 만         | 천 | 백 | 십 일 |
| 1. 계  |           |   | 4 | 50  |           |   |   | 200 |
| 2. 소유 |           |   | 4 | 50  |           |   |   | 600 |
| 3. 임차 |           |   |   |     |           |   |   | 100 |

| 종업원수              | 월급여액(상여금제외) |     |     |   |   |   |   |   |   |     |     |
|-------------------|-------------|-----|-----|---|---|---|---|---|---|-----|-----|
|                   | 계           | 남   | 여   | 천 |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원 |
| 1. 합계             | 325         | 118 | 207 | × | × | × | × | × | × | ×   | ×   |
| 2.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3. 상용고용원          | 270         | 103 | 167 |   |   |   |   | 3 | 5 | 200 |     |
| 4. 임시 및 일일고용원     | 40          | 10  | 30  |   |   |   |   | 4 | 5 | 00  |     |
| 5. 무급고용원          | 15          | 5   | 10  | × | × | × | × | × | × | ×   | ×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응답자 이 선 달  
 조사자 박 문 수

| 10. 직종별 종업원수                                      |  | 성 별  | (1) 합 계 | (2) 관 리 및 직 사 무 직 | (3) 전문, 기술 및 관 련 직 | (4) 기 능 공 (숙련공 및 견습공포함) | (5) 기 타 |
|---|--|------|---------|-------------------|--------------------|-------------------------|---------|
| ○ 9란의 종업원 종수율 다시 구 체적으로 세분, 직종별, 남녀별 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 1. 계 | 325     | 15                | 20                 | 275                     | 15      |
|   |  | 2. 남 | 118     | 10                | 17                 | 81                      | 10      |
|   |  | 3. 여 | 207     | 5                 | 3                  | 194                     | 5       |

### 11. 직종별 기능공

○ 10란 「직종별 종업원수」의 (4)항에 1명의 기능공이라도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사 기입하고, 기능공이 없을 경우에는 사선「\」을 긋는다.

○ 기능공의 직종명은 조사표 표지의 직종분류에 명시된 직종을 기입하여야 하며, 다만 이에 의한 직종분류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체에서 통용되고 있는 직종명을 기입하되 외래어는 가능한 한 우리말로 해석하여 기입한다.

○ 이 사업체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전기사, 전기설 비공, 기계장비정비공, 냉난방공, 목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들을 누락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직종이 다양하여 그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공정별로 구분하여 유사 직종을 취합하여 10개 이내로 분류 기입한다. 이때 전공, 운전기사, 냉난방공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특히 유 의 하여야 한다.

○ 생산공정의 종사하고 있는 단순노무자는 합계란만 기입한다.

| 일련 번호 | ※분류 번호 | 직 종 명        | 합 계 |    |     | 자 격 증 소 지 |    |   | 자 격 증 미 소 지 |    |     |       |   |    |
|-------|--------|--------------|-----|----|-----|-----------|----|---|-------------|----|-----|-------|---|----|
|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숙 련 공       |    |     | 견 습 공 |   |    |
|       |        |              |     |    |     |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계     |        |              | 325 | 81 | 194 | 17        | 12 | 5 | 271         | 58 | 173 | 18    | 2 | 16 |
| 1     |        | 재 단 공        | 95  | 48 | 47  | 5         | 5  |   | 84          | 43 | 41  | 6     |   | 6  |
| 2     |        | 봉 제 공        | 135 | 5  | 130 | 7         | 2  | 5 | 118         | 3  | 115 | 10    |   | 10 |
| 3     |        | 프레스공(아이룸공)   | 4   | 2  | 2   |           |    |   | 4           | 2  | 2   | 2     | 2 |    |
| 4     |        | 기계 수리 공      | 2   | 2  |     |           |    |   | 2           | 2  |     |       |   |    |
| 5     |        | 검수 및 포장 공    | 21  | 6  | 15  |           |    |   | 21          | 6  | 15  |       |   |    |
| 6     |        | 냉난방공(보일러및냉방) | 2   | 2  |     | 1         | 1  |   | 1           | 1  |     |       |   |    |
| 7     |        | 운 전 기 사      | 3   | 3  |     | 3         | 3  |   |             |    |     |       |   |    |
| 8     |        | 전 공          | 1   | 1  |     | 1         | 1  |   |             |    |     |       |   |    |
| 9     |        | 목 공          | 1   | 1  |     | 1         | 1  |   |             |    |     |       |   |    |
| 10    |        | 기타(상·하역부)    | 11  | 11 |     |           |    |   |             |    |     |       |   |    |

※ 표시란은 조사통계국 기입란이므로 기입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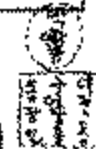
# 사업체명부

검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       |   |       |       |
|-----|-------|---|-------|-------|
| 시·도 | 구·시·군 | 구 | 동·읍·면 | 조사구번호 |
| 충남  | 대전    | 동 | 중     | 3     |

| (1) 일련번호 | (2) 사업체명 | (3) 대표자명 | (4) 사업체소재지                | (5) 경영조직  | (6) 본저점별                | (7) 사업의종류(산업)   | (8) 주요취급품 | (9) 종업원수 |     |     | (10) 비고 |
|----------|----------|----------|---------------------------|---|-------------------------|---|-----------|----------|-----|-----|---------|
|          |          |          |                           |   |                         |   |           | 계        | 남   | 녀   |         |
| 41       | 순상세차장    | 박문규      | 중동 135-1<br>(전화: 92-0017) | 1.공공단체<br>2.회사법인<br>3.화사이하<br>4.개인경영<br>5.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br>2. 본<br>3. 지 | 1.농림·수렵어업<br>2.광업<br>3.제조업<br>4.전기·가스·수도업<br>5.건설업<br>6.도·소매유통업·숙박업<br>7.운수·창고·통신업<br>8.금융·보험·부동산업<br>9.사회·개인서비스업<br>10.분류불응 산업 |           | 1        | 5   | 2   |         |
| 42       | 아파트복합방   | 최영철      | 136-3<br>(전화: 34-5577)    | 1.공공단체<br>2.회사법인<br>3.화사이하<br>4.개인경영<br>5.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br>2. 본<br>3. 지 | 1.농림·수렵어업<br>2.광업<br>3.제조업<br>4.전기·가스·수도업<br>5.건설업<br>6.도·소매유통업·숙박업<br>7.운수·창고·통신업<br>8.금융·보험·부동산업<br>9.사회·개인서비스업<br>10.분류불응 산업 |           | 2        | 2   |     |         |
| 43       | 국립은행대리점  | 정순석      | 128-1<br>(전화: 95-3303)    | 1.공공단체<br>2.회사법인<br>3.화사이하<br>4.개인경영<br>5.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br>2. 본<br>3. 지 | 1.농림·수렵어업<br>2.광업<br>3.제조업<br>4.전기·가스·수도업<br>5.건설업<br>6.도·소매유통업·숙박업<br>7.운수·창고·통신업<br>8.금융·보험·부동산업<br>9.사회·개인서비스업<br>10.분류불응 산업 |           | 124      | 64  | 60  |         |
| 44       | 제일상회     | 채만석      | 137-3<br>(전화: 77-1531)    | 1.공공단체<br>2.회사법인<br>3.화사이하<br>4.개인경영<br>5.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br>2. 본<br>3. 지 | 1.농림·수렵어업<br>2.광업<br>3.제조업<br>4.전기·가스·수도업<br>5.건설업<br>6.도·소매유통업·숙박업<br>7.운수·창고·통신업<br>8.금융·보험·부동산업<br>9.사회·개인서비스업<br>10.분류불응 산업 | 차약        | 10       | 6   | 4   |         |
| 45       | 대원건설주식회사 | 김판돈      | 120-3<br>(전화: 70-2985)    | 1.공공단체<br>2.회사법인<br>3.화사이하<br>4.개인경영<br>5.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br>2. 본<br>3. 지 | 1.농림·수렵어업<br>2.광업<br>3.제조업<br>4.전기·가스·수도업<br>5.건설업<br>6.도·소매유통업·숙박업<br>7.운수·창고·통신업<br>8.금융·보험·부동산업<br>9.사회·개인서비스업<br>10.분류불응 산업 |           | 324      | 118 | 207 |         |
| 46       | 삼성계스     | 이정복      | 120-5<br>(전화: 94-111P)    | 1.공공단체<br>2.회사법인<br>3.화사이하<br>4.개인경영<br>5.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br>2. 본<br>3. 지 | 1.농림·수렵어업<br>2.광업<br>3.제조업<br>4.전기·가스·수도업<br>5.건설업<br>6.도·소매유통업·숙박업<br>7.운수·창고·통신업<br>8.금융·보험·부동산업<br>9.사회·개인서비스업<br>10.분류불응 산업 |           | 16       | 10  | 6   |         |
| 47       | 대전성광사    | 박승혁      | 127-3<br>(전화: 96-3331)    | 1.공공단체<br>2.회사법인<br>3.화사이하<br>4.개인경영<br>5.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br>2. 본<br>3. 지 | 1.농림·수렵어업<br>2.광업<br>3.제조업<br>4.전기·가스·수도업<br>5.건설업<br>6.도·소매유통업·숙박업<br>7.운수·창고·통신업<br>8.금융·보험·부동산업<br>9.사회·개인서비스업<br>10.분류불응 산업 |           | 10       | 9   | 1   |         |
| 48       | 제일창고     | 윤순복      | 122-1<br>(전화: 92-1239)    | 1.공공단체<br>2.회사법인<br>3.화사이하<br>4.개인경영<br>5.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br>2. 본<br>3. 지 | 1.농림·수렵어업<br>2.광업<br>3.제조업<br>4.전기·가스·수도업<br>5.건설업<br>6.도·소매유통업·숙박업<br>7.운수·창고·통신업<br>8.금융·보험·부동산업<br>9.사회·개인서비스업<br>10.분류불응 산업 |           | 3        | 2   | 1   |         |
| 49       | 중앙컴퓨터    | 유종규      | 123-2<br>(전화: 93-1122)    | 1.공공단체<br>2.회사법인<br>3.화사이하<br>4.개인경영<br>5.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br>2. 본<br>3. 지 | 1.농림·수렵어업<br>2.광업<br>3.제조업<br>4.전기·가스·수도업<br>5.건설업<br>6.도·소매유통업·숙박업<br>7.운수·창고·통신업<br>8.금융·보험·부동산업<br>9.사회·개인서비스업<br>10.분류불응 산업 |           | 1        | 1   |     |         |
| 50       | 제일식당     | 박순미      | 121-5<br>(전화: )           | 1.공공단체<br>2.회사법인<br>3.화사이하<br>4.개인경영<br>5.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br>2. 본<br>3. 지 | 1.농림·수렵어업<br>2.광업<br>3.제조업<br>4.전기·가스·수도업<br>5.건설업<br>6.도·소매유통업·숙박업<br>7.운수·창고·통신업<br>8.금융·보험·부동산업<br>9.사회·개인서비스업<br>10.분류불응 산업 | 한식업       | 3        | 1   | 2   |         |

작성자 직위 지방행정주서로성명 박학규  
 확인자 직위 대전시청주무국장성명 김인식



1981년 총사업체통계조사

# 실사지도요령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二 목 차 二 —

|                            |    |
|----------------------------|----|
| I. 조사개요 .....              | 3  |
| II. 조사대상 .....             | 5  |
| III. 조사단위 .....            | 6  |
| IV. 조사표 기입요령 .....         | 8  |
| V.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      | 21 |
| VI. 실사지도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 25 |

## I.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전산업 사업체의 경제활동 실태와 그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산업구조의 변화추경, 고용수요의 예측을 함으로써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함.

### 2. 법적근거

본조사는 통계법(법률 제2799호)에 의하여 지정통계 제34호로 지정된 법정 통계조사이다.

### 3. 조사지역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

### 4. 조사대상

전산업의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단, 정부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조사기간

가. 조사기준일: 1981. 7. 31.

나. 조사기간: 1981. 8. 1~8. 20(20일간)

#### 6. 조사방법

본조사는 전수조사로서 지방 행정체계를 통한 동·읍·면직원 및 보조원에 의한 면접조사 방법에 의한다.

#### 7. 조사사항

사업체명 및 소재지, 경영조직, 사업장면적, 사업의 종류, 종업원수 및 월급여액, 직종별 종업원수 등 11개 사항

#### 8. 집계 및 공표

조사완료된 조사표는 내용검사, 부호기입 및 컴퓨터에 의한 자료처리 과정을 거쳐 1982. 12. 30까지 결과보고서로 공표한다.

## Ⅱ. 조 사 대 상

조사기준일 현재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산업의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1. 농가 및 어가  
단, 법인격을 갖고 있는 농업 및 어업사업체는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조사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기관과 이들 기관이 직영하는 사업체  
단, 국공립의 학교, 국공립병원(보건소 제외), 국공립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 부녀복지원, 부녀회 등)은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3.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4. 영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영업을 위한 고정 설비가 없는 사업체
5. 일정한 사무소 또는 영업장소가 없는 운수사업체
6.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의 시설내에 있는 또 다른 사업체(관공서 구내에 있는 식당, 이발소 등)

### Ⅲ. 조 사 단 위

조사의 단위는 개개의 사업체이다. 여기서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또는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경제단위로서 일반적으로 광산, 공장, 사무소, 학교, 연구소, 협회, 점포, 은행, 발전소, 영업소, 병원, 여관, 극장 등과 같은 개개의 장소를 말한다.

#### 조사단위 결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동일 구역 또는 장소에서 동일 경영자가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그러나 동일 경영자가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기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한다.
2. 동일구역 또는 장소에서 2인 이상의 경영자가 서로 독립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경영자 별로 별개의 사업체로 파악하여야 한다.
3. 광물을 채굴, 채석하고 있는 현장사무소(또는 영업소)는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그러나 건설공사현장 사무소는 별개의 사업체로 보지 않고 이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본사,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4. 동일 학교법인에 속하는 몇개의 학교 예컨대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유치원 등이 동일구내에 있는 경우라도 각 학교 마다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또한 동일학교라도 분교가 별도 장소에 있으면 각기 별개의 사업체로 한다. 그러나 정규 과정에 병설되어 있는 특설 과정은 별개의 사업체로 보지 않는다.



## Ⅳ. 조사표기입요령

### 1. 일반적 유의사항

- 가. 조사표는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기입한다.
- 나.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위 미만의 숫자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없도록 한다.
- 다.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는 사선「\」을 긋는다.
- 라. 잘못 기입된 경우는 복선을 긋고 그 위에 정정 기입한다.  
예) 17 ~~17~~명
- 마. 숫자로 표시하는 항목은 각 란의 합이 반드시 합계와 일치하도록 한다.
- 바. 선택형 질문은 반드시 해당번호 하나에만 ○표시 한다.

### 2. 난외사항 기입요령

- 가. 조사구번호는 동, 읍, 면별로 지정된 번호를 기입한다.
- 나. 사업체번호는 통, 반별로 조사가 완료된 순서로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조사표 편철시 이 순서대로 한다.
- 다. 조사표 하단의 응답자란에는 실제 응답자의 성명을 기입한다.
- 다. 조사자란에는 조사표를 작성한 동·읍·면직원 또는 보조원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한다.

### 3. 각란의 기입요령

#### 가. 사업체명 및 소재지

- (1) 사업체명은 외부에 표시된 상호를 기입한다. 상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만 기입한다.
- (2) 대표자 성명은 사실상의 대표자 성명을 기입하되,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그 중 어느 한 대표자 성명을 기입한다.
- (3) 사업자등록번호란 구 영업감찰번호를 말하며, 만일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입한다.
- (4) 전화가 있는 사업체는 전화번호를 빠짐없이 기입한다. 단, 전화가 없는 경우는 사선「\」을 긋는다.
- (5) 사업체소재지는 사업체가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소의 주소를 기입하되, 반드시 법정동명과 통, 구, 리 및 번지까지 상세히 기입한다. 그리고 백화점, 상설시장 및 종합상가 등과 빌딩내에 있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동별, 층별 및 호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예) 미도파백화점 2층 18호

KAL빌딩 신관 1209호

남대문 시장 가동 17호

#### 나. 경영조직

##### (1) 공공단체

공공단체란 공공 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상의 법인을 말하며, 본조사에서는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과 국공립의 학교, 도서관, 병원 및 특수사회시설을 여기에 포함한다.

(가) 공공조합

일정한 인적결합으로 특정한 공공사업을 존립의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 단체로서 1. 국가 강제조합, 2. 일부강제, 일부 임의조합 3. 임의조합 등이 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                |                  |
|----------------|------------------|
| 1. 토지개량조합      | 2. 산림조합          |
| 3. 중소기업협동조합    | 4. 농업협동조합 및 특수조합 |
| 5. 수출조합        | 6. 건설공제조합        |
| 7. 한국해운조합      | 8. 수산업협동조합       |
| 9. 염연초생산조합     | 10. 의료보험조합       |
| 11. 염업조합       | 12. 인삼조합         |
| 13. 대한상공회의소    | 14. 한국마사회        |
| 15. 변호사회       | 16. 재향군인회        |
| 17. 한국반공연맹     | 18. 군무원호대상자단체    |
| 19. 대한접십자사     | 20. 대한교육연합회      |
| 2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22. 건축사협회        |
| 23. 대한건설협회     | 24. 측량협회         |
| 25. 한국선급협회     | 26. 대한관광협회       |
| 27. 문화원연합회     | 28. 변리사회         |
| 29. 공인회계사회     | 30. 의사회          |
| 31. 약사회 등을 말한다 |                  |

(나)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다음 기관을 말한다.

- |               |                  |
|---------------|------------------|
| 1. 한국은행       | 2. 한국산업은행        |
| 3. 중소기업은행     | 4. 국민은행          |
| 5. 한국주택은행     | 6. 한국조폐공사        |
| 7. 한국증권거래소    | 8. 대한선탄공사        |
| 9. 한국전력주식회사   | 10.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
| 11. 대한무역진흥공사  | 12. 대한광업진흥공사     |
| 13. 농어촌개발공사   | 14. 농업진흥공사       |
| 15. 대한주택공사    | 16. 대한건설공사       |
| 17. 산업기지개발공사  | 18. 한국도로공사       |
| 19.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20. 국제관광공사       |
| 21. 한국방송공사    | 22. 토지개발공사       |
| 23. 한국해외개발공사  | 24. 근로복지공사       |

(다) 정부출연기관

정부에서 출연금을 교부하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              |             |
|--------------|-------------|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2. 과학재단     |
| 3. 핵연료 개발공단  | 4. 해양개발연구소  |
| 5. 지역개발연구소   | 6. 표준연구소    |
| 7. 산학연구소     | 8. 화학연구소    |
| 9. 기계금속시험연구소 | 10. 전자기술연구소 |

11. 전기기기시험연구소
12. 자원개발연구소
13. 열관리시험연구소
14. 한국개발연구원
15. 국제경제연구원
16. 농업시험연구소
17. 건설연구소
18. 공업시험연구소
19. 수산시험연구소
20. 임업시험연구소
21. 과학기술정보센터
22. 기술검정공단
23. 한국종합에너지 연구소
24. 한국보험공사
25. 증권감독원
26. 신용보증기금 등이 있으며 그외에도 상당수가 있으니 현지 조사시 착오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법인**

회사법인이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여기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가 있다.

**(3) 회사이외의 법인**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것 중 회사이외의 사업체를 말하며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4) 개인경영**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법인격을 갖지 않은 2인 이상의 공동 경영도 여기에 포함한다.

**(5) 비법인단체**

법인격을 갖지 않은 비영리 단체로서 학회, 문화단체, 친목회, 동창회, 종친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다. 본·지점별

##### (1) 단독사업체

동일 경영의 지사, 지점, 지소 등이 없는 1기업 1사업체 경우를 말한다.

##### (2) 본 점

동일경영의 지사 또는 지점을 갖고 있는 본사나 본점을 말하며, 지점수의 기입란에는 전국에 소재하는 지사, 지점, 지소 및 영업소 등의 수를 기입한다.

##### (3) 지 점

본사 또는 본점의 총괄을 받고 있는 지사, 지소, 지점을 말하며 공장, 출장소, 영업소, 창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라. 자본금 또는 출자금

회사법인일 경우에 한하여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조사기입하며 지점의 경우는 조사하지 않는다.

#### 마. 개점년월

개점년월은 사업체가 사업을 시작한 시기를 말하며, 법인사업체의 경우는 법적 설립 연월을 기입하고, 개인경영사업체의 경우엔 현재의 장소에서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연월을 기입한다.

(1) 다음의 경우는 그 시기를 개점년월로 보지않고 변경전의 것으로 소급하여 계산한다.

(가) 상속에 의하여 인계된 때

(나) 화재 또는 기타의 재해를 받은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시작하였을 때

(대) 다른 사업체와 합병하였을 때

(2) 다음의 경우는 그 시기를 개점년월로 계산한다.

(가) 사업체가 지점 또는 출장소인 경우 그 지점 또는 출장소가 개설된 때

(나) 타 사업주로부터 영업권을 양도 받았을 때

(다) 다른 사업에서 전업하여 현재의 사업을 경영하게 되었을 때

#### 바. 사업장 면적

(1) 사업장이란 사무소, 점포, 공장, 작업장 등과 같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장의 면적이란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남에게 빌려준 장소나 주거비용의 경우 순수한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말한다.

(2) 사업장의 면적은 건물과 대지로 구분하여 기입하며, 건물의 경우에는 사업체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연 면적을 기입한다.

#### 사. 사업의 종류

##### (1) 사업내용

(가) 사업체 또는 기관에서 주로하는 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 상세히 기입하여야 하며, 2가지 이상의 사업을 겸업할 경우에는 주된 사업 하나만을 기입한다.

여기서 주된 사업이란 지난 1년간 수입이 가장 많았던 사업을 말한다.

(단) 사업체의 활동이 두개 이상의 산업에 연결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예컨대 벌목업과 제재업, 또는 검토 채굴업과 벽돌 제조업등과 같이 그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최종목적사업 즉 제재업과 벽돌 제조업을 주된 활동으로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목을 원목 그대로 판매하고 극히 일부분을 제재하는 경우에는 벌목업을 주된 산업으로 간주한다.

기입예)

| 잘못 기입된 것     | 옳게 기입된 것  |
|--------------|-----------|
| 1. 신발판매      | 신발소매      |
| 2. 음식점       | 중국 음식점    |
| 3. 운수회사      | 시내버스 운수회사 |
| 4. 건설업       | 주택건설회사    |
| 5. 주식회사 한림산업 | 알마늄출 제조회사 |

(2) 주요 생산품 및 취급상품

이 란은 제조가공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제조상품 또는 취급상품이 2개 이상 일때에는 지난 1년간 생산 또는 판매액이 가장 많았던 상품 하나만 기입한다.



## 아. 영업형태

사업체의 산업활동이 제조가공업 또는 소매업일 경우에는 1항 내지 5항중 어느 하나에 ○표가 되어야 하며, 그이외의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는 6항에 ○표 되어야 한다.

### (1) 제조가공업

제조업이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가공업이란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제공받아 다시 완제품으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문발행업 및 인쇄출판업과 수선 또는 수리업중 자동차, 자전거 등 개인용품의 수리업을 제외한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등과 일반기계의 수선 또는 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된다.)

### (2) 제조소매업

제조소매업이란 자가 제조가공한 제품을 개인이나 가정용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제과점, 양복점, 양장점등이 여기 포함된다.

### (3) 소매업

소매업이란 개인용, 가정용소비를 위하여 상품의 변형을 가하지 않고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 (4) 도매업

도매업이란 소매업자 다른 도매업자, 산업사용자와 단체 수요자에게 상품의 변형을 가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상품중개업과 무역업도 여기에 포함한다.

(5) 도산매입

도산매입이란 상품의 도매와 소매를 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자. 종업원수 및 월급여액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대상 사업체(또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자를 다음 구분에 따라 조사 기입한다. 다만 상용고용원과 임시 및 일일고용원에 대하여는 이들에게 지급된 7월분 급여총액을 조사 기입한다.

(1) 합 계

총 종업원수를 남, 여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2) 사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

개인경영 사업체의 소유주(출자자 포함)와 그 가족으로서 사업체의 운영에 종사하고 있으나,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자를 말한다.

(3) 상용고용원

1개월 이상의 고용 기간을 정하여 고정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종업원과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조사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고 있는자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가) 법인사업체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원(사장, 이사, 감사 등)은 상용고용원으로 분류되나 이익배당만 받는 주주는 제외한다.

(나) 사업주의 가족이라도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대) 일정급여 또는 판매수수료를 받는 의무사원, 판매원 및 배달원

**(4) 임시 및 일일고용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또는 일일로 고용된 자를 말한다.

**(5) 무급고용원**

요식업체 등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지않고 주로 고객의 팀만을 받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접대부, 호스티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차. 직종별 종업원수**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수를 남, 녀별로 구분하고 다시 직종별로 아래 구분에 따라 조사 기입한다.

**(1) 관리 및 사무직**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리자는 여기에 포함한다. 다만 개인경영사업체의 경영자와 관리자는 (5) 기타에 분류한다.

단, 개인 경영자와 관리자중 병원의 원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등 전문성을 지닌 경영자 및 관리자는 (3) 전문, 기술 및 관련직에 분류한다.

**(2) 전문, 기술 및 관련직**

과학, 공학, 의학, 법률, 교육, 종교, 예술분야등에서 전문적인 직능을 수행하는 학자, 변호사, 교원, 의사, 약사, 성직자, 예술가, 체육인 등과 2급이상의 기사 자격증을 가진 고급기술인력을 말한다.

### (3) 기능공

제품의 제조 가공 및 수선과 각종 기계 및 장비등의 조  
작(운전)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직공(숙련공) 및 견습  
공과 기계 및 도구등 사용에 있어서 전문적인 숙련은 없으  
나 그들의 직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용한 경험  
을 얻는 노무자들은 여기에 포함한다.

### (4) 기타 직업종사자

판매및 서비스업종사자, 농림수산업 종사자 등 상기 이  
외의 직업종사자는 여기에 분류한다.

## 카. 직종별 기능공

- (1) 전항의 기능공란에 한명이라도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반  
드시 이란을 조사 기입하고 기능공이 한명도 없는 경우에  
는 사선[ \ ]을 긋는다.
- (2) 기능공의 직종명은 부록의 직업분류에 명시된 직종을 기입  
하여야 하며, 다만 부록의 직업분류에 의한 직종분류가 곤  
란한 경우에는 사업체에서 통용되고 있는 직종명을 기입하  
되 외래어는 가능한한 우리말로 해석하여 기입한다.
- (3) 이 사업체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전기사, 전  
기설비공, 기계장비정비공, 냉난방공, 목공 등이 있는 경우  
에는 아들을 누락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4) 직종이 다양하여 그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공정별  
로 구분하여 유사 직종을 취합하여 10개 이내로 분류 기  
입한다. 이때 전공, 운전기사, 냉난방공등을 누락하지 않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5) 숙련공이란 단독으로 공정을 처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견습공은 단독으로 공정을 처리할 수 없는 자로서 단순히 숙련공 밑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자라든지 수습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6) 전항의 기능공에 해당되는 단순노무자는 견습공으로 본다.

## V.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 1. 조사표 검토 및 정리

- 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표 매수를 사업체 번호와 상호 대조확인한다. 이때 사업체 번호가 잘못 기입되지 않았나 또는 번호의 누락이 없는가를 검토한다.
- 나. 조사표 기입 내용에 오기 또는 누락이 없는가를 검토한다. 조사표 기입 내용에 오기 또는 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조사 보완하여야 하며, 잘못 기입된 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부선을 긋고 그 상단에 정정 사항을 기입한다.

### 2. 사업체 명부 및 요계표 작성

#### 가. 사업체명부 작성

##### (1) 일반적 주의사항

- (가) 사업체 명부 작성은 조사표의 내용 검토와 정리가 완료된 후 조사표에 의거 작성한다.
- (나) 명부 작성은 조사구별로 한다.
- (다) 명부 편철은 조사구별로 1권씩 한다.

##### (2) 난의 기입요령

- (가) 행정구역명과 조사구 번호는 조사표 내용과 일치 하여야 한다.
- (나) 작성자 및 확인관 란에 각각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한다.

(3) 각 란의 기입요령

(가) (1) 일련번호

일련번호는 조사표 상단의 사업체일련번호와 일치되어야 한다.

(나) (2) 사업체명-(6) 본지점별

(2)란부터 (6)란까지는 조사표 내용을 그대로 이기한다.

(다) (7) 사업의 종류

이 난은 사업체의 산업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표의 (7)사업의 종류 란에 조사 기입된 사업 내용을 조사요령서 부록 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분류 해당란에 ○표한다.

(라) 주요 생산품 또는 주요 취급상품

이란은 7란의 6. 도. 소매및 음식·숙박업에 ○표된 경우에 한하여 조사표 7란 2항의 취급상품명을 이기한다.

(마) 종업원수

이란은 조사표 9. 종업원수 및 월급여액 란의 종업원수 합계를 이기한다.

나. 요계표 작성

- (1) 각 동·읍·면 조사담당 직원은 검토가 완료된 조사표에 의거 요계표 4부(충남 대전시 및 진남 광주시의 각동은 5부)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3부는 조사표와 함께 구·시·군에 제출한다.

- (2) 각 구·시·군에서는 동·읍·면에서 제출된 요계표를 취합 구·시·군 요계표 3부(대전시, 광주시의 구는 4부)작성 이중 1부와 동·읍·면 요계표중 1부를 보관하고, 나머지 요계표는 조사표와 함께 시·도에 제출한다.
- (3) 각 시·도는 다시 구·시·군 요계표를 취합 시·도 요계표 2부를 작성하고 동·읍·면 및 구·시·군 요계표 각 1부씩을 첨부 조사표와 함께 경제기획원에 제출한다.

### 3. 조사표류의 편철

#### 가. 조사표

조사표의 편철은 조사구별로 1권으로 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개 조사구 내에 사업체수가 201개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 요령에 의거 분할 편철한다.

1매-200매 = 1 권

201매-400매 = 2 권

401매-600매 = 3 권

601매 이상 = 4 권

#### 나. 사업체 명부

사업체 명부는 매수에 관계없이 조사구 별로 1권으로 철한다.

#### 다. 요계표

요계표 철은 한국행정구역분류의 순서에 의거 각 구·시·군 별로 1권씩 철한다.



#### 4. 조사표류의 제출시기

가. 조사요원은 완료된 조사표류를 8.23까지 동읍면에 제출한다.

나. 동·읍·면에서의 구·시·군 제출시기와 구·시·군에서의 시·도 제출시기는 각 시·도지사가 적의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시·도에서는 81. 9. 20까지 경제기획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다. 제출 조사표류는 다음과 같다.

- (1) 조사표
- (2) 사업체명부
- (3) 요계표
- (4) 보조조사표
- (5) 조사구 설정 기본도

## VI. 실시지도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토권·복권판매소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2. 농협중앙회는 본점, 시·도지회 및 군부의 군지부와 동·읍·면에 있는 예금취급소, 출장소 또는 지소는 지점에 해당되나 동·읍·면의 단위조합은 농협중앙회와는 별개이므로 이를 단독 사업체로 보아야 한다.
3. 사설우체국은 대상에서 제외
4. 종업원이 없고 건물만 있는 경우는 사업체로 보지 않는다.
5. 대학교와 부속병원은 별개사업체
6. 대학원은 대학에 포함
7. 휴업사업체는 모두 조사한다.  
(단,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는 사업체명과 주소만 기입하고, 기타란에 큰 글씨로 “휴업”이라 명시함. 이때 휴업일자도 명시한다)
8. 커피, 음료수등 자동판매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특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경우)
9. 동일구내에 2 가지 이상 업종을 동일인이 겸하고 있을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일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체로 보고, 별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10. 사찰, 교회등 종교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성직자의 경우 봉급받을때에는 상용고용원으로 분류하고, 봉급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고용원으로 분류한다.
11. 교회, 사찰 및 모든 종교단체는: 단독사업체로 본다.  
(본·지점 관계없음)
12. 학교법인이 아니고 유치원 간판만 있을 경우 유급종업원이 있을 경우만 비법인 단체 유치원으로 본다.
13. 신문사의 지사, 지국, 보급소는 본지점 채널 관계없음(도·소매업)
14. 병원의 경영조직은 2가지임.
  - ① 개인(의료인이 개설했을 경우)
  - ② 회사이외의 법인(의료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이 개설했을 경우)
15. 개인사업체 경우도 본·지점 있음.
16. 광산의 사업장면적  
사무소가 있는 곳의 울타리 내부 면적만 계산함.
17. 교수는 소속학교의 종업원에만 계산
18. 종업원에는 "주인"도 포함시킨다.
19. 버스안내양은 "사무 및 관리직"에 포함한다.  
단, 관광버스 안내양과 호텔등 안내원은 "기타"에 분류 기입한다.
20. 중장비 및 일반차량 운전기사는 "기능공"에 분류 기

입한다.

21. 교환수 및 타자수는 “관리직 및 사무직”에 분류  
기입한다.

22. 고물상은 “도매업”이다.

23. 모든 개인사업체의 주인은 조사표 “9란” 종업원  
형태에 있어서는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에 분  
류하고, “10란” 직종별 종업원수에 있어서는 5항  
기타에 분류 기입한다.

그러나 약국의 주인이 약사일 경우, 개인병원의 원  
장,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는 전문 기술직에 분류  
하며 그외의 개인경영 사업체의 사업주 및 관리인  
은 기타에 분류한다.

1981년 총사업체조사

# 조사구 설정요령서

1981. 2.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차 례

|                     |   |
|---------------------|---|
| I. 조사구 설정개요         | 2 |
| 1. 목    적           | 2 |
| 2. 설정기간             | 2 |
| 3. 설정지역             | 2 |
| 4. 설정기관             | 2 |
| 5. 설정방법             | 2 |
| II. 조사구 설정기준        | 3 |
| 1. 조사구 설정의 기본원칙     | 3 |
| III. 조사구 설정요령       | 3 |
| 1. 사업체 및 지리좌락       | 3 |
| 2. 행정구역도(기본도)의 확보   | 4 |
| 3. 행정구역도의 수정 및 보완   | 4 |
| 4. 사업체수 표시방법        | 5 |
| 5. 대상 사업체의 범위       | 6 |
| 6. 조사구의 설정          | 7 |
| 7. 조사구의 심사          | 7 |
| 8. 조사구의 승인신청        | 7 |
| 9. 조사구의 승인          | 8 |
| IV. 조사구의 수정         | 8 |
| 1. 수정기간             | 8 |
| 2. 수정범위             | 8 |
| 3. 수정방법             | 8 |
| 4. 변경된 조사구 번호       | 9 |
| 5. 수정조사구에 대한 관계서류제출 | 9 |

## 1981년 총사업체조사 조사구 설정요령

### I. 개 요

#### 1. 목 적

1981년 총사업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 담당지역을 명확히 하여

- 가. 조사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며
- 나. 조사원의 업무량을 균등히 배분하고
- 다. 기타 사업체 대상 각종 통계조사에 이용함.

#### 2. 설정기간

1981. 2. 16 - 4. 15

#### 3. 설정지역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

#### 4. 설정기관

경제기획원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장 및 각 도지사는 관할 지역내의 조사구 설정업무에 관하여 구, 시, 군의 장과 동, 읍, 면장을 지휘 감독하고, 구, 시, 군의 장과 동, 읍, 면장은 당해 관할 지역의 조사구 설정업무를 관할 집행한다.

#### 5. 설정방법

조사구 설정은 각 동, 읍, 면별로 행정구역도(기본도)에 의거 행정구역의 경계와 통, 행정, 리, 동을 조사구 경계로 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 지역내의 조사구를 설정한다.

## II. 조사구의 설정기준

### I. 조사구 설정의 기본원칙

- 가. 조사구는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역에 행정 동, 읍, 면별로 설정한다. 따라서 어느 조사구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나. 하나의 조사구는 반드시 한 지역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즉, 한 조사구가 타 조사구에 의하여 2개 지역으로 분할되어서는 안된다.
- 다. 조사구는 동, 읍, 면 단위로 설정함으로써 인접 동, 읍, 면의 관할 지역을 침범할 수 없다.
- 라. 조사구는 단위 행정구역울 이용하여 일반사업체 500 개를 기준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450~550개 사업체 범위내에서 설정한다. 단,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마. 조사구 경계는 시부의 경우는 동, 군부의 행정 리, 구 및 동의 경계를 이용하여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바. 1개 동, 읍, 면에 사업체수가 500개 이하일 때는 1개의 조사구로 설정한다.

### III. 조사구의 설정요령

#### I. 사업체 및 지리과악

조사구 설정에 앞서 관할 지역내의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가. 사업체 위치와 사업체수를 확인한다.
- 나. 사업체의 누락 가능성이 많은 지역 즉, 지하실(특히 일반 가정집) 임시건물내의 점포, 유원지, 극장 등 각종 시설내의 구내 매점을 확인한다.



• 사업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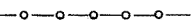
사업체란 「재화의 생산 및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을 행하는 개개의 장소」로서 일반적으로 공장, 공장, 사무소, 사업소, 학교, 연구소, 협회, 심포, 은행, 판매소, 영업소, 병원, 여관, 극장 등과 같이 1구역을 점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를 말한다.

2. 행정구역도(기본도)의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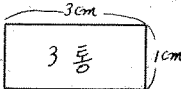
- 가. 행정 구역도는 각 동, 읍, 면에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관내지도를 말하며, 행정구역도가 없는 동, 읍, 면에서는 「198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에 사용한 기본도를 복사 이용하던가 아니면 조그마한 관내도를 확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나. 행정구역도는 전지 또는 2절지 크기로 한다.

3. 행정구역도의 수정 및 보완

- 가. 확보한 행정구역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이를 수정하고, 특히 주요 지형지물을 빠짐없이 정밀하게 추가 보완한 후 동, 리, 동, 구의 경계를 표시한다.
- 나. 시부의 통 및 군부의 행정 리, 동, 구 경계는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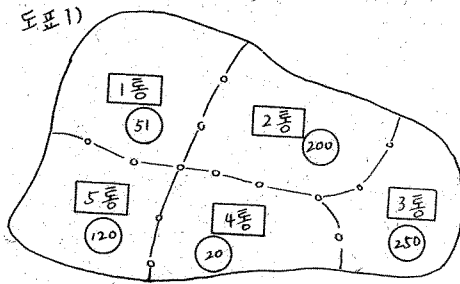
예)  (흑색으로 표시한다)

- 다. 통, 리, 동, 구 경계표시가 완료되면 통, 리, 동, 구별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통, 리, 동, 구 명칭을 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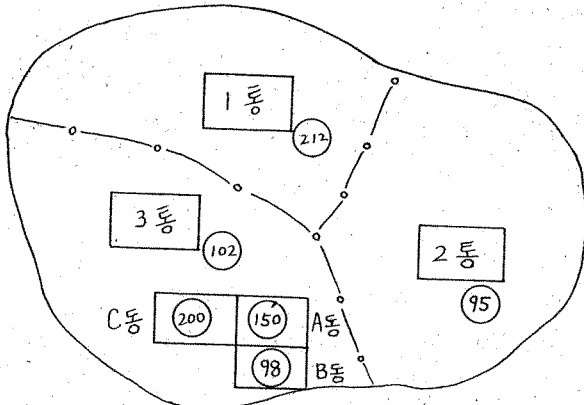
예)  (청색 싸인펜으로 표시한다)

4. 사업체수 표시방법

가. 붓뚜껑과 같은 둥근 도장 (직경 5mm정도)을 인주로 통·리·동·구 중앙에 찍고 그 안에 통·리·동·구별 사업체 총수를 연필로 기입한다. 이때 사업체수는 공공행정기관을 제외한 사업체수를 말한다.



나. 사업체수가 1개 통·리(행정리)에 500개가 훨씬 넘는 경우에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사업체수가 300개 내지 500개가 되도록 분할하고 사업체수를 「가」항과 같이 표시한다. 그런데 시장 및 상가등인 경우 단일건물 또는 구획내에 사업체수가 밀집되어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도 여백 또는 별지에 확대하여 상기 방법으로 분할 표시한다.



5. 대상 사업체의 범위

대상 사업체의 범위는 1981. 2. 1 현재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나 단, 다음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 가. 한국표준 산업분류 대분류 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중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와 대분류 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91 공공행정 및 국방 953가사서비스업 및 96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 공공행정기관이란

군, 경찰, 입법, 사법 및 행정부서를 포함한 중앙 및 지방정부 기관으로 외교, 조세 및 재정,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보장, 기업규정 및 등록, 통계수집 및 분석, 일반경제 및 사회복지 등 과 같은 활동의 행정을 수반하는 부·처·청·국·사무소를 말한다.

나. 영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영업을 위한 고정설비가 없는 사업체다. 제철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체로서 조사기준일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체

#### 6. 조사구의 설정

가. 동·읍·면 담당자는 조사구 설정기준에 의하여 관할 구역내의 사업체 분포, 지리적 조건, 조사원의 업무량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행정구역도상에 합리적인 조사구를 설정한다.

나. 이때 동·읍·면 단위로 총 사업체수가 500개 미만인 경우는 자동적으로 1개의 조사구로 설정된다

다. 500개 이상되는 동·읍·면에서만 분할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동·리·구·동의 일부분을 동·리·구·동과 합하여 설정할 때는 아니된다. 즉, 동·리·구·동 전체가 합해지든가 아니면 동·리·구·동 단위별로 설정되어야 한다.

라. 조사구 설정은 연필로 표시한다.

#### 7. 조사구의 심사

가. 각 동·읍·면에서 설정된 조사구는 다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중앙지도원 또는 시·도 지도원의 심사를 거쳐 조사구를 확정한다. 이때 조사구 경계는 철색 싸인펜으로 표시한다.

나. 확정된 조사구는 순서대로 조사구 번호를 상단부터 하단으로 또는 좌측부터 우측 순서대로 기입한다.

#### 8. 조사구의 승인신청

가. 조사구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각 동·읍·면에서는 소정의 식지에 의하여 조사구 일람표 4부를 작성, 1부는 보관하고 3부는 심사가 끝나는 날부터 3일 이내 구·시·군에 제출한다.

나. 구.시.군에서는 각 동.읍.면에서 제출된 조사구 일람표에 의하여 행정구역 순으로 구.시.군 조사구 일람표를 3부 작성, 1부는 보관하고 2부는 동.읍.면 분과 함께 5일 이내에 시.도에 제출한다. 다. 각 시.도에서는 최종 심사 완료 후 15일내에 경제기획원에 제출한다.

#### 9. 조사구의 승인

각 시.도로부터 제출된 조사구는 조사구 승인 신청 관계서류를 경제기획원 장관이 검토한 후 승인 조치한다.

### IV. 조사구의 수정

#### 1. 수정기간

조사구 설정 완료 후 조사구의 수정을 요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981. 6. 30일까지 조사구 수정보고서를 작성 경제계획원 장관에게 제출한다.

#### 2. 수정범위

- 가. 동.읍.면, 통.리.구 등의 경계가 변경되었을 때
- 나. 조사구내 사업체수가 현저히 증감되었을 때.

#### 3. 수정방법

- 가. 타 동.읍.면, 통.리.구 등으로부터 편입된 지역은 우선 행정구역도에 편입지역을 연결하여 사업체수를 보완한 다음 조사구 설정기준에 의하여 재 설정하거나 인접조사구에 병합 설정한다. 이와 반대로의 경우도 수정방법은 동일하다.
- 나. 조사구 설정후 조사구내의 사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을 때는 행정구역도에 증가 사업체수를 보완하고 설정기준에 의하여 분할 재 설정한다. 반대로, 사업체수가 감소되었을 때는 인접조사구와

평합하여 설정한다.

4. 변경된 조사구 번호

이미 설정된 조사구가 완전히 없어진 경우에는 그 조사구 번호를 결  
번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조사구가 더 증설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설  
정 부여된 번호의 맨 끝번 다음에 이어서 번호를 부여한다.

5. 수정 조사구에 대한 관제서류 제출

각 동·읍·면에서 조사구를 수정 보완하였을 경우 1981. 6. 20 일까  
지 수정보고서 4부를 작성, 1부는 보관 3부는 구·시·군에 제출  
하고 구·시·군에서는 그 중 1부를 보관하고 2부는 시·도에 제출  
한다. 시·도에서는 다시 1부를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1981. 7  
10 까지 경제계획원 장판에게 제출한다.

<부록1>

조사구 일람표(동·읍·면용)

| 조사구 수 | 사업체 수 |
|-------|-------|
|       |       |

| 조사구번호 | 사업체수 | 소 | 제 | 지 | 비 |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국·공영사업체수를 기입한다.

구  
시  
군

동  
읍  
면

장

<부록 2>

조사구 일람표(시·도·구·시군용)

| 조사구 수 | 사업체 수 |
|-------|-------|
|       |       |

| 행정구역 | 조사구 수 | 사업체 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도

구  
시  
군

인



<부록3>

조사구 수정 보고서

| 구조사구번호 | 신 조사구 |      | 소재지 | 사유 |
|--------|-------|------|-----|----|
|        | 번호    | 사업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수정 보고합니다.

1981.

구  
사  
준

동  
음  
면

장

| 산업분류 | 항 목 명             | 산업분류 | 항 목 명               |
|------|-------------------|------|---------------------|
| 1.   |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 22   |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
| 11   | 농업 및 수렵업          | 220  |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
| 111  | 농업                | 2200 |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
| 1111 | 작물생산업             | 23   | 금속광업                |
| 1112 | 축산업               | 230  | 금속광업                |
| 112  | 농업서비스업            | 2301 | 철광업                 |
| 1121 | 작물농업서비스업          | 2302 | 비철금속광업              |
| 1122 | 축산서비스업            | 29   | 기타광업                |
| 1129 |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업서비스업 | 290  | 기타광업                |
| 113  | 수렵업               | 2901 | 토사석 채취업             |
| 1130 | 수렵업               | 2902 | 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
| 12   | 임업                | 2903 | 얼굴                  |
| 121  | 영림업               | 2909 |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업       |
| 1210 | 영림업               | 3.   | 제조업                 |
| 122  | 벌목업               | 31   |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
| 1220 | 벌목업               | 311~ |                     |
| 13   | 어업                | 312  | 식료품 제조업             |
| 130  | 어업                | 3111 | 도상, 고기가공 및 저장업      |
| 1301 | 월양 및 연근해어업        | 3112 | 나눔제품 제조업            |
| 1302 |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어업     | 3113 | 과실 및 야채통조림 및 가공 저장업 |
| 2.   | 광업                | 3114 | 해산물 통조림 및 가공 저장업    |
| 21   | 석탄광업              | 3115 | 동식물 유지 제조업          |
| 210  | 석탄광업              | 3116 | 도장 및 세분업            |
| 2101 | 무연탄광업             | 3117 | 빵 제빵 및 곡수제조업        |
| 2102 | 갈탄광업              | 3118 | 설탕제조업               |
| 2109 |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석탄광업   | 3119 | 설탕과자 제조업            |

| 산업분류 | 항 목 별                               | 산업분류 | 항 목 별  |
|------|-------------------------------------|------|--|
| 3121 |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br>료품 제조업              | 3233 | 가죽 및 대용가죽제품제조업, 신발 및 의복제의<br>신발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신발제의 |
| 3122 | 배합사료제조업                             | 324  | 신발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신발제의                              |
| 313  | 송료품 제조업                             | 3240 | 신발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신발제의                              |
| 3131 | 중류수 및 합성수 제조업                       |      |  |
| 3132 | 발효주 제조업                             | 33   |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
| 3133 | 맥주 및 맥아 제조업                         |      | 가구포함   |
| 3134 | 정량음료 제조업                            | 331  |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br>제조업 가구제의                            |
| 314  | 담배제조업                               | 3311 | 제재업 및 목재가공업  |
| 3140 | 담배제조업                               | 3312 | 목재용기 및 등세공품제조업                                       |
| 32   |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 33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나무<br>및 콜크제품 제조업                          |
| 321  | 섬유제조업                               | 332  |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br>금속가구 제외                             |
| 3211 | 방직 및 재사업                            |      |  |
| 3212 | 직물제품 제조업, 의복<br>제의                  | 3320 |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br>금속가구 제외                             |
| 3213 | 편직업                                 | 34   |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br>업, 인쇄 및 출판업                           |
| 3214 | 용단 및 문자리제조업                         | 341  |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
| 3215 | 끈 및 로프산업                            | 3411 | 필드, 종이 및 판지제조업                                       |
| 3216 | 직조업                                 | 3412 | 종이 및 판지용기제조업   |
| 3217 | 섬유표백, 염색 및 정리업                      | 34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필<br>드, 종이 및 판지제품 제<br>조업                 |
| 32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섬<br>유제조업                | 342  | 인쇄, 출판 및 관련사업  |
| 322  | 의복제조업, 신발제의                         | 3421 | 인쇄 및 출판업   |
| 3220 | 의복제조업, 신발제의                         |      |  |
| 323  | 가죽, 대용가죽 및 모<br>피제품제조업, 신발과<br>의복제의 |      |  |
| 3231 | 가죽제조업                               |      |  |
| 3232 | 모피가공업                               |      |  |

| 산업분류 | 항 목 명          | 산업분류 | 항 목 명           |
|------|----------------|------|-----------------|
| 3422 | 인쇄관련 사업        | 35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프    |
| 35   | 화학물과 화학, 석유, 석 |      | 라스틱제품 제조업       |
|      | 탄, 고무 및 프라스틱 제 | 356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프    |
|      | 품 제조업          |      | 라스틱제품 제조업       |
| 351  | 산업용 화학물 제조업    | 3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 3511 | 산업용 기초화학물 제    |      | 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
|      | 조업 비료제외        | 361  | 도기, 자기 및 토기제조업  |
| 3512 | 비료 및 상충제 제조업   | 3610 | 도기, 자기 및 토기 제조업 |
| 3513 | 합성수지, 프라스틱물질   | 362  |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      | 및 인조섬유제조업, 유   | 3620 |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      | 리 제외           | 369  |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    |
| 352  |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      | 조업              |
| 3521 | 도료제조업          | 3691 | 구조 점토제품 제조업     |
| 3522 | 의약품 제조업        | 3692 |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틱  |
| 3523 | 비누, 세정제 및 화장품  |      | 제조업             |
|      | 제조업            | 369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    |
| 352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   |      | 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학제품 제조업        | 37   | 제 1 차 금속산업      |
| 353  | 석유정제업          | 371  | 제 1 차 철강산업      |
| 3530 | 석유정제업          | 3710 | 제 1 차 철강산업      |
| 354  | 기타 석유 및 석탄 제품  | 372  | 제 1 차 비철금속산업    |
|      | 제조업            | 3720 | 제 1 차 비철금속산업    |
| 3540 | 기타 석유 및 석탄 제품  | 38   |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  |
|      | 제조업            |      | 비 제조업           |
| 355  | 고무제품 제조업       | 381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   |
| 3551 | 타이어 및 튜브산업     |      | 계 및 장비제외        |
| 355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고   | 3811 | 납붙이, 수공구 및 철물   |
|      | 무제품 제조업        |      | 제조업             |

| 산업분류 | 항 목 명                                    | 산업분류 | 항 목 명  |
|------|--|------|--|
| 3812 | 금속제가구 및 장치물<br>제조업.                      | 3842 | 철도장비 제조업   |
| 3813 |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3843 | 자동차 제조업  |
| 38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br>립금속제품 제조업, 기<br>계 및 장비제외 | 3844 | 모터사이클 및 자전거<br>차 제조업                                   |
| 382  | 기계제조업, 전기제외                              | 3845 | 항공기 제조 및 수선업   |
| 3821 | 기관 및 터빈제조업                               | 384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br>수장비 제조업                                |
| 3822 | 농업용기계 및 장비 제<br>조업                       | 385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br>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br>비와 사진 및 광학제품<br>제조업 |
| 3823 |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br>제조업                       | 385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br>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br>비 제조업               |
| 3824 | 특수산업용기계 및 장<br>비제조업, 금속공작 및<br>목공기계 제외   | 3852 | 사진 및 광학용품 제조업  |
| 3825 |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br>계 제조업                     | 3853 | 시계제조업  |
| 382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br>계 및 장비제조업, 전기<br>제외      | 39   | 기타제조업  |
| 383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390  | 기타제조업  |
| 3831 | 전기산업용 기계 및 장<br>치 제조업                    | 3901 | 장신구 및 주변제품제조업  |
| 3832 | 라디오, 텔레비콘 및 통<br>신장비 제조업                 | 3902 | 악기제조업  |
| 3833 | 가정용 전기기구 제조업                             | 3903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 383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br>기기계 기구제조업                | 390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br>조업                                     |
| 384  | 운수장비 제조업                                 | 4    | 전기, 가스 및 수도산업  |
| 3841 | 선박 건조 및 수선업                              | 41   | 전기, 가스 및 증기업   |
|      |  | 410  | 전기, 가스 및 증기업   |
|      |  | 4101 | 전기업  |
|      |  | 4102 | 가스제조 및 공급업   |
|      |  | 4103 | 증기 및 온수 공급업  |
|      |  | 42   | 수도산업   |

| 산업분류 | 항 목 명          | 산업분류 | 항 목 명          |
|------|----------------|------|----------------|
| 420  | 수도산업           | 528  | 방수, 방습 및 내화공사업 |
| 4200 | 수도산업           | 5280 | 방수, 방습 및 내화공사업 |
| 5.   | 건설업            | 52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   |
| 51   | 종합건설업          |      | 문직별 공사업        |
| 511  | 전통건설업          | 5291 | 유리공사업          |
| 5111 | 주택건설업          | 5292 | 경지공사업          |
| 51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   | 5293 | 군정공사업          |
|      | 물건설업           | 5294 | 해체공사업          |
| 512  | 토목건설업          | 5299 | 기타 전문직별 공사업    |
| 5121 | 도로건설업          | 6.   | 도·소매및 음식 숙박업   |
| 512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   | 61   | 도매업            |
|      | 목건설업           | 611  | 일반도매업          |
| 52   | 전문직별 건설업       | 6111 | 농산물 및 음식료품 도   |
| 521  | 연관, 난방 및 권원공사업 |      | 매업             |
| 5210 | 연관, 난방 및 권원공사업 | 6112 | 섬유 및 의류 도매업    |
| 522  | 도장, 도배 및 실내장식  | 6113 | 전기기기 도매업       |
|      | 공사업            | 6114 | 의약품 및 화학제품 도   |
| 5220 | 도장, 도배 및 실내장식  |      | 매업             |
|      | 공사업            | 6115 | 기계도매업          |
| 523  | 전기공사업          | 6116 | 철물 및 가전용기기 도   |
| 5230 | 전기공사업          |      | 매업, 전기식 재외     |
| 524  | 석공 및 미장공사업     | 6117 | 전속재료 도매업       |
| 5241 | 석공사업           | 6118 | 금속 도매업         |
| 5242 | 미장공사업          | 61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   |
| 525  | 목공사업           |      | 반 도매업          |
| 5250 | 목공사업           | 612  | 상품 증개업         |
| 526  | 지붕잇기 및 합석공사업   | 6120 | 상품 증개업         |
| 5260 | 지붕잇기 및 합석공사업   | 613  | 무역업            |
| 527  | 구조강 건립업        | 6130 | 무역업            |
| 5270 | 구조강 건립업        | 62   | 소매업            |

| 산업분류 | 항 목 명                        | 산업분류 | 항 목 명                |
|------|------------------------------|------|----------------------|
| 621  | 일반소매업                        | 711  | 육상운수업                |
| 6211 |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 7111 | 철도운수업                |
| 6212 | 섬유, 의복, 신발 및 의<br>복 악세사리 소매업 | 7112 | 도로여객운수업              |
| 6213 | 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br>업, 가전제품 포함   | 7113 | 기타 여객·육상운수업          |
| 6214 | 약 및 화장품 소매업                  | 7114 | 도로화물 운수업             |
| 6215 | 장신구 및 시계 소매업                 | 7115 | 마이프라인 운송업            |
| 6216 |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 7116 | 육상운수 보조서비스업          |
| 6217 | 개인운수 장비 소매업 및<br>주유소         | 712  | 수상운수업                |
| 6218 | 가정용 연료 소매업                   | 7121 | 해상운수업                |
| 6219 | 별리 분류되지 않은 일<br>반 소매업        | 7122 | 내륙수상운수업              |
| 622  | 종합 소매업                       | 7123 | 수상운수 보조서비스업          |
| 6220 | 종합 소매업                       | 713  | 항공운수업                |
| 63   | 음식 및 숙박업                     | 7131 | 항공운수업, 보조서비스업<br>제외  |
| 631  | 음식점업                         | 7132 | 항공운수 보조서비스업          |
| 6311 | 식당업                          | 719  | 운수관련 서비스업            |
| 6312 | 주점업                          | 7191 | 운수부대 서비스업            |
| 6313 | 빵, 생과자 및 떡 판매업               | 7192 | 보관 및 창고업             |
| 6314 | 다방업                          | 72   | 통신업                  |
| 63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음<br>식점업          | 720  | 통신업                  |
| 632  | 숙박업                          | 7200 | 통신업                  |
| 6320 | 숙박업                          | 8.   | 금융, 보험, 부동산 및<br>유역업 |
| 7.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81   | 금융업                  |
| 71   | 운수 및 창고업                     | 810  | 금융업                  |
|      |                              | 8101 | 통화금융기관               |
|      |                              | 8102 | 기타금융기관               |
|      |                              | 8103 | 금융서비스업               |

| 산업분류 | 항 목 명                          | 산업분류 | 항 목 명                  |
|------|--------------------------------|------|------------------------|
| 82   | 보험업                            | 842  |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 820  | 보험업                            | 8420 |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 8201 | 개인위험 보험업                       | 9.   |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
| 8202 | 운송위험 보험업                       | 91   | 공공행정 및 국방              |
| 8203 | 재산손해 보험업                       | 911  | 중앙정부 사무                |
| 8204 | 재정손실 보험업                       | 9111 | 총합정부 행정사무              |
| 8205 | 재보험업                           | 9112 | 외무사무                   |
| 820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험업                 | 9113 | 공공질서 및 안전사무            |
| 83   | 부동산업                           | 9114 | 국방사무                   |
| 830  | 부동산업                           | 9115 | 교육사무                   |
| 8301 | 부동산 임대업                        | 9116 | 보건, 위생, 사회보장 및 노동사무    |
| 8302 | 부동산 개발업                        | 9117 | 문화 및 종교사무              |
| 8303 | 부동산 중개업                        | 9118 | 총합경제 및 산업사무            |
| 8304 | 부동산 감정업                        | 91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중앙사무        |
| 830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부동산업                | 912  | 지방사무                   |
| 84   | 용역업                            | 9120 | 지방사무                   |
| 841  | 용역업, 기계장비 임대업 제외               | 92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 8411 | 법무서비스업                         | 920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 8412 | 회계서비스업                         | 9201 |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            |
| 8413 | 자료처리 서비스업                      | 9202 | 분뇨수거 및 처리업             |
| 8414 | 공학, 건축 및 기술 서비스업               | 920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 8415 | 광고업                            | 93   | 사회서비스업                 |
| 84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용역업,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제외 | 931  | 교육서비스업                 |
|      |                                | 9311 | 학원전 교육기관               |
|      |                                | 9312 | 국민학교                   |
|      |                                | 9313 | 중학교                    |



| 산업분류 | 항 목 명         | 산업분류 | 항 목 명         |
|------|---------------|------|---------------|
| 9314 | 고등학교          | 935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  |
| 9315 | 전문학교          |      | 업, 전문 및 노동단체  |
| 9316 | 초급대학          | 939  | 기타 사회 서비스업    |
| 9317 | 대학            | 9391 | 종교단체          |
| 9318 | 대학원           | 9392 | 정치단체          |
| 93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  | 939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  |
|      | 육기관           |      | 타 사회서비스업      |
| 932  | 학술연구기관        | 94   |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
| 9321 | 자연과학 연구기관     | 941  | 영화 및 기타 연에서 어 |
| 9322 | 의료학술 연구기관     |      | 비스업           |
| 9323 | 농업조사 연구기관     | 9411 | 영화제작업         |
| 9324 | 사회과학 연구기관     | 9412 | 영화배급 및 상영업    |
| 932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학  | 9413 |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  |
|      | 술연구 기관        |      | 송업            |
| 933  | 의료보건 및 수의 서어  | 9414 | 연극제작 및 흥행서어   |
|      | 비스업           |      | 스업            |
| 9331 | 의료 및 보건서비스업   | 9415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작  |
| 9332 | 수의업           |      | 가, 작곡가 및 기타 독 |
| 934  | 사회복지기구        |      | 립연예인          |
| 9341 | 수용복지 시설       | 942  |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
| 9342 | 비수용복지기구       |      | 동물원 및 달리 분류되  |
| 9343 | 계활원           |      | 지 않은 기타 문화서어  |
| 934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  |      | 비스업           |
|      | 회 복지기구        | 9420 |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
| 935  | 기업, 전문 및 노동단체 |      | 동물원 및 달리 분류되  |
| 9351 | 산업단체          |      | 지 않은 기타 문화서어  |
| 9352 | 전문가 단체        |      | 비스업           |
| 9353 | 노동단체          |      |               |

| 산업분류 | 항 목 명                | 산업분류 | 항 목 명                   |
|------|----------------------|------|-------------------------|
| 94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오락 서비스업   | 9591 | 이발소 및 미장원               |
| 9491 | 운동설비 운영업             | 9592 | 사진관                     |
| 9492 | 경기장 운영업              | 959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 9493 | 유기장 운영업              | 96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
| 9494 |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운영업      | 960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
| 9495 | 유원지 운영업              | 9601 | 주한 외국 공관                |
| 9496 | 도박장 운영업              | 960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
| 9497 | 오락장비 임대업             |      |                         |
| 9498 | 경기후원업 및 지역경기업        | 0    | 분류불능산업                  |
| 949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오락서비스업 | 00   | 분류불능산업                  |
| 95   |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000  | 분류불능산업                  |
| 95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선업       | 0000 | 분류불능산업                  |
| 9511 | 신발 및 기타 가죽제품 수선업     |      |                         |
| 9512 | 전기 수선업               |      |                         |
| 9513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선업      |      |                         |
| 9514 | 시계 및 장신구 수선업         |      |                         |
| 951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수선업    |      |                         |
| 952  | 세탁 및 염색업             |      |                         |
| 9520 | 세탁 및 염색업             |      |                         |
| 953  | 가사서비스업               |      |                         |
| 9530 | 가사서비스업               |      |                         |
| 959  | 기타 개인서비스업            |      |                         |

1980년도 사업체 센서스 시범조사

# 조 사 요 령 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0년도 사업체 센서스 시범조사

## 조 사 요 령 서

— ≡ 목 차 ≡ —

|                         |    |
|-------------------------|----|
| I. 조사개요 .....           | 3  |
| II. 조사담당자의 임무 .....     | 7  |
| III. 조사표 기입요령 .....     | 9  |
| IV. 조사표 정리 및 제출 .....   | 17 |
| 부 록 .....               | 19 |
| (1) 사업체 센서스 시범조사 요계표 서식 |    |
| (2) 조사표 기입 예            |    |

## I. 조 사 개 요

### 1. 조사목적

전산업의 사업체 실태와 고용수준을 파악하여 제반 경제정책 수립과 효과측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81년에 사업체 센서스를 실시할 계획 아래 이의 시험조사와 사업체 관리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대전시 일원에 걸쳐 시범조사를 실시한다.

### 2. 조사기간

가. 조사기준일 : 1980.7.1

나. 실사기간 : 1980.7.1 - 7.31

### 3. 조사대상

조사기준일 현재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사업체란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단위로서 공장, 작업장, 점포, 광산, 농장, 사무소 등과 같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주체와 가계를 제외한 모든 소비 주체를 포괄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농가 및 어가

단, 기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농업 및 어업사업체는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 다음과 같은 현업 관서는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1. 국·공립학교
2. 국·공립도서관
3. 국·공립병원(보건소 제외)
4. 국·공립시험장(시험소 포함)
5. 국·공립시장
6. 국·공립운동장 및 체육관
7. 자동차 정비사업소
8. 위생 처리장
9. 제량기 검정사업소
10. 도시가스 사업소
11. 양묘사업소
12. 녹지사업소
13. 묘지관리소
14. 고아원
15. 양로원
16. 부녀복지원
17. 부녀회
18. 기술원(직업학교)
19. 상담소
20. 근로자 회관
21. 노인회 등

다.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라. 영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영업을 위한 고정 설비가 없는 사업체

마. 일정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운수사업체

바. 출입하는데 허가나 입장료 등의 제한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체

#### 4. 조사단위

조사의 단위는 개개의 사업체이다.

즉 동일구역 또는 장소에서 동일 경영자가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한다. 동일 경영자가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한다.

또한 동일구역 또는 장소에서 2인 이상의 경영자가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경영자별로 별개의 사업체로 파악하되 다음 사업체는 1개의 사업체로 본다.

##### 가. 광업사업체

광물을 채굴, 채석하고 있는 현장사무소(또는 영합소)는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 나. 건설업사업체

공사현장 사무소는 본사, 지점, 영합소 등과는 별개로 취급하여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 다. 학 교

동일 학교법인에 속하는 몇개의 학교 예컨대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유치원 등이 동일구내에 있는 경우라도 각 학교마다 별개의 사업체로 한다.

동일 학교라도 분교가 별도 장소에 있으면 자기 별개의 사



업체로 한다. 그러나 정규모형에 병설되어 있는 특설과정은 별개의 사업체로 보지 않는다.

#### 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기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기관은 원칙적으로 본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나 "1장 3항 나호"에 열거한 조사대상 기관이 전자와 동일한 구내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보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 5. 조사방법

이 조사는 타계식·면접 조사방법에 의한다.

## II. 조사담당자의 임무

### 1. 조사요령 교육

도·시·구·동 담당직원 및 조사보조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사요령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는다.

### 2. 조사용품의 수령

가. 조사표

나. 조사요령서

다. 요계표

라. 기타 조사용품

### 3. 설치조사

판내의 모든 사업체(기관)를 간판 유무 불문하고 통·반경동의 협조를 얻어 빠짐없이 색출 방문하여 조사표 작함을 질문 기입한다.

특히 고층건물 등 각종 시설구내, 지하상가 또는 가구내의 사업소등을 빠짐없이 색출하여야 한다.

### 4. 조사표 제출

이상 계 작업이 완료되면 조사표를 기일 엄수 제출한다.

## 5. 면접요령

가. 피조사자에게 면접을 요청할 때에는 단정한 용모와 정중한 태도로 자기 소개를 한 후 본 조사의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조사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야 하며 손님이 있을 때는 사전에 양해를 얻어 조사하여야 한다.

다. 응답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설명하고 비밀 사항은 보호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그래도 불응할 때는 상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라. 면접시에는 가능한한 그 사업체(기관)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를 만나도록 한다. 재방문이 필요할 때는 시간 약속을 하여 지키도록 한다.

### Ⅲ. 조사표 기입요령

####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조사표는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기입한다.

나.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기입한다.

다. 잘못 기입된 경우는 복선을 긋고 그 위에 정정 기입한다.

예 : 15  
      16

라. 선택형인 항목은 해당번호 하나에만 ○표시 한다.

예 : ① 단독사업소 2. 본점 3. 지점

마. 숫자로 표시하는 항목은 각란의 합이 반드시 합계와 일치하도록 한다.

#### 2. 난외 사항 기입요령

가. 관할 행정 구역명을 기입한다.

나. 조사표 일련번호는 사업체 일련번호 순서대로 편철한 후 권별로 기입한다.

다. 작성자성명은 실제조사표를 작성한 조사담당직원 또는 조사보조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한다.

라. 확인자는 동장이 서명 날인을 한다.

### 3. 항목별 기입요령

#### 가. 사업체 일련번호

통반 순서에 의하여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나. 사업체 (기관)명

사업체의 상호 또는 기관의 명칭을 기입하되 상호나 공식명칭이 없는 사업체는 대표자명과 업종을 기입한다.

예 : 이몽룡 상점

홍길동 운명감정소

#### 다. 사업체 (기관)소재지

(1) 사업체 또는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주소는 법정동명과 번지, 호 및 통·반명까지 상세히 기입한다. 그리고 백화점, 상설시장, 종합상가 및 빌딩 등에 있는 경우는 그 명칭과 동별, 층별 및 호수를 기입한다.

예 : 부라더 백화점 2층 18호

중앙도매시장 2동 32호

홍명상가 2층 나열 18호

동방생명빌딩 3층 11호

#### 라. 경영조직

##### (1) 정부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기관중 "I장 3항 나호"에 열거한

기관이 여기에 포함된다.

(2)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법 시행령 제 2조에 명시된 기관(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관 및 귀속재산중 5할이상이 정부에 귀속된 기업체)과 정부 출연기관을 포함한다.

\* 정부투자기관 관리법 시행령 제 2조에 명시된 기관

1.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
6. 한국조폐공사
7. 한국증권거래소
8. 대한석탄공사
9. 한국전력주식회사
10.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11.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12. 대한무역진흥공사
13. 대한광업진흥공사
14. 농어촌개발공사
15. 농업진흥공사
16. 대한주택공사
17. 대한건설공사
18. 산업기지개발공사
19. 한국도로공사
20. 국정교과서주식회사
21. 국제관광공사
22. 한국방송공사
23. 토지개발공사
24. 한국해외개발공사
25. 근로복지공사
26. 한국석유개발공사

\* 정부출연기관

정부에서 출연금을 교부하는 기관으로

1. 과학원
2. 과학재단
3. 과학기술연구소
4. 원자력연구소
5. 핵연료 개발공단
6. 해양개발연구소
7. 지역개발연구소
8. 표준연구소

- |               |                  |
|---------------|------------------|
| 9. 선박연구소      | 10. 화학연구소        |
| 11. 기계금속시험연구소 | 12. 전자기술연구소      |
| 13. 전기기기시험연구소 | 14. 자원개발연구소      |
| 15. 열관리시험연구원  | 16. 한국개발연구원      |
| 17. 국제경제연구원   | 18. 농업시험연구소      |
| 19. 건설연구소     | 20. 공업시험연구소      |
| 21. 수산시험연구소   | 22. 임업시험연구소      |
| 23. 과학기술정보센터  | 24. 기술검정공단       |
| 25. 기능대학      | 26. 중앙전자계산소      |
| 27. 기상관측 및 기타 | 28. 한국보험공사       |
| 29. 증권감독원     | 30. 신용보증기금 등이 있으 |

며 그와 각 부처별로 상당수가 있으니 현지 조사시 책임 응답자에게 문의하여 착오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조합

일정한 인적결합으로 특정한 공공사업을 존립의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 단체로서 1. 국가 강제조합 2. 일부 강제, 일부 임의조합 3. 임의조합 등이 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             |                  |
|-------------|------------------|
| 1. 토지개량조합   | 2. 산림조합          |
| 3. 중소기업협동조합 | 4. 농업협동조합 및 특수조합 |
| 5. 수출조합     | 6. 건설공제조합        |
| 7. 한국해운조합   | 8. 수산업협동조합       |
| 9. 연연초생산조합  | 10. 의료보험조합       |
| 11. 영업조합    | 12. 인삼조합         |
| 13. 대한상공회의소 | 14. 한국마사회        |

- |                 |               |
|-----------------|---------------|
| 15. 변호사회        | 18. 제향군인회     |
| 17. 한국반공연맹      | 19. 군사원호대상자단체 |
| 19. 대한적십자사      | 20. 대한교육연합회   |
| 2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22. 건축사협회     |
| 23. 대한건설협회      | 24. 측량협회      |
| 25. 한국신금협회      | 26. 대한관광협회    |
| 27. 문화원연합회      | 28. 변리사회      |
| 29. 공인회계사회      | 30. 의사회       |
| 31. 약사회 등을 말한다. |               |

(4) 개인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법인격이 아닌 공동 경영도 여기에 포함된다.

(5) 법인

법인격을 가진 회사와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

(6) 비법인단체

법인격을 갖지않은 단체로서 학회, 방범위원회, 문화단체 등이 있다.

마. 본·지점별

(1) 단독사업소

동일 경영의 사업체 즉 지사, 지점, 지소 등이 없는 독립된 사업체를 말한다.

(2) 본점

동일 경영의 지사 또는 지점을 갖고 이를 총괄하는 본



사나 본점을 말한다.

(3) 지점

본사 또는 본점의 총괄을 받고 있는 지사 또는 지점을 말하며 출장소, 영업소, 현장사무소 등이 포함된다.

바. 사업종류

사업체 또는 기관에서 주로 하는 일의 종류가 무엇인지 상세히 기입한다.

- 예 :
- |               |            |
|---------------|------------|
| 1. 모래 및 자갈채취업 | 2. 가발제조업   |
| 3. 개스공급업      | 4. 주택건설업   |
| 5. 신발소매업      | 6. 중국음식업   |
| 7. 여인숙업       | 8. 시내버스운수업 |
| 9. 냉장창고업      | 10. 전당포    |
| 11. 화재보험업     | 12. 부동산임대업 |
| 13. 사립중학교     | 14. 탁구장    |
| 15. 자동차세차업    | 16. 교회     |
| 17. 정당        | 18. 기원     |
| 19. 결혼상담소     |            |

사. 주요취급상품(생산품) 또는 사업내용

주원 취급상품(도·소매업 등)이나 생산품(농림, 어업 및 광공업등) 또는 세부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입한다.

그리고 2가지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와 2가지 이상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고 있을 경우는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대표적인 것 하나만 기입한다.

아. 종업원수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대상 사업체(기관)에서 종사하는 자를 다음 구분에 따라 조사 기입한다.

(1) 총계

총종업원수를 남, 여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2) 사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

개인 사업체의 소유주(출자자 포함)와 일정한 임금을 받지 않는 가족종사자로서 경영엔 참여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개인 사업체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이 기입되어야 한다.

(3) 상용고용원

1개월 이상의 고용 기간을 정하여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을 말하며 아래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가) 법인 사업체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役員

(예: 사장, 이사, 감사 등) 그러나 이익배당만 받는 주주는 제외한다.

(나) 사업주의 가족이라도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일정급여 또는 판매수수료를 받는 의무사원, 판매원 및 배달원

(4) 임시 및 일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또는 일일로 고용된 자를 말한다. 그리고 요식업체 등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고 주로 고객의 팁만을 받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접대부, 호스리스 등도 여기에 포함시킨다.

자. 비고란

조사내용에 관한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 IV. 조사표 정리 및 제출

조사 완료된 제 조사표류는 다음 요령에 의거 충분한 내용검토를 실시하고 불비된 사항은 현지에서 재조사 보완하여 완전한 조사표를 작성 도에 제출한다. 충남도에서는 최종확인 후 80.8.31까지 경제기획원에 제출한다.

##### 1. 사업체수의 확인

사업체의 누락, 중복이 없는가를 먼저 확인한다.

##### 2. 조사표 내용의 오기 누락검토

조사표 기입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이 없는가를 검토하여 누락된 경우는 반드시 재조사 기입하여야 하고 잘못 기입된 경우는 복선을 긋고 그 위에 정정 기입하며 기입내용이 불충분할 경우(특히 (6)(7)항)는 보완하여야 한다.

##### 3. 관련사항 불합리 또는 계산착오 유무 검토

가. (4)항 경영조직의 "개인"이외는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있을 수 없으며 있는 경우는 잘못 조사된 것이므로 재조사하여 정정 기입한다.

나. (8)항 종업원수의 남·여별 합계 및 중별합계가 일치하

는가를 확인한다.

#### 4. 조사표 편철 및 표지의 기입

검토가 완료된 조사표는 일련번호 순에 따라 100-200매가 되도록 편철하고 표지를 다음 요령에 의거 기입한다.

가. 조사표 첩이 2권 이상일 경우에는 총 권수와 그 중 몇권제인가를 기입한다.

예 : 조사표가 3권일 경우

( 3권중 1권 ), ( 3권중 2권 ), ( 3권중 3권 )으로

표시

나. 조사표 매수

그 조사표첩에 있는 조사표 총매수를 기입한다.

다. \*표가 있는 란은 경제기획원 기입란이므로 기입하지 않는다.

#### 5. 요약표 작성

가. 조사표의 심사과 편철이 완료된 후 별첨 서식에 의한 요약표를 작성하되 각동에서는 행정구역을 동별로 기입한다.

나. 구에서는 관내 동에서 제출된 요약표를 위함 구 요약표를 작성하되 행정구역은 동별로 기입한다.

사업체 센서스 시범조사 요계표

귀하 1980. . . . . 대전시 구 동장 인

| 행정구역 | 경제영포척별 |      |        |       | 종업원수  |   |   |      | 비고 |     |
|------|--------|------|--------|-------|-------|---|---|------|----|-----|
|      | 체      | 정부기관 | 정부공공기관 | 개인사업단 | 비법인단체 | 종 |   | 상용직원 |    | 임시직 |
|      |        |      |        |       |       | 남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조 사 표

조사표  
일련번호 3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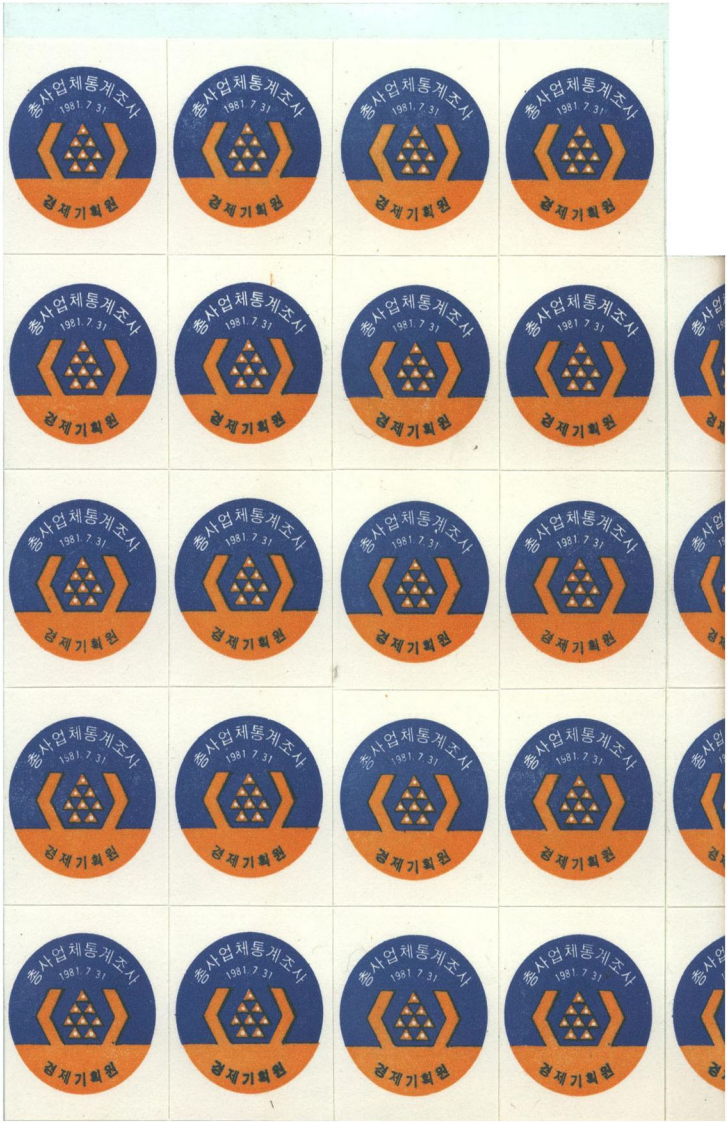
| (1) 사업제<br>일련<br>번호 | (2) 사업제<br>(기관)명<br>(사업제명이없는경우<br>는내려가기를기입함) | (3) 사업제(기관)소재지<br>(소재지, 통인일련번호<br>호를기입함) | (4) 경 영 조 직<br>(직장번호의 ○로 함)                | (5) 부·지방법<br>별<br>일련번호<br>(○표함) | (6) 사업종류<br>(산업별)            | (7) 주요취급상품<br>(생산품)<br>또는사업내용 | (8) 종 업 원 수 |        |        |                     |             | (9) 비고 |                       |
|---------------------|--|--|--|---------------------------------|------------------------------|-------------------------------|-------------|--------|--------|---------------------|-------------|--------|-----------------------|
|                     |  |  |  |                                 |                              |                               | 총<br>계      | 남<br>자 | 여<br>자 | 사업주<br>부속가족<br>중사업자 | 상<br>용<br>원 |        | 유<br>일<br>시<br>업<br>고 |
| 31                  | 삼성 세차장                                       | 상성동 90-1 (4동1차)<br>(전화 2-1114)           | 1. 정 부 기 관<br>2. 정 부 부 자 기 관<br>3. 공 공 조 합 | 4. 자<br>5. 법<br>6. 비 법 인 단 체    | 1. 단 독 사 업 소<br>2. 본<br>3. 지 | 주유차 세차                        | 8           | 6      | 2      | 1                   | 5           | 2      |                       |
| 32                  | 김산 물 상점                                      | 13-1 (14동1차)<br>(전화 )                    | 1. 정 부 기 관<br>2. 정 부 부 자 기 관<br>3. 공 공 조 합 | 4. 자<br>5. 법<br>6. 비 법 인 단 체    | 1. 단 독 사 업 소<br>2. 본<br>3. 지 | 소매업                           | 2           | 1      | 1      | 2                   |             |        |                       |
| 33                  | 충민우형 대점점                                     | 24-1 (10동1차)<br>(전화 2-2004)              | 1. 정 부 기 관<br>2. 정 부 부 자 기 관<br>3. 공 공 조 합 | 4. 자<br>5. 법<br>6. 비 법 인 단 체    | 1. 단 독 사 업 소<br>2. 본<br>3. 지 | 음점                            | 17          | 14     | 3      |                     | 5           | 5      |                       |
| 34                  | 삼성 우민학교                                      | 24-3 (12동1차)<br>(전화 3-334)               | 1. 정 부 기 관<br>2. 정 부 부 자 기 관<br>3. 공 공 조 합 | 4. 자<br>5. 법<br>6. 비 법 인 단 체    | 1. 단 독 사 업 소<br>2. 본<br>3. 지 | 공립학교                          | 47          | 46     | 1      | 1                   | 52          | 4      |                       |
| 35                  | 아파트복역방                                       | 36-3 (1동3차)<br>(전화 4-154)                | 1. 정 부 기 관<br>2. 정 부 부 자 기 관<br>3. 공 공 조 합 | 4. 자<br>5. 법<br>6. 비 법 인 단 체    | 1. 단 독 사 업 소<br>2. 본<br>3. 지 | 부동산중개                         | 1           | 1      |        | 1                   |             |        |                       |
| 36                  | 최원 가 원                                       | 36-2 (2동1차)<br>(전화 )                     | 1. 정 부 기 관<br>2. 정 부 부 자 기 관<br>3. 공 공 조 합 | 4. 자<br>5. 법<br>6. 비 법 인 단 체    | 1. 단 독 사 업 소<br>2. 본<br>3. 지 | 가 원                           | 2           | 1      | 1      | 1                   |             | 1      |                       |
| 37                  | 충남 경제교회                                      | 21-3 (11동1차)<br>(전화 3-1119)              | 1. 정 부 기 관<br>2. 정 부 부 자 기 관<br>3. 공 공 조 합 | 4. 자<br>5. 법<br>6. 비 법 인 단 체    | 1. 단 독 사 업 소<br>2. 본<br>3. 지 | 교회                            | 2           | 1      | 1      | 2                   |             |        |                       |
| 38                  | 대전대학 구석회사                                    | 21-1 (11동1차)<br>(전화 2-4103)              | 1. 정 부 기 관<br>2. 정 부 부 자 기 관<br>3. 공 공 조 합 | 4. 자<br>5. 법<br>6. 비 법 인 단 체    | 1. 단 독 사 업 소<br>2. 본<br>3. 지 | 자동차출<br>회조합                   | 100         | 100    | 0      | 0                   | 100         | 20     |                       |
| 39                  | 삼성 계 스                                       | 24-3 (4동1차)<br>(전화 2-1114)               | 1. 정 부 기 관<br>2. 정 부 부 자 기 관<br>3. 공 공 조 합 | 4. 자<br>5. 법<br>6. 비 법 인 단 체    | 1. 단 독 사 업 소<br>2. 본<br>3. 지 | 계승조합                          | 6           | 4      | 2      |                     | 5           | 1      |                       |
| 40                  | 역전 권당포                                       | 14-3 (11동1차)<br>(전화 3-344)               | 1. 정 부 기 관<br>2. 정 부 부 자 기 관<br>3. 공 공 조 합 | 4. 자<br>5. 법<br>6. 비 법 인 단 체    | 1. 단 독 사 업 소<br>2. 본<br>3. 지 | 권당포                           | 4           | 2      | 2      | 2                   |             | 2      |                       |



1980.08.08  
11:00 AM







1981 총사업체통계조사

조사표내용검사요령서

조사통계국

# 목 차

|                      |    |
|----------------------|----|
| I. 일반적인 사항 .....     | 3  |
| II. 항목별 내검요령 .....   | 5  |
|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  | 5  |
| 2. 경영조직 .....        | 5  |
| 3. 본·지점별 .....       | 6  |
| 4. 자본금 및 출자금 .....   | 6  |
| 5. 개점년월 .....        | 7  |
| 6. 사업장 면적 .....      | 7  |
| 7. 사업의 종류 .....      | 7  |
| 8. 영업형태 .....        | 8  |
| 9. 종업원수 및 월급여액 ..... | 8  |
| 10. 직종별 종업원수 .....   | 10 |
| 11. 직종별 기능공 .....    | 11 |

## I. 일반적인 사항

1. 조사표 표지에 기입된 총사업체수가 조사표 매수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2.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정정 기입한다.
3. 단위 미만의 숫자는 사사오입한다.  
예) 2.5 = 3
4. 조사표 난의 사항의 오기 및 누락사항이 없는가 확인한다.
5. 관련 항목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예) ① 2 란 경영조직에서 2 항 회사법인일 경우는 4 란 자본금 및 출자금란에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 단, 3 란에서 3 항 지점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제외 )  
② 2 란의 1 항 공공단체, 2 항 회사법인, 3 항 회사외의법인에 속한 사업체는 9 란 종업원수 및 월급여액에서 2.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1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되며, 4 항 개인경영에 속한 사업체에는 반드시 2. 자영

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③ 9 란 종업원수 및 월급여액란의 종업원 총수와 10 란 직종별 종업원수(계, 남, 여)는 일치되어야 하며, 10 란 4 항 기능공수와 11 란 직종별 기능공수 합계가 일치되어야 한다.

6. 휴업된 사업체는 일부 기본항목만 기입되어 있으니 이러한 조사표가 발견될 시는 상주지도요원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7. 기입내용이 불명확한 것은 상주지도요원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8. 내용검사가 끝나면 조사표 표지의 내용검사자란에 검사자의 성명을 기입한다.
9. 조사표 내용검사가 끝나면 사업체 명부와 일일이 대조하여 오기 및 누락사항을 정정하고 반드시 조사표와 일치되도록 한다.
10. 기타 조사표상의 의문점이나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은 상주지도요원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 II. 항목별 내검요령

###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가. 사업체명과 대표자 성명의 기입여부를 확인하고 대표자 성명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체명부와 대조하여 기입한다. (단, 사업체명은 없는 경우도 있음)

나. 사업자 등록번호는 반드시 3-2-5(000-00-00000)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번호가 없을 경우는 그 사유(신규, 무허가, 대상외, 미등록, 신청중)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종업원 5인 이상 광공업 사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불구하고 질의조회하여야 한다.

### 2. 경영조직

가. 1항-5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반드시 0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사업체명과 비교하여 해당 항목이 모순이 없는지 확인한다.

예) ①사업체명이 0000주식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 유한회사포함)로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2항 회사법인에 0표시 되어야 한다.

②구멍가게는 4항 개인경영임. (단, 슈퍼마켓과 연쇄점은 개인경영이 아니고 법인인 경우도 있음)

### 3. 본·지점별

가. 2란 2항 회사법인이라 할지라도 지점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사업체이며, 지점을 갖고 있는 본점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지점의 수가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개인경영사업체는 대부분이 단독사업체이지만 경영규모가 커서 지점을 갖고 있는 사업체도 있다.

### 4. 자본금 및 출자금

2란 2항 회사법인에 속하는 모든 사업체는 반드시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지점은 제외)

## 5. 개점년월

개점년월은 월까지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 6. 사업장 면적

가. 건물이나 대지의 평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기입되어 있을 경우는 사사오입해야 하며 0.5평 미만인 경우 1평으로 간주한다.

예) 0.3 = 1

나. 건물 및 대지의 합계란은 각각의 소유와 입차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구멍가게와 같이 건물면적과 대지면적이 같을수도 있고 대지면적이 없는 사업체도 있다.

라. 건물면적은 반드시 1평 이상이어야 한다.

## 7. 사업의 종류

가. 1항 사업의 내용에는 모든 조사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2항에는 제조가공업, 도매업, 소매업에 한해서만 그 취급상품(또는 생상품)이 기재되어야 한다.

나. 2항에는 반드시 한가지 상품명이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품명이 2개 이상 기입되어 있



을 경우는 상주지도요원에게 문의후 처리토록 한다. ( 단, 구멍가게인 경우는 일용잡화나 식료 잡화로 기재되어야 한다 )

다. 특히 제조가공업 및 도·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는 1항 사업의 내용만 기입되기 때문에 세세분류가 가능하도록 사업내용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주지도요원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 8. 영업형태

가. 1항 - 6항 중 어느 한곳에 0 표시 되어야 한다.

나. 2개항 이상에 0 표시 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는 7란(사업의 종류) (1), (2)항을 참조하여 정정한다.

다. 7란 사업의 종류에서 제조가공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는 1 - 5항에, 나머지 산업의 사업체는 6항에 0 표시 되어야 한다.

## 9. 종업원수 및 월급여액

가. 합계란과 내용이 일치되는가 확인한다.

나. 종업원수 합계는 반드시 1인 이상이어야 하

며, 기입이 누락되었을 때는 상주지도요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2란 경영조직에서 1항 공공단체나 2항 회사법인, 3항 회사이외의 법인에 해당된 사업체에는 9란2항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있을 수 없다. 만약 기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정정 상용고용원에 포함시킨다.

라. 2란4항(개인경영)에 해당된 사업체는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마. 조사표상 9란의 3항과 4항(상용고용원과 임시 및 일일고용원)에 종업원수가 1명이라도 기재되어 있을시는 반드시 월급여액이 산출되어 나와야 하며, 만약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상주지도요원에게 문의후 처리한다.(단, 상용고용원의 경우에는 1인당 월급여액을 환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바. 사찰, 교회등 종교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성직자의 경우는 상용고용원도 있고 무급고용원도

있을 수 있다.

### 10. 직종별 종업원수

가. 10란 직종별 종업원수 합계란의 계, 남, 여는 9란 종업원수 및 월급여액의 합계란의 계, 남, 여 수치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나. 직종별 종업원수 계, 남, 여는 직종별로 분류된 종업원수의 합계와 그 수치가 일치하여야 한다.

예) (1) 합계 = (2) + (3) + (4) + (5)

다. 4항 기능공에 1명이라도 기입된 경우에는 11란 직종별 기능공에 그 세부내역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한다.

라. 조사표 7란(사업의 종류)과 8란(영업형태)에서 제조가공업, 수선 및 수리업(TV, 냉장고, 오토바이, 자동차, 시계등)에서는 반드시 기능공이 파악되어야 하며, 도·소매업체에 있어서도 상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수선과 서어비스를 행하는 경우와 가전제품 대리점등의 경우에는 기능공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마. 개인경영 사업체의 주인은 대부분 (5)기타에

분류되거나 약국의 약사, 병원의 의사, 교회의 목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등이 사업주일 경우에는 전문직으로, 양복점, 양장점의 재단사, 양화점의 제화공 등이 사업주일 경우에는 기능공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11. 직종별 기능공

- 가. 10 란 직종별 종업원수의 4 항 기능공수와 11 란 직종별 기능공란의 총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 나. 10 란 직종별 종업원수의 (4) 항 기능공에 1명이라도 기능공이 있을 경우에는 11 란에 그 내역이 세부적으로 기입되어야 한다.
- 다. 기입된 직종명이 표준직업분류에 합당한가 확인하고 표준직업분류에 적용하기 곤란한 직종의 발견시에는 상주지도요원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 라. 직종명이 외래어로 표기된 경우나 해석이 잘못되어 분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상주지도요원에게 보고한 후 질의조회 하여야 한다.

1981總事業体調査

# 綜合實施計劃(案)

1981. /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 目 次

|                     |    |
|---------------------|----|
| I. 事業概要             | 3  |
| 1. 目 的              | 3  |
| 2. 用 途              | 3  |
| 3. 實施概要             | 4  |
| 4. 年次別 事業概要         | 4  |
| 5. 總事業體調查 推進計劃日程    | 7  |
| II. 企 劃 又 調 查 準 備   | 15 |
| 1. 調查組織             | 15 |
| 2. 調查項目 決定 又 結果表 設計 | 22 |
| 3. 調查區 設定           | 25 |
| 4. 各種 資料 油印         | 26 |

|                      |    |
|----------------------|----|
| 5. 調查要員任命, 訓練 又 實查指導 | 27 |
| 6. 公共行政機關調查          | 31 |
| 7. 有功者 表彰            | 32 |
| 8. 事後調查              | 33 |

## I 事業概要

### 1 目的

全産業事業体の 運営実態把握

### 2 用途

① 政策 及 計劃樹立 目的

① 産業構造の 変化測定

② 雇傭需要予測

③ 産業再配置 及 投資計劃樹立

④ 均衡的地域 開発計劃樹立

### ④ 統計目的

① 産業部門別 統計調査の 詳細分析利用

② 産業部門別 統計調査の 母集団資料の 提供



### 3. 実施概要

가 調査地域: 大韓民國行政權이 미치는 全地域

나 調査対象: 全産業事業體 約 1,500 千個

다 調査基準日: 1981. 8. 1.

라 調査期間: 1981. 8. 1 ~ 8. 20 (20日間)

마 調査事項: 事業體名稱, 業種, 經營組織, 營業形態,

從業員數等 10 個事項

### 바 調査方法

1) 公共行政機關: 自計式方法

2) 一般事業體: 直接調査方法

### 4. 年次別事業 概要

#### 가 80 年度 事業

1) 總事業體調査 實施計劃 (試案) 作成

2) 總事業體調査 示範調査 實施

1) 対象地域: 忠南 大田市

2) 実施時期: 1980. 2. 1 ~ 2. 30

#### 4) 81年度事業

1) 実施計画(案) 作成

2) 調査区設定方法決定 及 調査区設定 要領書作成

3) 調査区設定 及 名簿作成

4) 調査票(案) 設計 及 確定

5) 調査要領書(案) 設計 及 作成

6) 結果表設計

7) 各種調査要領 袖印 及 配布

8) 関係機関協調

7) 公共行政技崗調査를 위한 各部 及 行과의 協談

8) 一般事業体調査를 위한 各種団体 及 協會와의

協談

9) 啓蒙宣伝

가) 매스미디어 取扱 (텔레비전, 라디오, 新聞等)

나) 街頭宣伝 (實施公告 談話等)

10) 인사 要員 動員 및 訓練

가) 中央訓練 担当 要員

나) 實查指導 및 監督 要員

다) 地方責任官 및 指導員

4) 調査員 및 補助調査員

11) 實查 및 實查指導 監督

12) 事後調査 (評価調査)

13) 資料處理 (暫定結果 集計 및 本集計)

4) 82 年度 事業

1) 暫定集計結果 報告

2) 最終報告書 系列

5. 総務兼体 調査 推進計画 日程

7. 1981 細部 推進計画 日程表

| 細 部 事 業                          | 期 向         |
|----------------------------------|-------------|
| I 準備段階                           |             |
| 1 調査実施計画 作成                      | 8/1.15-1.31 |
| 2 市・道担当官 会談 開催                   | 8/1.16-2.20 |
| 3 各部・次・庁 行政管理担当官<br>会談開催 (2回分予定) | 8/1.21-3.7  |
| 4 調査区 設定方法 決定 調査<br>区設定 要領書 作成   | 8/1.15-1.31 |
| 5 各市・道別 予算配分 (1次)                | 8/1.21-2.15 |
| 6 調査区 設定要員 確保 訓練                 | 8/1.16-2.20 |
| 7 調査区 設定 区 名簿 作成                 | 8/1.21-4.30 |

| 細 部 事 業                     | 期 間          |
|-----------------------------|--------------|
| 8. 1次 試驗調查實施                | 81.2.15~2.25 |
| 9. 1次 試驗調查 結果分析 報告          | 81.2.25~3.31 |
| 10. 2次 試驗調查 實施              | 81.4.1~4.10  |
| 11. 2次 試驗調查 結果分析 報告         | 81.4.11~4.30 |
| 12. 調査票(案) 確定               | 81.4.20~4.30 |
| 13. 調査要領書 作成                | 81.5.1~5.15  |
| 14. 結果表 設計                  | 81.5.1~5.15  |
| 15. 統計委員會 上程                | 81.5.16~5.30 |
| 16. 指定統計 指定                 | 81.6.1~6.15  |
| 17. 内容検査 具 符号記入要領書(案)<br>作成 | 81.5.1~6.30  |

- |                                     |              |
|-------------------------------------|--------------|
| 18. 調査実施 公文 大統領 談話<br>又 又 長官 訓示文 作成 | 81.6.16-6.30 |
| 19. 調査票類 印刷                         | 81.5.18-6.30 |
| 20. 調査票類 配布                         | 81.7.1-7.11  |
| 21. 又 教名動 関係機関 協議                   | 81.7.1-7.15  |
| 22. 各市 道州 予算配分 (2次)                 | 81.7.1-7.31  |

## II 実施段階

- |                                     |              |
|-------------------------------------|--------------|
| 1. 調査委員 又 補助員 推薦                    | 81.7.1-7.15  |
| 2. 調査委員 又 補助員 任命                    | 81.7.15-2.20 |
| 3. 各都 知 府 行政管理担当官<br>教育 (2 府)       | 81.7.15-2.20 |
| 4. 市 道 企劃管理委員 会 議 又 市<br>道 統計担当官 教育 | 81.7.11-7.15 |

| 細 部 事 業                        | 期 間            |
|--------------------------------|----------------|
| 5. 区・市・郡 統計係長 教育               | 81.7.17~7.19   |
| 6. 町・邑・町事務長、調査委員 員<br>補助調査員 教育 | 81.7.22~7.30   |
| 7. 本調査 実施                      | 81.8.1~8.20    |
| 8. 調査票類 現地 内容検討                | 81.8.21~9.10   |
| 9. 調査票類 提出                     | 81.9.11~9.30   |
| 10. 調査票 符号 員 製表課 叫<br>張倍       | 81.9.20~10.10  |
| Ⅲ 集計段階                         |                |
| 1. 内容検査 員 符号記入                 | 81.10.1~12.31  |
| 2. 暫定集計                        | 81.10.10~12.31 |

3. 暫定結果報告

82.1.1 ~ 2.28

\* 本調査集計

82.1.1 ~ 8.31

IV. 評價段階

1. 事後調査 実施計画 及 要領書

81.9.1 ~ 9.31

作成

2. 事後調査要員 育成, 任命 及

81.8.1 ~ 8.31

教育

3. 事後調査実施

81.9.1 ~ 9.30

4. 事後調査票 授受

81.10.1 ~ 10.5

5. 事後調査 結果集計

81.10.6 ~ 11.10

6. 事後調査結果報告

81.10.10 ~ 11.30



中 年次別 推進行程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1980 |           |            |            | 調査計画(試案)作成 | 示範調査計画(案)作成 | 示範調査票(案)設計<br>示範調査要領書作成 | 調査要領教育<br>示範調査員任命  | 示範調査実施            | 示範調査票検閲及内容検討      | 調査結果(次)報告<br>示範調査結果集計       | 示範調査結果集計 | 示範調査結果報告  |                     |      |
| 1981 | 綜合実施計画案作成 | 調査已設計要領書作成 | 調査已設計要領書作成 | 調査已設計要領書作成 | 一次試験調査      | 調査已設計要領書作成              | 調査票(案)確定<br>二次試験調査 | 統計委員会附設<br>指定統計指定 | 調査要領書作成<br>調査票規印刷 | 本調査員訓練<br>本調査員任命<br>本調査員算配定 | 本調査実施    | 調査票現地内容検討 | 調査票類提出<br>内容検査及符号記入 | 暫定集計 |
| 1982 | 本集計穿孔外注   | 暫定結果報告     | 本集計        |            |             |                         |                    |                   |                   | 最終結果報告                      |          | 報告書印刷及配布  |                     |      |

## II. 企劃 및 調査準備

### 1. 調査 組織

#### 本 目 的

- 1) 調査業務를 效果的으로 遂行하고
- 2) 調査企劃 指導 및 調査體系를 確立하여
- 3) 效果的인 訓練 및 指導監督을 통한 精度 提高에 힘쓴다

#### 나. 組 織

##### 1) 中央組織

經濟企劃院長官 責任下에 調査全般에 関한 企劃, 実查 資料處理 分析 評價業務를 遂行하며

~16~

2) 市道組織

一般事業体対象 現地 調査業務는 市、道知事

責任下에 実施되며 実査指導 調査票 檢受等

実査業務를 遂行한다.

3) 公共行政機關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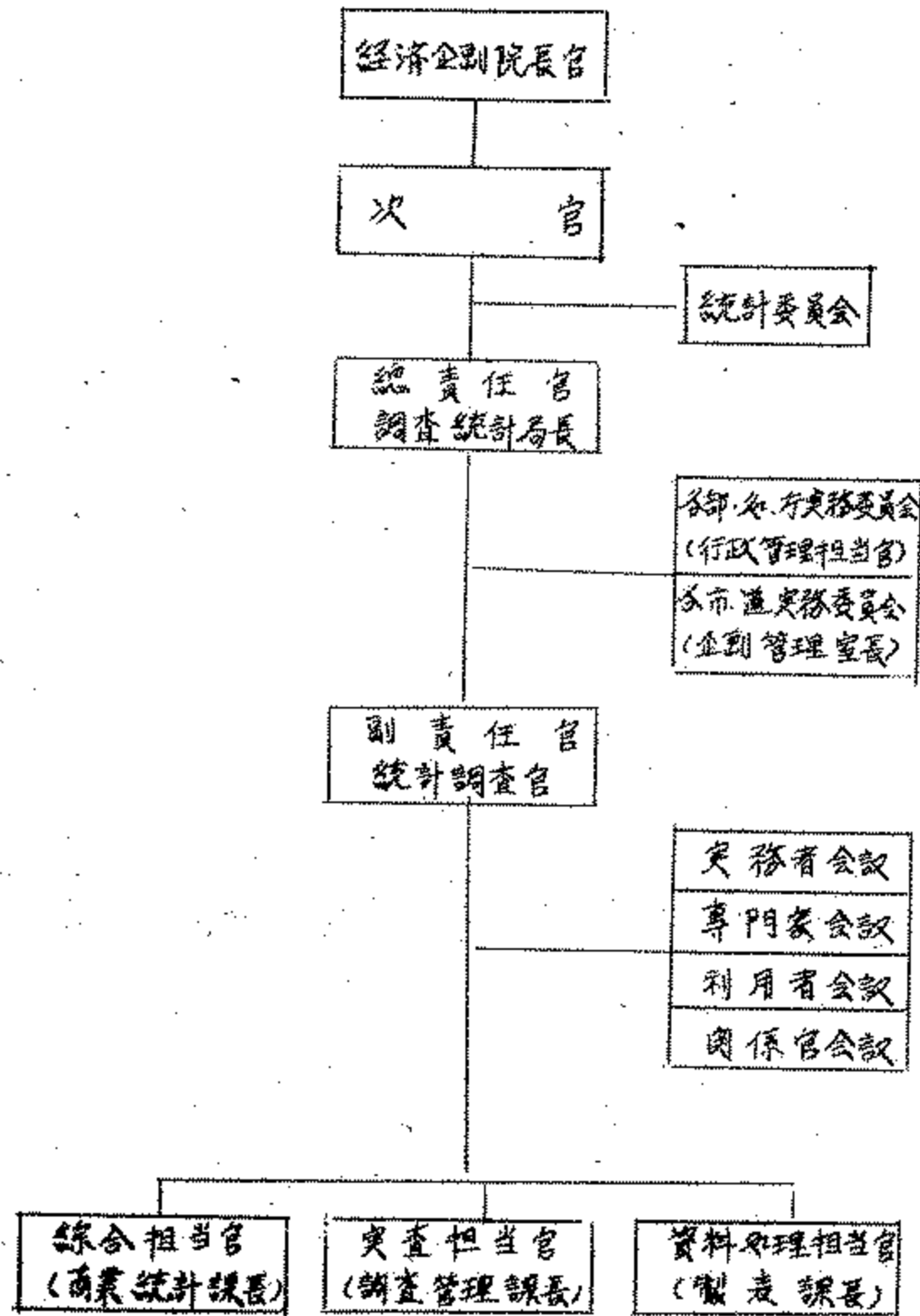
公共行政機關 調査는 各 中央行政機關(院, 部, 廳

庁) 의 長의 責任下에 当該機關 및 그 所屬機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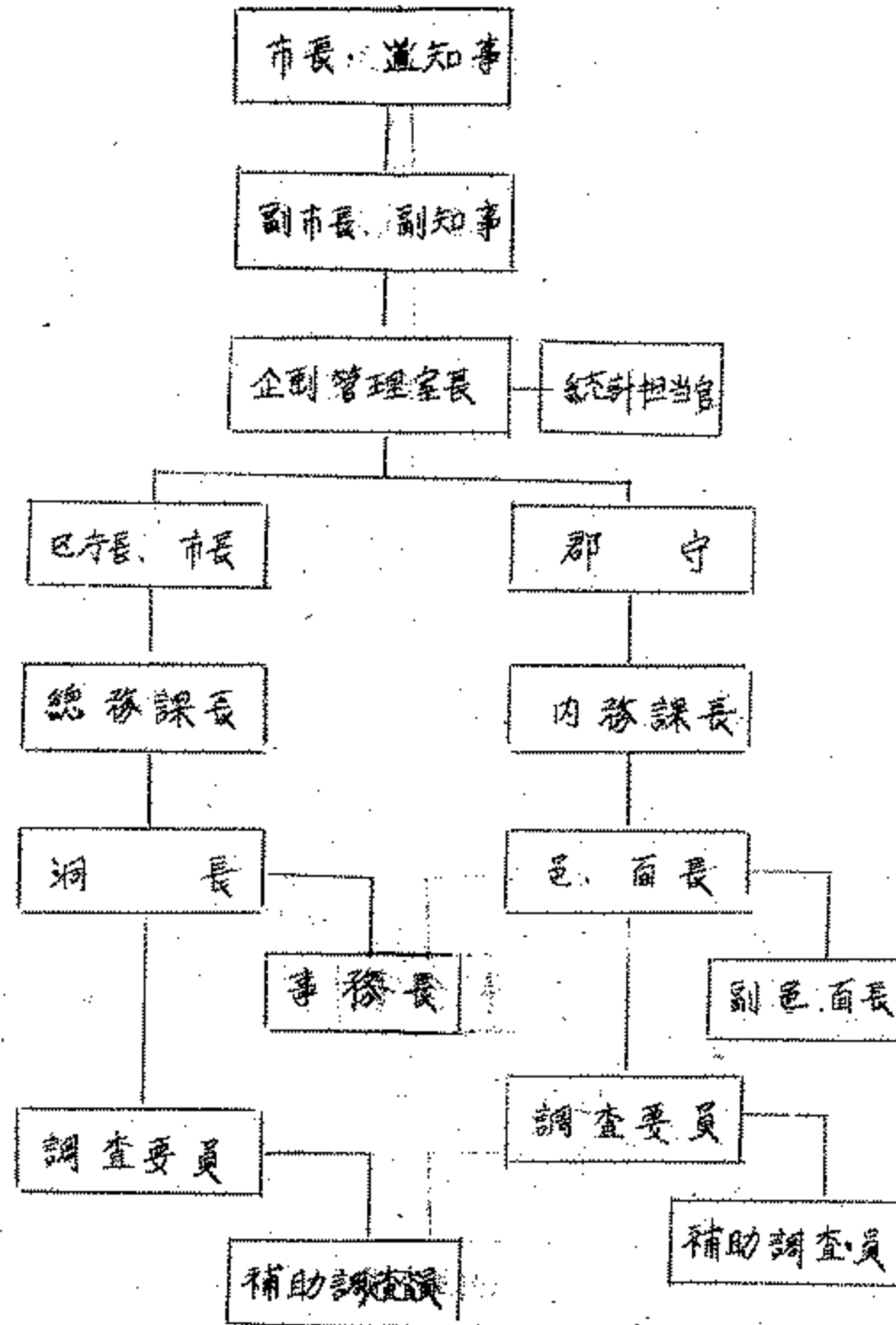
의 実査業務를 遂行한다.

4. 總事業體調查組織機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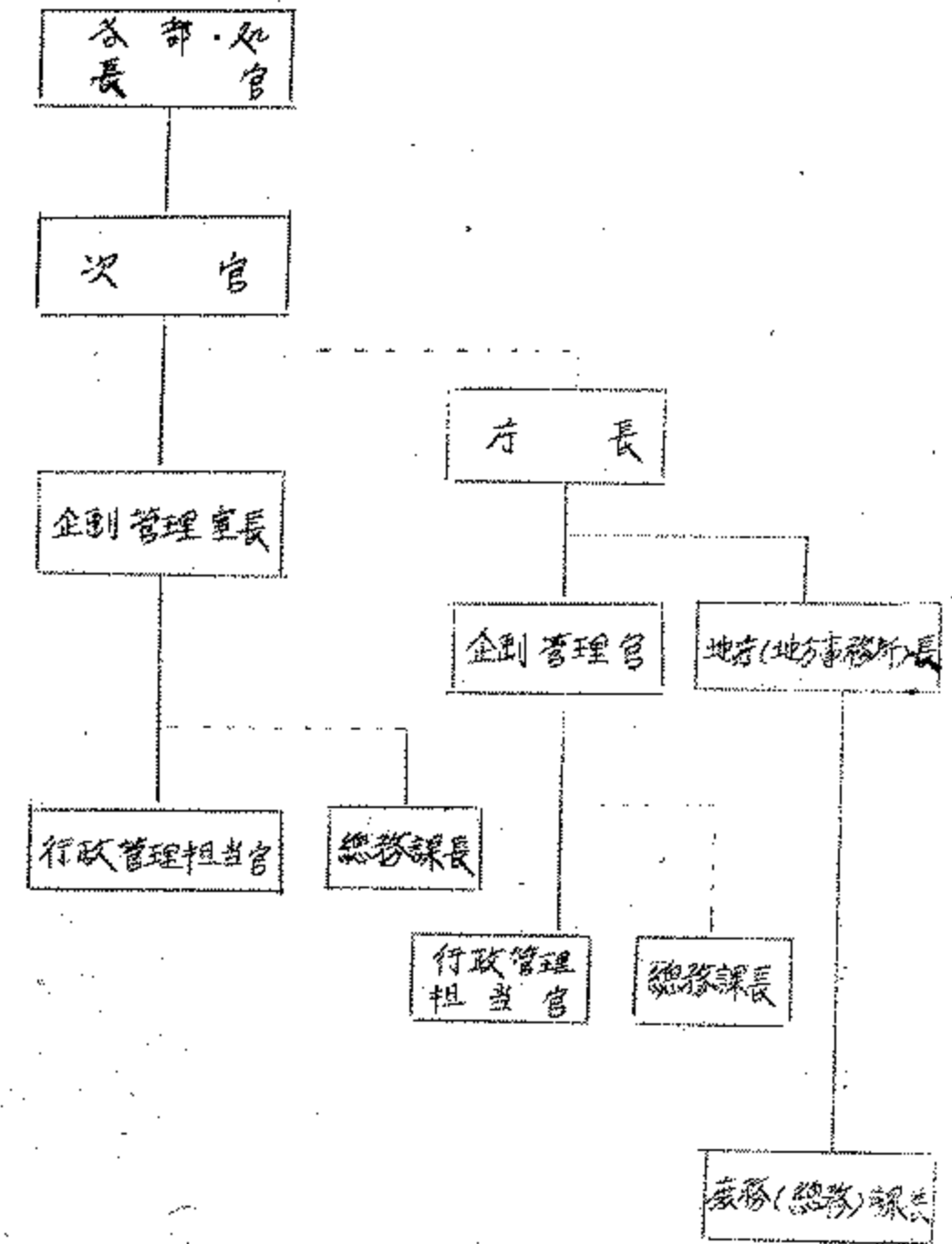
(1) 中央組織



(2) 市、道組織 (一般事業體調查組織)



(3) 公共行政機關內調查組織



(4) 事務分掌

ホ) 総合担当官

- 1) 本調査実施計画 作成
- 2) 各担当官業務の 総合調整
- 3) 調査票 又 結果表 設計
- 4) 調査区 設定
- 5) 調査弘報活動
- 6) 事後調査実施計画 作成
- 7) 事後調査結果分析報告

チ) 実査担当官

- 1) 本調査 調査要員 訓練
- 2) 本調査 実施
- 3) 実査指導

4) 調査票 檢査

5) 事後調査員 採用 訓練

6) 事後調査実施 調査指導

7) 事後調査票 檢査

8) 本調査結果 暫定集計を 위한 標本設計

4) 資料処理担当官

1) 資料処理計劃 作成

2) 調査結果 集計

5) 会議体構成

4) 実施者会議

事務官級 以上 幹部로 構成하며 必要에 따라

隨時 開催한다. 主要機能은 調査計劃 樹立, 用語

定義, 調査票, 結果表 與 調査要領書 檢査

#### ㉞ 專門家 會議

統計 및 經濟關係專門 外部人士로 構成 되어

分期別 또는 必要에 따라 隨時로 閉會한다

主要機能은 調査項目을 選定 調査方法 綜合

計劃 部門別計劃 其他 調査全般에 關한

事項의 諮問

#### ㉟ 利用者 會議

調査資料 利用의 極大化를 위하여 資料利用

機關으로 構成 하여 會議에 參與 또는 書面으로

로 意見을 提出한다

#### ㊱ 關係官會議 運營

##### 1) 公共行政機關担当者 會議

各部·處·庁의 行政管理担当者으로 構成 되어

## 公共行政機關調查에 對한 指針 및 問題點 協談

### 2) 市. 道 責任官 및 担当者 會談

當該 市. 道의 細部計劃事項 各段階別 調查

業務 推進 등에 關한 協談

### 2. 調查項目 決定 및 結果表 設計

#### 가. 基本方向

現在 施行되고 있는 各種 事業體對象 調查의

資料를 土台로 專門家 및 利用者 會談를 通하여

提議된 內容을 反映하고 試驗 調查를 거쳐 確實

한다.

#### 나. 調查項目 選定

1) 既存 事業體 對象 調查의 調查項目을 中心으로

利用機關에서 蒐集된 資料과 外國의 例를 比較

檢討하여 決定한다.



## 2) 審 議

突務者會議, 諮問官會議, 利用者會議를 거쳐 調査

票 草案을 檢討審議한다.

## 3) 試驗 調査

### 가) 1次 調査

1次檢討審議한 草案을 土台로 調査項目 全

般에 因한 問題點을 把握한다.

### ① 調査對象事業체의 選定

各 産業別로 特性을 考慮하여 約 90%程度

의 標本事業체를 任意 抽出한다.

### ② 調査員動員

当局突務者 (約 18名)를 動員調査에 臨

한다.

#### 4) 二次 調査

1次試驗調査에서 導出된 問題點을 調査過程  
別로 補充 審議를 거쳐 適正与否를 再調査한다.

① 調査對象地域과 事業體選定 및 調査員動員

1次試驗調査方法과 同一하며 二次試驗調査過  
程을 通하여 最終的으로 導出된 問題點을  
綜合的으로 檢討審議하여 最終 確定한다.

#### 4) 用語定義

選定된 調査項目, 調査單位 등에 對한 定義를  
明確<sup>히</sup>하여 調査者와 受答者가 理解하기 容易  
하도록 審議를 거쳐 確定한다.

#### 4) 調査票 設計

最終確定된 調査項目에 依하여 調査票를 設計  
하고 審議를 거쳐 確定한다.

## 4. 結果表設計

### 1) 基本方向

調査項目變更에서 期待되고 있는 統計情報을 最大限 反映할 수 있도록 한다.

### 2) 種類

(1) 暫定集計表

(2) 最終報告集計表

## 3. 調査区設計

### 가. 目的

1) 調査의 重複 및 漏落을 防止

2) 調査員 業務量의 適正配分

### 나. 設定地域

大韓民國 行政權의 所及는 全地域

4. 各種資料油印

調査票類等 다음 資料를 通期에 油印하여 配布한다.

(1) 綜合實施計劃 (81.2.1 ~ 2.10)

(2) 調査區設定要領書 (81.2.1 ~ 2.10)

(3) 調査票 (81.5.1 ~ 5.30)

가) 公共行政機關調査票

나) 一般事業體調査票

(4) 調査要領書 (81.5.20 ~ 6.10)

(5) 調査要員 및 補助調査員証 (81.6.30)

(6) 要計原 (81.5.30)

(7) 事業體 一連番號票 (81.5.30)

(8) 內檢 및 符號記入要領書 (81.6.30)

(9) 談話文 (81.6.30)

(9) 公告吏 (81. 8. 30)

(10) 調査対象雇用人事状 (81. 6. 30)

(11) 事後調査要領書 (81. 8. 1 ~ 8. 10)

(12) 事後調査票 (81. 8. 1 ~ 8. 10)

5. 調査要員任命, 訓練 및 調査指導

가. 調査要員任命 및 補助調査員採用

1) 市·道知事는 管轄 各 洞·邑·面 職員中에서 統計  
調査에 經驗이 많은 者 各 1人을 洞·邑·面 責任  
調査要員으로 指命하고 그 結果를 該 洞·邑·面 長官에게 報告한다.

2) 補助調査員의 採用은 別途 補助調査員配吏表에  
依次 市·道知事가 任命하고 그 結果를 該 洞·邑·面  
長官에게 報告한다.

가) 採用節次

洞·邑·百長이 管轄地域內의 居住者中에서 選  
 取 企副院長官이 定款 基準에 따라 調査業務에  
 適格者를 推薦, 區·市·郡의 審査를 거쳐  
 市·道知事가 任命한다.

나) 資格要件

① 調査業務에 適格者 大韓民國 男女

② 管轄 洞·邑·百內의 居住者로서 管內實情에

精通者

① 統·班長

② 새마을指導者

③ 邦職公務員 및 企界在職員

④ 其他 統計調査 有經驗者

#### 4. 調査関係者 及 調査要員 訓練

##### 1) 目標.

調査要員 及 補助調査員에게 伝達되는 訓練

内容이 一貫性이 最大限 維持하도록 한다.

##### 2) 訓練方法

###### 가) 一般事業体 担当者 訓練

3段階 訓練過程을 通하여 実施한다.

###### 1) 1段階

㉠ 対象: 中央訓練官 及 市·道統計担当者

㉡ 場所: 調査統制局

㉢ 訓練官: 調査管理課長

###### 2) 2段階

㉣ 対象: 区·市·郡 指導員(区·市·郡 統計  
担当者 及 関係職員)

-30~

(甲) 場所: 別途指定

(乙) 訓練官: 中央訓練官 又 市・道統計担当官

(9) 3段階

(甲) 対象: 町・邑・面長, 事務長, 調査要員 又  
補助調査員

(乙) 場所: 区・市・郡

(乙) 訓練官: 区・市・郡 指導員

4) 公共行政裁員担当者 訓練

(1) 対象: 部・処・庁 行政管理担当者

(2) 場所: 調査統計局

(3) 訓練官: 商業統計課長



## 6. 公共行政機關 調査

### 가. 目的

公共行政機關對象 調査는 一般 調査員이 調査하  
는 데 많은 制限을 받기 때문에 一般 事業體 對象  
調査와는 分雅하여 別途의 調査方法을 適用美雅한다.

### 나. 方向

- 1) 公共行政機關 調査는 單位 機關別로 調査한다.
- 2) 部·處·序의 行政管理 担当者은 當該 機關 및 所  
屬 機關 調査를 위한 調査票의 配布 蒐集 및  
內容 檢討에 關한 美查業務를 遂行한다.

### 다. 對象

各 部·處·行 및 傘下 機關 (軍·國防事務 擔當 機關  
은 除外)

## 2. 方法

- 1) 自計式 方法으로 調査한다.
- 2) 調査의 單位는 獨立機關別로 한다.

## 3. 有功者 表彰

### 가. 目的

1901年 總事業體 調査를 實施함에 있어서  
調査遂行機關 및 担当者가 調査業務 全過程에서  
遂行한 業績을 表彰하는데 있음.

### 나. 方法

- 1) 機關表彰과 個人表彰으로 區分하여 表彰한다.
- 2) 機關表彰對象은 地方自治團體 機關으로 한다.
- 3) 個人表彰은 中央內閣部처외 地方機關을 網羅  
한다.

4) 市·道有功機関表彰対象は、経済企劃院에서  
選定한다.

## 8. 事後調査

調査完了后 1か月以内に 本調査結果의 評価를  
위한 事後調査를 別途 計劃에 依拠 施行한다.



1981년 총사업체 통계조사

# 조 사 표

| 조 사 원 기 입 란 |                     |        |              |            |
|-------------|---------------------|--------|--------------|------------|
| 행정 구역       | 시도                  | 구시군    | 동읍면          |            |
| 조사구 번호      | 총 조사포 매수<br>(조사구 별) | 조사포 권수 | 권별(級別)조사포 매수 |            |
|             |                     | 권중 권   | 매            | 번부터<br>번까지 |
| 조사자 성명      | ①                   | 확인자 성명 |              | ①          |

| 조 사 통 계 국 기 입 란 |        |   |        |   |
|-----------------|--------|---|--------|---|
| 행정 구역 번호        |        |   |        |   |
|                 | 담당자 성명 | ① | 책임자 성명 | ① |
| 조사포 접수          |        |   |        |   |
| 내용 검사           |        |   |        |   |
| 재 검사            |        |   |        |   |
| 부 호 기 입         |        |   |        |   |
| 부 호 재 검         |        |   |        |   |
| 천               | 공      |   |        |   |
| 검               | 공      |   |        |   |

경 제 기 획 원

## 기능공의 직종분류

|   |   |   |   |                                      |  |
|---|---|---|---|--------------------------------------|--|
| 70 생산직공                                 | 75 원적공, 제직공, 권직공, 원<br>작공 및 관련 종사자                | 80 제직공, 및 기계제직공, 제직공                          | 85 전기설비공 및 관련 전기<br>전자공                   | 9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br>제조공               | 95 지능있기공                                 |
| 700 생산직공                                | 751 조속전직공   | 801 제직공 및 구조조직공                               | 851 전기설비공                                 | 901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br>제조공              | 954 목공, 소목공 및 조각공<br>세공                  |
| 71 권역, 제직공, 원적공 및<br>관련 종사자             | 752 방직공 및 원사공                                     | 802 구부제직공, 조직공, 세공<br>공, 및 원적공사자              | 852 전자설비공                                 | 902 타이어 제조공 (타이어제조공 및<br>타이어 성형공 제외) | 955 비강공                                  |
| 711 권역 및 제직공                            | 753 제직기 및 권직기, 조직<br>공과 무직기 조직공                   | 803 기계제직공, 제직공                                | 853 전기 및 전자전기조직공                          | 903 타이어 제조공 및 경화공                    | 956 락열공                                  |
| 712 방직 및 사적 직직공                         | 754 직조공 및 원적공사자                                   | 81 구조제직공 및 관련 직공                              | 854 라디오 및 수리공                             | 91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공                     | 957 유리직공                                 |
| 713 권역직, 원적직 및 원적<br>종사자                | 755 권직공   | 811 구조제직공                                     | 855 건공                                    | 910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br>공                | 9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br>및 종사자                |
| 72 섬유가공 직직공                             | 756 직조공, 원적공 및 섬유<br>제품 생산공                       | 812 북공, 기계조직공                                 | 856 건설 및 경화직공                             | 92 인쇄공 및 관련종사자                       | 96 고정장바 및 관련 장비<br>유원회                   |
| 721 섬유제직, 직직 및 원적<br>종공                 | 757 락직 분류되지 않은 것<br>직공, 직직공, 권직공, 및<br>제직 및 원적공사자 | 8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br>직공 및 원적직공                 | 857 전기기전공 및 제어공<br>정공                     | 921 직직공                              | 961 락직기 유원회                              |
| 722 섬유제직공                               | 76 기계직공   | 82 물체단공 및 물조각                                 | 85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br>기전비공 및 관련 전기<br>및 전자공 | 922 인쇄공                              | 96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br>및 관련 장비<br>유원회       |
| 723 섬유제직공 및 제직공                         | 761 고무직공 및 양피제직공                                  | 820 물체단공 및 물조각공                               | 86 인쇄 및 음향음비제작공과<br>연사공                   | 923 제관공                              | 97 화물차공 및 관련장비 조작<br>공, 부속조작공 및 화물<br>차공 |
| 724 섬유제직공                               | 762 보피제직공   | 83 대장공, 권구제직공 및<br>기계공, 조직공                   | 861 방송장비 제작공                              | 924 인쇄조각공 (사질요판공<br>제외)              | 971 부속조작공 및 화물<br>차공                     |
| 725 섬유제직공 및 양피제직공                       | 77 금속가공 직공 직직공                                    | 831 대장공 및 양피제직공<br>조직공                        | 862 음향장비제작공 및 연사<br>공                     | 925 사진표현공                            | 972 색구공 및 제어공, 조<br>속공 및 관련종사자           |
| 726 금속제직공, 경화공 및<br>표면경화공               | 771 제공공 및 권역공사자                                   | 832 구부제직공, 금속원적제<br>직공 및 금속제직공                | 87 연관공, 광공, 권직공, 구<br>조합공                 | 926 세공공 및 관련종사자                      | 973 이중장비 유원회                             |
| 727 금속제직공 및 압출공                         | 772 작업공 및 작업공                                     | 833 기계공구조직 조직공                                | 871 연관공 및 비전공                             | 927 사진발전 종사자                         | 974 손도끼 및 관련 기계<br>유원회                   |
| 728 금속제직공                               | 773 조속공 및 유부가공공                                   | 834 기계공구 조직공                                  | 872 용접공 및 용접장비공                           | 9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br>세공 및 관련종사자       | 975 이중장비 유원회                             |
| 7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br>속가공, 제어공            | 774 수공제직공   | 835 금속연속공 연마공 및<br>공구연마공                      | 873 광공                                    | 93 보질공                               | 976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br>및 관련 장비<br>유원회       |
| 73 목재가공 종사자 및 제직공                       | 775 나공공 가공공                                       | 8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br>장공, 금속제직공 및 기<br>계공공, 조직공 | 874 구조공<br>공비공 및 전직공                      | 931 건설 조직공                           | 977 부속조작공 및 화물<br>차공                     |
| 731 목재가공, 제직공                           | 776 작업공 및 제직공                                     | 84 기계제직공, 기계조직공 및<br>점원기구 제직공                 | 88 장선구 및 권직공 세공공                          | 932 건설 조직공                           | 97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br>및 관련 장비<br>유원회       |
| 732 제직공, 양피제직공 및<br>양피제직공 종사자           | 777 화 제마 및 로코아 기<br>조공                            | 842 기계설비 및 기계조직공                              | 880 장선구 및 권직공 세공공                         | 93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br>공                | 9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br>및 관련 장비<br>유원회       |
| 733 원적 제조공                              | 778 양조공 및 유부제직공                                   | 843 기계설비 및 기계조직공                              | 89 유리성형공, 절기공, 및<br>관련 종사자                | 9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산<br>및 관련 종사자         | 98 수공장바 유원회                              |
| 734 제직공                                 | 7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br>직공, 가공직공                      | 844 직공 및 점원기구 제작<br>공                         | 891 유리성형공, 절기공, 연마<br>공 및 원적공             | 941 악기제조공 및 조속공                      | 981 양직직, 교공제직직 및<br>양직공                  |
| 74 화물차 기공 및 관련 종<br>사자                  | 78 의복제직공, 직직공, 가구내<br>장공 및 관련 종사자                 | 84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br>직공, 가공직공 및 관련<br>종사자      | 892 도자기공 및 도자기의 유<br>원회                   | 942 악기제직공 및 조속공                      | 982 선박기전직공                               |
| 741 화물차, 가공공 및 원적공                      | 781 양직공 및 양직공                                     | 846 직공 및 권직공                                  | 893 유리 및 도자기공                             | 943 비공공 광물제직공 제조공                    | 983 철도기관사 및 화물<br>차공                     |
| 742 조직공, 라소공 및 관련<br>직공                 | 782 의복양직공 및 직직공사자                                 | 847 직공 및 점원기구 제작<br>공                         | 894 유리제직공 및 직직공                           | 944 기타 생산 및 관련 종<br>사자               | 984 화물차 조작, 실패수<br>및 전직수                 |
| 743 직직기 및 권직기, 조직<br>공                  | 783 직직공   | 848 직공 및 점원기구 제작<br>공                         | 895 유리 및 도자기공                             | 95 비공공, 목공 및 기타 건<br>설종사자            | 985 자동차 유원회                              |
| 744 섬유기 및 섬유기 제작<br>공                   | 784 직직제직공 및 직직공                                   | 8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br>직공, 제직공 및 관련<br>종사자       | 896 유리제직공 및 직직공                           | 951 비공공 및 라일 부속공                     | 986 우각부                                  |
| 745 섬유공                                 | 785 직직공 및 직직공                                     | 850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br>직공, 제직공 및 관련<br>종사자       | 897 유리 및 도자기공                             | 952 유공공, 시멘트공<br>및 비공공               | 9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br>수공장바 유원회             |
| 746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br>직공, 가공공 및 원적<br>종사자 | 786 직직공 및 직직공                                     | 85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br>직공, 제직공 및 관련<br>종사자       | 898 유리 및 도자기공                             | 96 고정장바 및 관련 장비<br>유원회               | 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br>및 관련 장비<br>유원회        |

통계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  
식대로 작성되는 내용은 통계작성에만 사용되  
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지정통계

1981년 총사업체 동태조사

제 34 조

# 조 사 표

|        |         |
|--------|---------|
| 조사구 번호 | 사업체일련번호 |
|        |         |

| <b>1. 사업체명 및 소재지</b><br>(1) 사업체명: (2) 대표자성명:<br>(3) 사업자등록번호: (4) 전 화:<br>(5) 소재지: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margin-left: 20px;"> <tr> <td>시·도</td> <td>구·시·군</td> <td>동·읍·면</td> <td>동·구·리</td> <td>번 지</td> <td>빌딩<br/>상가<br/>시장<br/>농<br/>촌<br/>연<br/>호</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  | 시·도   | 구·시·군 | 동·읍·면     | 동·구·리  | 번 지 | 빌딩<br>상가<br>시장<br>농<br>촌<br>연<br>호 |     |    |     |     |        |  | <b>6. 사업장의 면적</b><br>사업장의 면적은 건물과 대지부 구<br>분하여 기입하되, 반드시 이 사업<br>체에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br>는 면적만 조사 기입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r> <td rowspan="2"></td> <td colspan="4">(1) 건 물 (평)</td> <td colspan="4">(2) 대 지 (평)</td> </tr> <tr> <td>만</td> <td>천</td> <td>백</td> <td>십 일</td> <td>백만</td> <td>십만</td> <td>만</td> <td>천</td> <td>백</td> <td>십 일</td> </tr> <tr> <td>1. 계</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2. 소유</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3. 임차</td> <td></td><td></td><td></td><td></td> <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 (1) 건 물 (평)   |  |  |  | (2) 대 지 (평) |  |  |  | 만 | 천 | 백 | 십 일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 | 십 일 | 1. 계 |    |    |        |  |  |  |   |   |   |   | 2. 소유 |   |   |   |                   |  |  |  |   |   |   | 3. 임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도  | 구·시·군  | 동·읍·면   | 동·구·리 | 번 지       | 빌딩<br>상가<br>시장<br>농<br>촌<br>연<br>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건 물 (평)  |   |       |           | (2) 대 지 (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  | 천   | 백     | 십 일       | 백만   | 십만  | 만                                  | 천   | 백  | 십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소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임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2. 경영 조직</b><br>공·공·민·제·단·등·중·간·체·를·구·분·하·는<br>통·법·상·의·정·원·을·말·하·며·본·조·사<br>에·서·는·경·상·부·사·기·관·과·국·공·립·의<br>학·교·,·평·원·,·도·서·관·및·특·수·사·회·의<br>정·원·을·여·기·에·포·함·하·여·조·사·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 공 단 체 (공 기 업 포 함)</li> <li>2. 착 사 법 인</li> <li>3. 회 사 이 외 의 법 인</li> <li>4. 개 인 경 영</li> <li>5. 비 법 인 단 체</li> </ol>   |  | <b>7. 사업의 종류</b><br>사업의 내용을 상세히 기입한다.<br>2종 이상의 사업을 겸업한 경우<br>는 주된 사업 하나만을 기입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r> <td>(1) 사업 내용</td> <td>(2) 제조가공업, 도·소매업의<br/>경우는 주요생산품 또는<br/>취급상품을 주된 것 1가<br/>지만 기입한다.</td> </tr> </table> |       | (1) 사업 내용 | (2) 제조가공업, 도·소매업의<br>경우는 주요생산품 또는<br>취급상품을 주된 것 1가<br>지만 기입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사업 내용  | (2) 제조가공업, 도·소매업의<br>경우는 주요생산품 또는<br>취급상품을 주된 것 1가<br>지만 기입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3. 본 지 점 별</b><br>㉠ 단독사업체는 1기점, 1사업체 경<br>우를 말한다.<br>㉡ 지점수는 의사, 지소, 지점 및 출<br>장소와 종업원이 있는 장소를 포함<br>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margin-left: 20px;"> <tr> <td>1. 단 독 사 업 체</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2. 본 점</td> <td>지점수</td> <td>천</td> <td>백</td> <td>십 일</td> </tr> <tr> <td>3. 지 점</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  | 1. 단 독 사 업 체  |       |           |  |     | 2. 본 점                             | 지점수 | 천  | 백   | 십 일 | 3. 지 점 |  |  |  |      | <b>8. 영업 형태</b><br>㉠ 제조가공업 및 도·소매업에 대하<br>여는 1~5항 중에서 어느 하나에<br>〇표가 되어야 하고, 그 이외 건설<br>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 타산업<br>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6항에 〇<br>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파 조 또는 자 조 생산하고 있다.</li> <li>2. 제 조 소 매 하고 있다.</li> <li>3. 소 매 만 하고 있다.</li> <li>4. 도 산 매 를 겸 하고 있다.</li> <li>5. 도 매 만 하고 있다.</li> <li>6. 상 기 이외의 산업활동을 하고 있다.</li> </o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단 독 사 업 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본 점   | 지점수  | 천   | 백     | 십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지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4. 자본금 또는 출자금</b><br>㉠ 2항의 2항 회사법인일 경우에 한<br>하여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조사 기<br>입한다.<br>단, 지점은 제외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margin-left: 20px;"> <tr> <td>천원</td> <td>백원</td> <td>십원</td> <td>원</td> <td>천만</td> <td>백만원</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  | 천원  | 백원    | 십원        | 원  | 천만  | 백만원                                |     |    |     |     |        |  | <b>9. 종업원수 및 월급여액</b><br>㉠ 7월 31일 현재 종업원수와 7월분<br>급여총액을 기입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r> <th rowspan="2">종업원수</th> <th colspan="10">월급여액(상여금제외)</th> </tr> <tr> <th>계</th> <th>남</th> <th>여</th> <th>천원</th> <th>백원</th> <th>십원</th> <th>원</th> <th>천만</th> <th>백만</th> <th>십만</th> <th>천원</th> </tr> <tr> <td>1. 합 계</td> <td></td><td></td><td></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 </tr> <tr> <td>2.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td> <td></td><td></td><td></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 </tr> <tr> <td>3. 상용고용원</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4. 임시 및 일일고용원</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5. 무급고용원</td> <td></td><td></td><td></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td>X</td> </tr> </table> |  | 종업원수 | 월급여액(상여금제외)   |  |  |  |             |  |  |  |   |   | 계 | 남   | 여  | 천원 | 백원 | 십원 | 원 | 천만  | 백만   | 십만 | 천원 | 1. 합 계 |  |  |  | X | X | X | X | X     | X | X | X | 2.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  |  | X | X | X | X     | X | X | X | X | 3. 상용고용원 |  |  |  |  |  |  |  |  |  |  |  | 4. 임시 및 일일고용원 |  |  |  |  |  |  |  |  |  |  |  | 5. 무급고용원 |  |  |  | X | X | X | X | X | X | X | X |
| 천원   | 백원   | 십원  | 원     | 천만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업원수   | 월급여액(상여금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남   | 여     | 천원        | 백원   | 십원  | 원                                  | 천만  | 백만 | 십만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합 계   |  |   |       | X         | X  | X   | X                                  | X   | X  | X   |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   |       | X         | X  | X   | X                                  | X   | X  | X   |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상용고용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임시 및 일일고용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무급고용원   |  |   |       | X         | X  | X   | X                                  | X   | X  | X   |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5. 개 점 년 월</b><br>19    년    월 개점(개설)   |  | <b>응답자</b><br><b>조사자</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응답자  
조사자

| 10. 직종별 종업원수   |      | 성 별 | (1) 합 계 | (2) 관 리 및 직 사 부 직 | (3) 전 문·기 술 및 관 련 직 | (4) 기 능 공 (숙련공 및 견습공포함) | (5) 기 타 |
|--|------|-----|---------|-------------------|---------------------|-------------------------|---------|
| 9관의 종업원 총수를 다시 구<br>세적으로 세분, 직종별, 남녀<br>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1. 계 |     |         |                   |                     |                         |         |
|  | 2. 남 |     |         |                   |                     |                         |         |
|  | 3. 여 |     |         |                   |                     |                         |         |

**11. 직종별 기능공**

10관 「직종별 종업원수」의 (4)항에 1명의 기능공이라도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사 기입하고, 기능공이 없을 경우에는 사선「\」을 긋는다.

기능공의 직종명은 조사표 표지의 직종분류에 명시된 직종을 기입하여야 하며, 다만 이에 의한 직종분류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체에서 통용되고 있는 직종명을 기입하되 외래어는 가능한 한 우리말로 해석하여 기입한다.

이 사업체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전기사, 전기설비공, 기계장비정비공, 냉난방공, 목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누락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직종이 다양하여 그 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공정별로 구분하여 유사 직종을 취합하여 10개 이내로 분류 기입한다. 이때 전공, 운전기사, 냉난방공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생산공정에 종사하고 있는 단순노무자는 합제란만 기입한다.

| 일련<br>번호 | ※분류<br>번호 | 직 종 명 | 합 계 |   |   | 자 격 증 소 지 |   |   | 자 격 증 미 소 지 |   |   |       |   |   |  |
|----------|-----------|-------|-----|---|---|-----------|---|---|-------------|---|---|-------|---|---|--|
|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숙 련 공       |   |   | 견 습 공 |   |   |  |
|          |           |       |     |   |   |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 계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조사통제국 기입란이므로 기입하지 않는다.







1980년

사업체 센서스 시범조사표철

(총 권증 권)

| 행정구역  | 충청남도 | 대전시 | 구 | 동 |
|-------|------|-----|---|---|
| ※ 부 호 |      |     |   |   |

| 조사표매수 |
|-------|
|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    |   |   |
|----|----|---|---|
| 도  | 시  | 구 | 동 |
| 충남 | 대전 |   |   |

사업체센서스시범조사(1980.7.1.기준)

조사표  
일련번호

# 조사표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 (1)<br>사업체<br>일련<br>번호 | (2)<br>사업체(기관)명<br>(사업체명이 없는 경우<br>는 대표자명을 기입할것) | (3)<br>사업체(기관)소재지<br>(번지, 동번 및 전화번호를 기입할것) | (4)<br>경영조직<br>(해당번호에 〇표할것)     |                            | (5)<br>본·지점별<br>해당번호에<br>〇표할것 | (6)<br>사업종류<br>(산업별) | (7)<br>주요취급상품<br>(생산물) 또는<br>사업내용 | (8) 종업원수 |  |  | (9)<br>비고 |                                       |
|------------------------|--|--|---------------------------------|----------------------------|-------------------------------|----------------------|-----------------------------------|----------|--|--|-----------|---------------------------------------|
|                        |  |  |                                 |                            |                               |                      |                                   | 총 계      |  |  |           | 사업주및<br>주요가족<br>중<br>남<br>성<br>수<br>④ |
| ①                      | ②  | ③  |                                 |                            |                               |                      |                                   |          |  |  |           |                                       |
|                        |  | (전화 )                                      | 1. 정부기관<br>2. 정부투자기관<br>3. 공공조합 | 4. 개인<br>5. 법인<br>6.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소<br>2. 본점<br>3. 지점    |                      |                                   |          |  |  |           |                                       |
|                        |  | (전화 )                                      | 1. 정부기관<br>2. 정부투자기관<br>3. 공공조합 | 4. 개인<br>5. 법인<br>6.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소<br>2. 본점<br>3. 지점    |                      |                                   |          |  |  |           |                                       |
|                        |  | (전화 )                                      | 1. 정부기관<br>2. 정부투자기관<br>3. 공공조합 | 4. 개인<br>5. 법인<br>6.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소<br>2. 본점<br>3. 지점    |                      |                                   |          |  |  |           |                                       |
|                        |  | (전화 )                                      | 1. 정부기관<br>2. 정부투자기관<br>3. 공공조합 | 4. 개인<br>5. 법인<br>6.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소<br>2. 본점<br>3. 지점    |                      |                                   |          |  |  |           |                                       |
|                        |  | (전화 )                                      | 1. 정부기관<br>2. 정부투자기관<br>3. 공공조합 | 4. 개인<br>5. 법인<br>6.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소<br>2. 본점<br>3. 지점    |                      |                                   |          |  |  |           |                                       |
|                        |  | (전화 )                                      | 1. 정부기관<br>2. 정부투자기관<br>3. 공공조합 | 4. 개인<br>5. 법인<br>6.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소<br>2. 본점<br>3. 지점    |                      |                                   |          |  |  |           |                                       |
|                        |  | (전화 )                                      | 1. 정부기관<br>2. 정부투자기관<br>3. 공공조합 | 4. 개인<br>5. 법인<br>6.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소<br>2. 본점<br>3. 지점    |                      |                                   |          |  |  |           |                                       |
|                        |  | (전화 )                                      | 1. 정부기관<br>2. 정부투자기관<br>3. 공공조합 | 4. 개인<br>5. 법인<br>6.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소<br>2. 본점<br>3. 지점    |                      |                                   |          |  |  |           |                                       |
|                        |  | (전화 )                                      | 1. 정부기관<br>2. 정부투자기관<br>3. 공공조합 | 4. 개인<br>5. 법인<br>6.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소<br>2. 본점<br>3. 지점    |                      |                                   |          |  |  |           |                                       |
|                        |  | (전화 )                                      | 1. 정부기관<br>2. 정부투자기관<br>3. 공공조합 | 4. 개인<br>5. 법인<br>6.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소<br>2. 본점<br>3. 지점    |                      |                                   |          |  |  |           |                                       |

작성자: 성명

①

확인자: 직위

성명

②

|    |    |   |   |
|----|----|---|---|
| 도  | 시  | 구 | 동 |
| 충남 | 대전 |   |   |

사업체센서스시범조사(1980.7.1.기준)

|             |
|-------------|
| 조사표<br>일련번호 |
|-------------|

# 조사표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 (1)<br>사업체<br>일련<br>번호 | (2)<br>사업체(기관)명<br>(사업지명이 없는 경우<br>는 대표자명을 기입할것) | (3)<br>사업체(기관)소재지<br>(번지, 통반 및 전화번호를 기입할것) | (4)<br>경영조직<br>(해당번호에 ○표할것)     |                            | (5)<br>본·지점별<br>(해당번호에<br>○표할것) | (6)<br>사업종류<br>(산업별) | (7)<br>주요취급상품<br>(생산품) 또는<br>사업내용 | (8) 종업원수 |  |  |                              |                                 |                  | (9)<br>비고 |
|------------------------|--|--|---------------------------------|----------------------------|---------------------------------|----------------------|-----------------------------------|----------|--|--|------------------------------|---------------------------------|------------------|-----------|
|                        |  |  |                                 |                            |                                 |                      |                                   | 총 계      |  |  | 사업주 및<br>가족<br>사업자<br>중<br>④ | 상<br>용<br>차<br>량<br>운<br>행<br>⑤ | 임<br>시<br>업<br>⑥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  |  |                              |                                 |                  |           |
|                        |  | (전화 )                                      | 1. 정부기관<br>2. 정부투자기관<br>3. 공공조합 | 4. 개인<br>5. 법인<br>6.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소<br>2. 본점<br>3. 지점      |                      |                                   |          |  |  |                              |                                 |                  |           |
|                        |  | (전화 )                                      | 1. 정부기관<br>2. 정부투자기관<br>3. 공공조합 | 4. 개인<br>5. 법인<br>6.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소<br>2. 본점<br>3. 지점      |                      |                                   |          |  |  |                              |                                 |                  |           |
|                        |  | (전화 )                                      | 1. 정부기관<br>2. 정부투자기관<br>3. 공공조합 | 4. 개인<br>5. 법인<br>6.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소<br>2. 본점<br>3. 지점      |                      |                                   |          |  |  |                              |                                 |                  |           |
|                        |  | (전화 )                                      | 1. 정부기관<br>2. 정부투자기관<br>3. 공공조합 | 4. 개인<br>5. 법인<br>6.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소<br>2. 본점<br>3. 지점      |                      |                                   |          |  |  |                              |                                 |                  |           |
|                        |  | (전화 )                                      | 1. 정부기관<br>2. 정부투자기관<br>3. 공공조합 | 4. 개인<br>5. 법인<br>6.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소<br>2. 본점<br>3. 지점      |                      |                                   |          |  |  |                              |                                 |                  |           |
|                        |  | (전화 )                                      | 1. 정부기관<br>2. 정부투자기관<br>3. 공공조합 | 4. 개인<br>5. 법인<br>6.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소<br>2. 본점<br>3. 지점      |                      |                                   |          |  |  |                              |                                 |                  |           |
|                        |  | (전화 )                                      | 1. 정부기관<br>2. 정부투자기관<br>3. 공공조합 | 4. 개인<br>5. 법인<br>6.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소<br>2. 본점<br>3. 지점      |                      |                                   |          |  |  |                              |                                 |                  |           |
|                        |  | (전화 )                                      | 1. 정부기관<br>2. 정부투자기관<br>3. 공공조합 | 4. 개인<br>5. 법인<br>6.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소<br>2. 본점<br>3. 지점      |                      |                                   |          |  |  |                              |                                 |                  |           |
|                        |  | (전화 )                                      | 1. 정부기관<br>2. 정부투자기관<br>3. 공공조합 | 4. 개인<br>5. 법인<br>6.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소<br>2. 본점<br>3. 지점      |                      |                                   |          |  |  |                              |                                 |                  |           |

작성자 성명

①

확인자 직위

성명

②

# 사업체명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       |   |       |       |
|-----|-------|---|-------|-------|
| 시·도 | 구·시·군 | 구 | 동·읍·면 | 조사구번호 |
|     |       |   |       |       |

| (1) 일련번호 | (2) 사업체명 | (3) 대표자명 | (4) 사업체소재지 | (5) 경영조직  | (6) 본적지별                     | (7) 사업의종류(상업)   | (8) 주요취급상품명 | (9) 종업원수 |   |   | (10) 비고 |
|----------|----------|----------|------------|---|------------------------------|---|-------------|----------|---|---|---------|
|          |          |          |            |   |                              |   |             | 재        | 남 | 녀 |         |
|          |          |          | (전화: )     | 1. 공공단체<br>2. 회사법인<br>3. 회사이외의법인<br>4. 개인경영<br>5.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체<br>2. 분점점<br>3. 지점점 | 1. 농림·수렵어업<br>2. 광업<br>3. 제조업<br>4. 전기·가스·수도업<br>5. 건설업<br>6. 도·소매유통업·숙박업<br>7. 운수·창고·통신업<br>8. 금융·보험·부동산업<br>9. 사회·개인서비스업<br>10. 분류불능업 |             |          |   |   |         |
|          |          |          | (전화: )     | 1. 공공단체<br>2. 회사법인<br>3. 회사이외의법인<br>4. 개인경영<br>5.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체<br>2. 분점점<br>3. 지점점 | 1. 농림·수렵어업<br>2. 광업<br>3. 제조업<br>4. 전기·가스·수도업<br>5. 건설업<br>6. 도·소매유통업·숙박업<br>7. 운수·창고·통신업<br>8. 금융·보험·부동산업<br>9. 사회·개인서비스업<br>10. 분류불능업 |             |          |   |   |         |
|          |          |          | (전화: )     | 1. 공공단체<br>2. 회사법인<br>3. 회사이외의법인<br>4. 개인경영<br>5.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체<br>2. 분점점<br>3. 지점점 | 1. 농림·수렵어업<br>2. 광업<br>3. 제조업<br>4. 전기·가스·수도업<br>5. 건설업<br>6. 도·소매유통업·숙박업<br>7. 운수·창고·통신업<br>8. 금융·보험·부동산업<br>9. 사회·개인서비스업<br>10. 분류불능업 |             |          |   |   |         |
|          |          |          | (전화: )     | 1. 공공단체<br>2. 회사법인<br>3. 회사이외의법인<br>4. 개인경영<br>5.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체<br>2. 분점점<br>3. 지점점 | 1. 농림·수렵어업<br>2. 광업<br>3. 제조업<br>4. 전기·가스·수도업<br>5. 건설업<br>6. 도·소매유통업·숙박업<br>7. 운수·창고·통신업<br>8. 금융·보험·부동산업<br>9. 사회·개인서비스업<br>10. 분류불능업 |             |          |   |   |         |
|          |          |          | (전화: )     | 1. 공공단체<br>2. 회사법인<br>3. 회사이외의법인<br>4. 개인경영<br>5.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체<br>2. 분점점<br>3. 지점점 | 1. 농림·수렵어업<br>2. 광업<br>3. 제조업<br>4. 전기·가스·수도업<br>5. 건설업<br>6. 도·소매유통업·숙박업<br>7. 운수·창고·통신업<br>8. 금융·보험·부동산업<br>9. 사회·개인서비스업<br>10. 분류불능업 |             |          |   |   |         |
|          |          |          | (전화: )     | 1. 공공단체<br>2. 회사법인<br>3. 회사이외의법인<br>4. 개인경영<br>5.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체<br>2. 분점점<br>3. 지점점 | 1. 농림·수렵어업<br>2. 광업<br>3. 제조업<br>4. 전기·가스·수도업<br>5. 건설업<br>6. 도·소매유통업·숙박업<br>7. 운수·창고·통신업<br>8. 금융·보험·부동산업<br>9. 사회·개인서비스업<br>10. 분류불능업 |             |          |   |   |         |
|          |          |          | (전화: )     | 1. 공공단체<br>2. 회사법인<br>3. 회사이외의법인<br>4. 개인경영<br>5.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체<br>2. 분점점<br>3. 지점점 | 1. 농림·수렵어업<br>2. 광업<br>3. 제조업<br>4. 전기·가스·수도업<br>5. 건설업<br>6. 도·소매유통업·숙박업<br>7. 운수·창고·통신업<br>8. 금융·보험·부동산업<br>9. 사회·개인서비스업<br>10. 분류불능업 |             |          |   |   |         |
|          |          |          | (전화: )     | 1. 공공단체<br>2. 회사법인<br>3. 회사이외의법인<br>4. 개인경영<br>5.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체<br>2. 분점점<br>3. 지점점 | 1. 농림·수렵어업<br>2. 광업<br>3. 제조업<br>4. 전기·가스·수도업<br>5. 건설업<br>6. 도·소매유통업·숙박업<br>7. 운수·창고·통신업<br>8. 금융·보험·부동산업<br>9. 사회·개인서비스업<br>10. 분류불능업 |             |          |   |   |         |
|          |          |          | (전화: )     | 1. 공공단체<br>2. 회사법인<br>3. 회사이외의법인<br>4. 개인경영<br>5. 비법인단체 | 1. 단독사업체<br>2. 분점점<br>3. 지점점 | 1. 농림·수렵어업<br>2. 광업<br>3. 제조업<br>4. 전기·가스·수도업<br>5. 건설업<br>6. 도·소매유통업·숙박업<br>7. 운수·창고·통신업<br>8. 금융·보험·부동산업<br>9. 사회·개인서비스업<br>10. 분류불능업 |             |          |   |   |         |

작성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